



21대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023년 7월 25(화) 13: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백혜련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21대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시_ 2023년 7월 25일(화) 13:30-16:00
- 장소_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_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1대 국회의원 인사말	1
발제1_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9
토론1_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0
발제2_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9
토론2_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65
발제3_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50
토론3_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부록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72
부록_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120
부록_ 성폭력피해생존자 릴레이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140
부록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원치 않는’ 설문조사 결과	145

인사말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입니다.

오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토론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 석학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정책제언을 위해 참석해주신 토론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가해자의 폭행·협박 정도,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중심으로 따집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강도 높은 폭행·협박이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강간죄 요건을 피해 여성의 저항 정도가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해온 지 7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범부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부

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도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설득도 조정도 못하고 셀프 철회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맞추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강간죄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과제였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에 발의되어, 이제 꼬박 3년이 되었습니다.

단 1번의 법안 심사가 전부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 1소위에 직회부했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관계 기관 간의 건설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제안도 있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법률가,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묻고 논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 관계는 당연히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한 '공통점'이 설정되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강간죄'는 성범죄에 관한 국민 인식의 변화, 강간의 개념 정의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그렇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손을 놓고, 법무부가 발뺌하고, 여가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의미한 이유입니다. 여러 전문가께서 준비해주신 발제 및 토론문은 언젠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입법사'에 함께할 기록이 되리라 믿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 감사드립니다. 발제 준비에 수고해주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님, 이경환 변호사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대정부 질문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공적 권한을 바탕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정치 지형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2023년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낡은 강간죄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강간·강제 추행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꼬치꼬치 따져 물으며 피해 사실을 부정해왔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강간죄 규정은 오히려 보복성 역고소를 남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중 70%가 넘는 피해가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피해에 있어 강요에 의한 피해가 폭행, 협박에 따른 피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들이 폭행·협박 없이도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의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동의 강간죄'는 국제적인 기준이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강간죄 개정 요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퇴행 그 자체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성폭력에 맞서 싸워야 할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반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21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의 이유를 묻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한 젠더 기반폭력을 만드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여 비로소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현행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를 ‘정조’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강간 피해의 객체를 ‘부녀’로만 한정했던 낡은 법제도를 바꿔내기 위해 다년간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70년 가까이 “폭행과 협박”에 머물러 있으며,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을 강간죄의 성립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최협의설’이 아직까지도 판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묻는 현행 법체계는 다양한 상황의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해석은 성폭력 피해의 본질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삽시간 내에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권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여당에서는 '남녀 갈등 조장'을 주장하며 강간죄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강간죄 규정은 시대적인 변화이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동의 강간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수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흐지부지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강간죄 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의 성폭력 현실과 앞으로의 입법 과제를 훑어보는 오늘 토론회를 발판 삼아, 저와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개최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221개 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띤 논의를 펼쳐주실 현장의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과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자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 현장(준강간, 위력, 성매매, 청소년, 장애, 이주여성, 부부)의 문제의식과 쟁점을 담은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하였다. 더불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2022년 폭행·협박 없는 강간상담 통계를 분석하였다. 본 발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현실을 톺아보기 위해 강간죄개정연대회의의 릴레이리포트와 전성협 강간상담 통계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동의'의 의미,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2022년 전성협 강간상담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간상담 통계 결과 및 분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2019년 강간죄개정연대회의와 함께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3개월)의 강간 상담통계(66개소 참여)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에 육박함을 밝히며 사회적으로 널리 알린 바 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흐름에 맞춰 성폭력 상담 현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분석을 하였고, '강간, 유사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대상으로 전성협 136개 기관 중 119개 기관(87.5%)이 참여, 총 4,765건이 집계되었다.

1. 상담분석 개요

1) 피·가해자 관계

피·가해자 관계는 전성협 상담통계프로그램 기준 26개 유형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이어 세부 분류를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친인척 관계, 모르는 사람, 미파악·기타 5개 유형으로 대분류하였다.

표 1. 파·가해자 관계 (대분류)

대분류	아는 관계 ¹⁾	친밀한 관계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계
건	2,757	646	487	311	564	4,765
비율(%)	<u>57.9</u>	<u>13.6</u>	<u>10.2</u>	6.5	11.8	100

표 2. 파·가해자 관계 (세분류)

구분	파·가해자관계(26유형)	건	비율(%)
아는 관계	채팅상대자	612	12.8
	동급생·선후배·친구	591	12.4
	단순대면인	544	11.4
	직장관계자	491	10.3
	동네사람	295	6.2
	교사·강사	79	1.7
	서비스제공자	72	1.5
	종교인	44	0.9
	복지시설 관계자	19	0.4
	의료인	7	0.2
친밀한 관계	(전·현)애인²⁾	413	8.7
	데이트상대자	131	2.8
	배우자	68	1.4
	과거배우자	33	0.7
친족·친인척	4촌 이내 친척	120	2.5
	친부모	111	2.3
	형제·자매	93	2.0
	의·양부모	75	1.6
	그 외 친족	51	1.1
	조부모	14	0.3
	4촌 이내 인척	15	0.3
	자녀	5	0.1
	시부모	2	0.0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311	6.5
미파악·기타	미파악	303	6.4
	기타 ³⁾	266	5.5
계		4,765	100

1) 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 이외

2) (전·현)애인: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상대자가 가해자인 경우. 특히 한쪽이 일방으로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쌍방이 연인관계라고 하는 경우로써 피해자가 규정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함.

표 3. 피·가해자 관계 (순위별)

구분	피·가해자관계	건	비율(%)
아는 관계	채팅상대자	612	12.8
	동급생·선후배	591	12.4
	단순대면인 ⁴⁾	544	11.4
	직장관계자	491	10.3
친밀한 관계	(전·현)애인	413	8.7

[표1. 피·가해자 관계] 집계 결과, 아는 관계가 57.9%(2,757건)로 가장 많았고, 친밀한 관계 13.6%(646건), 친족·친인척관계 10.2%(487건), 모르는 사람 6.5%(311건), 미파악·기타 11.8%(564건)가 뒤를 이었다. [표2.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채팅 상대자 12.8%(612건), 동급생·선후배·친구 12.4%(591건), 단순대면인이 11.4%(544건), 직장관계인 10.3%(491건), (전·현)애인으로 8.7%(4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본 통계를 통해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아는 관계’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해당 비율이 81.6%에 육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 및 준강간 유무

표 4. 장애 유무

구분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계
건	908	3,557	300	4,765
비율(%)	19.1	74.6	6.3	100

[표4. 장애 유무]를 보면 전체 강간 사례 중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19.1%(908건), ‘장애 없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74.6%(3,557건), 미파악 6.3%(300건)이다.

표 5. 준강간 유무

대분류	전체 통계		장애 있음	
	건	비율(%)	건	비율(%)

3) 부모의 지인(애인포함), 성매수자, 가출 당시 숙식 제공자 등

4) 단순대면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평소 오가며 인사정도 하는 사이이거나 혹은 친구의 지인정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가 없던 사람인 경우

준강간 있음	<u>1,401</u>	<u>29.4</u>	123	13.5
준강간 없음	2,738	57.5	679	74.8
미파악	626	13.1	106	11.7
계	4,765	100	908	100

[표5. 준강간 유무]에서 전체 강간 사례 중 술·약물·수면 등에 의한 준강간 사례는 29.4%(1,401건), 준강간이 아닌 사례는 57.5%(2,738건)이었다. 장애의 경우, 전체 통계에 비해 '준강간 없음'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준강간으로 분류된 사례 중 주관식 서술에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술·만취'는 79회, '잠·수면'은 26회, '약물·마약'은 8회가 언급되었다.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1)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

표 6.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

대분류	전체 통계		장애 있음	
	건	비율(%)	건	비율(%)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음	<u>984</u>	<u>20.7</u>	206건	22.7%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음	<u>2,979</u>	<u>62.5</u>	563건	62%
미파악	802	16.8	139건	15.3%
계	4,765	100	908건	100%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한다. [표 6.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강간 사례 중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은 62.5%(2,979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음은 20.7%(984건)이다. 2019년 통계결과에 비해 다소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강간 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음 비율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있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객관식 순위)

표 7.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 (대분류)

대분류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계
건	1,916	341	299	200	223	2,979

비율(%)	64.3	11.5	10.0	6.7	7.5	100
-------	------	------	------	-----	-----	-----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 (순위별)

구분	피·가해자관계	건	비율(%)
아는 관계	채팅상대자	464	15.6
	동급생·선후배	406	13.6
	단순대면인	350	11.7
	직장관계자	345	11.6
친밀한 관계	(전·현)애인	225	7.6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 (대분류)

대분류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계
건	528	239	79	69	69	984
비율(%)	53.7	24.3	8	7	7	100

표 10.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 (순위별)

구분	피·가해자관계	건	비율(%)
친밀한 관계	(전·현)애인	147	14.9
아는 관계	단순대면인	128	13.0
	동급생·선후배	121	12.3
	채팅상대자	96	9.8
	직장관계자	90	9.1

위 통계는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있는 성폭력에서 피·가해자 관계를 각각 대분류와 5순위별로 산출하였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있는 성폭력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피·가해자 관계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자(15.6%) > 동급생·선후배·친구(13.6%) > 단순대면인(11.7%) > 직장관계자(11.6%) > (전·현)애인(7.6%) 순서였다.

채팅상대자가 1순위(464건 15.6%)로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팅상대자는 전체 강간상담집계 26유형 중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다. 전체 채팅상대자 사건 612건 중 폭행·협

박 있는 경우는 15.7%(96건), 폭행·협박 없는 경우는 75.8%(464건)이었다(표13. 상위 5순위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참고). 전체 강간상당 중 폭행·협박 있는 경우(20.7%)보다 폭행·협박 있는 비율은 적었고, 전체 폭행·협박 없는 경우(62.5%)보다 폭행·협박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 [표 10.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전·현)애인(14.9%) > 단순대면인(13%) > 동급생·선후배·친구(12.3%) > 채팅상대자(9.8%) > 직장관계자(9.1%) 순서였다. 이 중 친밀성이 가장 높은 ‘(전·현)애인’ 관계에서 폭행·협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피·가해자 관계에서 (전·현)애인은 5위였다. 위 통계들을 통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와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가 다를 듯하지만 상위 5개 관계가 순위만 다를 뿐 동일하였다.

3) 폭행·협박 없는/있는 성폭력에서 장애, 준강간, 피·가해자 관계의 작용

표 1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2,979건)에서 장애·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19%	75%	6%	40%	57%	3%
563	2,244	172	1,205	1,706	68

표 12.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984건)에서 장애·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21%	76%	3%	14%	80%	6%
206	744	34	140	789	55

[표 11,1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2,979건)/있는 성폭력(984건)에서 장애·준강간 유무]에서 보면, 직접적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에서 장애 있는 경우 비율이 21%인데, 직접적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 장애 있는 경우 19%에 비해 다소 높다. 그리고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서 준강간은 40%, 준강간 없는 상황도 57%에 달했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성폭력에서 준강간은 14%, 준강간 없는 상황은 80%이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는 준강간 있음 비율(40%)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준강간 있음 비율(14%)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상위 5순위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피·가해자 관계	건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있음	없음	미파악
채팅상대자	612	175	417	20	105	464	43	96	464	52
		28.6	68.1	3.3	17.2	75.8	7.0	15.7	75.8	8.5
동급생· 선후배·친구	591	85	479	27	251	296	44	121	406	64
		14.4	81.0	4.6	42.5	50.1	7.4	20.5	68.7	10.8
단순대면인	544	119	408	17	244	240	60	128	350	66
		21.9	75.0	3.1	44.9	44.1	11.0	23.5	64.3	12.1
직장관계자	491	32	420	39	215	227	49	90	345	56
		6.5	85.6	7.9	43.5	46.0	9.9	18.2	69.8	11.3
(전·현)애인	413	56	341	16	80	299	34	147	225	41
		13.6	82.6	3.9	19.4	72.4	8.2	35.6	54.5	9.9

[표 13. 상위 5순위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를 통해 피·가해자 관계를 분류한 26유형 중 상위 5위를 나타낸 관계인 채팅 상대자,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 대면인, 직장관계자, (전·현)애인 사건에서 장애유무, 준강간유무,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피·가해자 관계를 차지한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 비율이 전체 장애 있음 비율 19.1%보다 훨씬 높은 28.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단순대면인이 21.9%였다. 장애여성 피해자는 채팅과 지인을 통해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 관계자의 경우 준강간 있음/없음 상황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29.4%)보다 훨씬 높은 ‘준강간’ 비율을 나타냈다. 앞서 분석한 내용대로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피·가해자 유형으로는 채팅상대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현)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을 20.7%에 훨씬 상회하는 35.6%가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현 애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여서 폭행·협박이 필요없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여서 폭행·협박이 더 쉽게 채택되기도 한다.

폭행·협박 없는 경우는 채팅상대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자들 흠린 치는 방법’, ‘술 마시고 강간하고 고소당하지 않는 법’ 등 현재 법이 규율하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플랫폼(채팅, 어플)을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남성중심의 강간문화속에서 대상화되는 여성 중 장애여성의 비율이 높다. 준강간에서 폭행·협박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 관계자의 관계에서 준강간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도 술·약물·수면이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그날의 사건만이 아니다.

4)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당시 상황(객관식 순위)

전체(4,765건)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상황은 62.5%(2,979건)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성폭력(강간)이 발생하는 것일까? 폭행·협박 없는 피해 당시 상황은 본 통계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본 통계는 피해 당시 상황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집계하였다. 아래의 통계는 1순위, 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많았던 상황이다.

표 14. 피해 당시 상황(세부)

		강간	희유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폭언	괴롭힘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과시	경제적 속박	기타	계	무응답
전체	비율	<u>19.9</u>	<u>17.6</u>	<u>11.0</u>	<u>9.7</u>	<u>7.9</u>	<u>4.6</u>	<u>2.9</u>	<u>1.8</u>	<u>1.5</u>	<u>1.4</u>	<u>21.7</u>	100	
	건수	576	508	318	281	228	134	84	52	44	40	626	2891	1874
폭행·협박 없는	비율	18.1	<u>21.5</u>	12.0	11.3	10.0	2.3	2.6	2.4	1.5	1.3	17.0	100.0	
	건수	356	423	236	223	198	45	51	48	29	26	336	1971	1008
장애 있음	비율	<u>23.2</u>	<u>22.8</u>	5.7	9.9	8.3	4.1	2.2	1.1	1.6	0.3	20.7	100.0	
	건수	146	143	36	62	52	26	14	7	10	2	130	628	280
준강간	비율	<u>22.7</u>	12.2	6.4	10.5	1.7	4.6	2.2	1.5	2.0	0.2	35.9	100.0	
	건수	93	50	26	43	7	19	9	6	8	1	147	409	992
채팅대상자	비율	17.8	<u>31.2</u>	1.1	13.0	16.5	3.5	0.2	2.0	0.9	2.2	11.6	100.0	
	건수	81	142	5	59	75	16	1	9	4	10	53	455	157
전현애인	비율	<u>30.5</u>	14.5	1.1	9.5	8.8	11.5	4.2	4.6	1.5	1.9	11.8	100.0	
	건수	80	38	3	25	23	30	11	12	4	5	31	262	151
친부모	비율	15.7	9.6	<u>25.3</u>	2.4	7.2	6.0	0.0	4.8	3.6	2.4	22.9	100.0	
	건수	13	8	21	2	6	5	0	4	3	2	19	83	28
모르는 사람	비율	18.1	14.5	0.6	<u>19.3</u>	6.0	1.2	3.6	0.6	1.2	1.2	33.7	100.0	
	건수	30	24	1	32	10	2	6	1	2	2	56	166	145

피해 당시 상황은 장애 있음,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족, 모르는 사람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 하나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계로 비율을 산출하였고, 무응답은 별도 표기하였다.

[표 14. 피해 당시 상황(세부)]를 살펴보면, 전체 집계에서는 강요 > 회유 > 지위 > 속임 > 그루밍 > 폭언의 순서로 피해 당시 상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는 회유가 가장 높았고,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는 강요와 회유가 비슷하게 가장 높았다. 준강간 상황에서는 강요가 가장 높았다. 채팅상대자의 경우는 회유, 전·현애인은 강요, 친부모는 지위 이용, 모르는 사람의 경우 속임이 가장 많았다.

3.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과 그 이유

1)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표 15.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비율

구분	신고·고소함	신고·고소하지 않음	미파악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
건	3,235	1,009	521	4,765

[표 15.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한 경우는 67.9%(3,235건),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1,009건)이다. 전성협 전체 통계 중 신고·고소 비율은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성범죄 신고율 2013년 1.1%, 2016년 2.2%, 2019년 1.7% 보다 높다. 높은 신고·고소율은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소’를 직접 찾고, 안내받아 지원받게 된 경우로 신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으나 성폭력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전성협 통계에서 ‘강간’상담 중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62.5%이었다(표 6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 참조). 이러한 현실에서도 신고·고소율이 높다는 것은 폭행·협박, 증거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상황은 장애 있음,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16.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신고한	신고 안한	무응답	계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0
	건수	3,235	1,009	521	4,765
폭행협박 없는	비율	71.7	22.7	5.6	100.0
	건수	2,135	677	167	2,979
장애있음	비율	83.7	10.7	5.6	100.0
	건수	760	97	51	908
준강간	비율	76.3	16.6	7.1	100.0
	건수	1,069	232	100	1,401
채팅상대자	비율	81.5	13.1	5.4	100.0
	건수	499	80	33	612
전현애인	비율	67.8	23.0	9.2	100.0
	건수	280	95	38	413
친부모	비율	60.4	29.7	9.9	100.0
	건수	67	33	11	111
모르는사람	비율	72.9	20.0	7.1	100.0
	건수	227	62	22	311

[표 16.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를 통해 전체 집계 중에서 신고 안한 비율이 ‘친부모’가 29.7%, ‘전·현 애인’이 23.0% 순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해당 통계를 통해 피해자가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있음’은 신고 안한 비율이 10.7%로 전체 통계보다 낮게 나왔다. 장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신고한 비율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비율이 8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주변에 의한 고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3)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1,009건)이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적은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응답 83건을 제외한 926건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17.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구분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타	계	미응답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83

[표 17.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를 통해 전체 926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 > 사건관련 > 2차 피해 > 주변인 관계 > 다른 해결 원함 > 피해인식 여부 > 가해자 상황 순으로 나왔다. 7가지 카테고리 중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다른 해결방법 희망’을 살펴보면, ‘피해자 상황’은 고소를 원하지 않음, 자책, 수치심,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싶은 마음 등 피해자 스스로의 자책감, 무력감과 관련이 높았다.

‘사건관련’은 고소취하, 공소시효, 합의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증거, 폭행·협박 없음, 합의한 것처럼 보일까봐 등 피해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가 있는 폭행, 불법촬영 건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이 폭행·협박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고 조언하거나,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거나 등 수사기관의 안내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부분들도 확인된다. ‘다른 해결방법 원함’에서 피해자들은 심리상담만을 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 외 주목할 것은 회사·학교·종교 등 조직내 징계조치 등 수사·법적 과정 외에 다른 해결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등은 결론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 18.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파·가해자 관계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타	계	무응답
전체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수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폭행·협박 없음	비율	<u>33.1</u>	<u>32.3</u>	9.8	8.7	5.9	5.7	4.3	0.2	100	
	건수	209	204	62	55	37	36	27	2	632	45
장애 있음	비율	<u>34.1</u>	18.2	12.5	17.1	3.4	10.2	3.4	1.1	100	
	건수	30	16	11	15	3	9	3	1	88	9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 타	계	무 응답
준강간	비율	<u>36.2</u>	<u>31.2</u>	13.1	7.7	3.2	4.2	4.5	0	100	
	건수	80	69	29	17	7	9	10	0	221	11
채팅상대자	비율	<u>43.8</u>	20.5	12.3	6.9	6.9	5.5	4.1	0	100	
	건수	32	15	9	5	5	4	3	0	73	7
전형애인	비율	<u>34.8</u>	29.2	12.3	4.5	11.2	4.5	3.5	0	100	
	건수	31	26	11	4	10	4	3	0	89	6
친부모	비율	<u>29.0</u>	16.1	0	<u>29.0</u>	6.5	0	19.4	0	100	
	건수	9	5	0	9	2	0	6	0	31	2
모르는사람	비율	<u>44.1</u>	25.4	11.9	3.4	3.4	6.8	5.0	0	100	
	건수	26	15	7	2	2	4	3	0	59	3

[표 18.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에서 폭행·협박 없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 ‘사건관련’이 ‘피해자 상황’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현행 강간죄의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 준강간은 ‘심신상실’과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통계에서 채팅상대자는 43.8%, 모르는 사람은 44.1%가 ‘피해자 상황’을 이유로 신고·고소하지 못하였다. 채팅상대자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만나게 되었거나, 성적 관계를 예상하거나 원했다는 식의 선입견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겪는 자책감과 무력감의 수위를 보면 채팅상대자와의 만남과 성적 침해가 예상 밖, 통제 밖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흔히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도움 받고 지지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쉬운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자책감과 무력감의 벽은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친부모’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주변인 관계’가 ‘피해자 상황’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을 신고하는 것, 가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만류, 피해자가 겪게 되는 부담의 현실을 보여준다. 친족성폭력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이 필요한 지점이다.

4. 불송치/불기소 통계

전체사례 4,765건 중 신고·고소를 진행한 경우는 3,235건이다. 이 중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⁵⁾를 살펴보았다. 본 통계에서 불송치/불기소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

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들을 얼마나 누락시키고 있는지,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그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강간’과 강간 이외 성폭력 죄목들은 불송치와 불기소 비율⁶⁾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 비판, 제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경찰·검찰통계를 통한 불송치/불기소율을 살피는 것과, 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되는 과제다. 본 통계에서는 2022년 상담 강간상담사례 중 ‘불송치/불기소’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불송치/불기소 현황

표 19. 신고·고소된 사건,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사례수

상황	전체 강간상담	신고·고소함	신고·고소 않음	미파악		
건	4,765	3,235	1,009	521		
비율(%)	100.0	67.9	21.2	10.9		
상황	신고·고소함	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불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수사중	해당 없음	미파악
건	3,235	1,590	571	492	12	570
상황	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	1,590	1,157	125	146	162	
상황	불송치	이의제기함	이의제기 안함	고려중	미파악	
건	571	134	210	29	198	
비율(%)	100.0	23.5	36.8	5.1	34.7	
상황	불송치 후 이의제기 함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	134	19	72	12	31	
비율(%)	100.0	14.2	53.7	9.0	23.1	

- 5) 해당 수치는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기는 어렵다. 불송치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의 결정이고, 송치는 검경수사권 이전과 이후의 송치를 포함한다. 송치가 많다면 불송치 결정을 적게 한 것이 아닌 수사종결권이 없던 상황에서의 경찰 송치(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의견을 포함함)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기소의 경우도 검경수사권 분리 이전의 기소가 있고, 분리 이후 송치를 거친 기소,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의 기소가 포함되어 있다.
- 6) 이 통계분석에서는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비율 도출에서 전체 숫자 상정이 모호할 수 있다. 유의미한 ‘비율’이 아닐 경우 비율 표기는 하지 않고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했으며, 비율이 유의미할 때는 비율을 표기했다.

전체 신고건수(3,235건) 중 불송치건은 571건이었다. [표 19. 신고·고소된 사건,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사례수]를 살펴보면, 이 중 이의제기를 한 건은 134건(23.5%), 이의제기 고려중은 29건(5.1%), 이의제기 안함 210건(36.8%), 미파악 198건(34.7%)이다. 이의제기를 한 건은 고려중인 것과 합쳐도 전체 불송치 건 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 공론화를 지속하기 어렵고, 결국 처벌의사가 중단하게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이 초기 사건을 분리 이전보다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의제기 한 134건 중 불기소 처분된 건수는 53.7%(72건)이며, 기소된 건은 14.2%(19건)이었다. 불송치가 되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하여도 14.2% 정도만 기소됨을 알 수 있다.

표 20. 강간상담 및 신고·고소한 강간 대비 기소비율

강간상담(전체)	기소된 건 (전체)	전체 강간상담 대비 기소율
4,765	1,176	24.7%
신고·고소한 강간(전체)	기소된 건 (전체)	신고·고소한 강간 대비 기소율
3,235	1,176	36.4%

전체 강간상담과 신고·고소한 강간사례 전체 중 기소된 것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상담 사례 대비 기소 건은 1/4, 신고·고소한 상담사례 대비 1/3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불송치/불기소의 이유⁷⁾

표 21. 불송치/불기소 이유 (객관식, 복수 응답)

구분	불송치 이유응답	비율(%)	불기소 이유응답	비율(%)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5	17.0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17.6	38	18.4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1	15.0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9.3	21	10.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6	7.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3	1.5

7) 불송치, 불기소 이유를 객관식 항목 중 1, 2순위 선택으로 집계. 1, 2순위 응답을 합한 내용과 응답된 전체숫자를 비율로 산출하였다.

진술오염	9	1.5	2	1.0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2	1.0
공소시효 도과	2	0.3	0	0.0
기타(증거불충분/혐의 없음/합의)	135	22.9	45	21.8
미파악	37	6.3	13	6.3
총계	590	100.0	206	100.0

[표 21. 불송치/불기소 이유 (객관식, 복수 응답)]를 살펴보면, 불송치/불기소 이유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합의 등의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가장 높았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는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의 이유가 19.3%로 가장 높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17.6%로 두 번째였다. 불기소에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이 18.4%로 가장 높고,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이 17.0%로 두 번째로 높았다.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송치 판단이 기술되어 있다.

성관계 중 물고 빠는 것은 상해로 보기 어려움 /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 / 당시에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음 / 유형력 행사 증거 없음 / 잡아끌고 밀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 후 함께 산부인과 방문함 /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 피해 이후 지속적 방문 및 연락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 받았거나, 방문을 했다는 것, 산부인과를 갔다는 것 등의 사정은 사건 당시 상황과 무관할 수 있고, 연락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폭행·협박 입증 여부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저항유무, 사건 이후 '피·가해자 관계', '피해자다움'으로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불송치 이유

표 22. 준강간, 장애 있음,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불송치 이유

구분	불송치 이유 전체	비율	장애 있음	비율	준강간	비율	폭행· 협박 없음	비율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7	17.2	21	11.5	83	18.4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u>17.6</u>	56	<u>26.0</u>	39	<u>21.4</u>	86	<u>19.1</u>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5	16.3	16	8.8	64	14.2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9.3	9	4.2	11	6.0	48	10.7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	0.5	25	<u>13.7</u>	26	5.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10	4.7	5	2.7	16	3.6
진술오염	9	1.5	8	3.7	4	2.2	5	1.1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5	2.3	2	1.1	8	1.8
공소시효 도과	2	0.3	0	0.0	0	0.0	2	0.4
기타(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 합의)	135	22.9	51	23.7	43	23.6	90	20.0
미파악	37	6.3	3	1.4	16	8.8	22	4.9
총계	590	100.0	215	100.0	182	100.0	450	100.0

[표 22. 준강간, 장애 있음,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불송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 있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가장 높았다. ‘장애를 이유로 진술신빙성 부족’ 이라고 판단한 이유 기재도 많았다. 아래의 내용은 자료집에 별첨한 2022년 전성형 통계 분석 전문 [표 25. 불송치 이유 세부 응답 (주관식)]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장애있는 사례의 경우, 진술신빙성 의심과 피해자다움은 장애라는 상황이 더해져 피해를 더욱 입증받기 어렵다. 장애로 인해 날짜 장소, 행위 태양, 가해자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술번복, 진술신빙성 의심으로 쉽게 연결된다. 장애로 인해 수사기관-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신뢰받기 더욱 어렵고, 가족에 의해 피해가 축소·왜곡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보다 주변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도 한다. 제3자에 의한 진술오염, 거짓, 허위신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분석가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진술신빙성 없다’는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진술신빙성을 쉽게 배척한다. 진술분석가가 성폭력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지, 진술분석가의 의견 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황을 보조할 만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가해자

가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로 인해 성폭력 발생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준강간 사건은 기타(증거불충분/공소권 없음/합의) 23.6%,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 21.4%,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 어려움’ 13.7%,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5%였다. 준강간의 특성상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강간피해가 있었기에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의 모순이나, 현장 수사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입증 어려움, 폭행·협박 없음’이 25.2%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진술신빙성과 항거불능·폭행·협박 입증,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더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가해자의 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거나(사유>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실림, 피해자의 기억이 없고 가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였으며(사유>피해자가 지목한 모델 없음, 피해시간 의심, 동행한 친구와 진술 불일치,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신고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고소진행을 포기함),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했다(사유>수면 중 성폭력 피해 어렵고 증거불충분, 불법촬영물 상 피·가해자가 대화). 또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여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사유>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 스스로 차에 탔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하였다, 모텔로 가해자와 합의 동행).

준강간을 완전히 심신 기능을 상실하여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이 가능한 상황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과 수사관의 피해자다움 통념이 겹치며 준강간은 법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 정신을 잃는 것과 별개로 신체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블랙아웃’ 상황의 준강간 사례에서도 ‘피해자답지 않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불송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⁸⁾고 답했다. 해당 설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회인식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② 불기소의 이유

[표 21. 불송치·불기소의 이유 (객관식, 복수 응답) 참고]를 통해 불기소 이유에서도 불송치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후에 관계를 유지했을 때 성폭력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이 피해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피·가해자 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가족, 부

8)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8.13

부의 경우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같은 직장이거나,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침해, 성적 언동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피·가해자 관계중심으로만 사건을 판단한다면 가해자의 권력과 전횡에 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극심한 저항을 하지 않거나, 극단적 관계 단절을 하지 않으면 ‘동위한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술 확보, 현장 및 정황적 증거확보, 사건 발생의 맥락과 이후 문제에 대한 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판단이 요구된다.

3) 불송치/불기소와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세부 통계

불송치/불기소된 사례를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여부에 대해 전체 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신고·고소한 건, 불송치, 불기소 된 사안 중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23. 불송치/불기소 된 강간사례(571건)에서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신고·고소(3235건)	760건	2,377건	98건
	23.5%	73.5%	3.0%
불송치(571건)	198건	352건	21건
	34.7%	61.6%	3.7%
불기소(213건)	71건	127건	15건
	33.3%	59.6%	7.0%
전체(4,765건)	19.1%	74.6%	6.3%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신고·고소(3235건)	1,069건	1,893건	273건
	33.0%	58.5%	8.4%
불송치(571건)	180건	349건	42건
	31.5%	61.1%	7.4%
불기소(213건)	83건	104건	26건
	39.0%	48.8%	12.2%
전체(4,765건)	29.4%	57.5%	13.1%
	폭행협박 없음	폭행협박 있음	미파악

신고/고소(3235건)	2,135건	775건	325건
	66.0%	24.0%	10.0%
불송치(571건)	412건	107건	52건
	72.2%	18.7%	9.1%
불기소(213건)	140건	50건	23건
	65.7%	23.5%	10.8%
전체(4,765건)	62.5%	20.7%	16.8%

□ 전체 상담 중 장애 있음은 19.1%, 신고·고소한 건 중 장애 있음은 23.5%, 불송치 된 장애 사례는 34.7%, 불기소 된 장애 사례는 33.3%로 훨씬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 있는 강간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처리하는 등의 수사과정의 문제가 크다.

□ 전체 상담 중 준강간은 29.4%, 신고·고소한 건 중 준강간은 33.0%, 불송치 된 준강간은 31.5%, 불기소 된 준강간은 39.0%로 훨씬 증가하였다.

□ 전체 상담 중 폭행·협박 없는 사례는 62.5%, 신고·고소한 건 중 폭행·협박 없는 사례는 66.0%, 불송치된 건 중 폭행·협박 없는 비율은 72.2%로 훨씬 증가하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18.7%가 불송치 되고 있었다. 불기소는 65.7%가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었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23.5%가 불기소 되고 있었다.

4) 불송치/불기소 건에서 피·가해자 관계

표 24.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

피·가해자관계(구분)	전체상담 중 비율(%)	불송치 중 비율(%)	불기소 중 비율(%)
친족, 친·인척	10.2	5.4	5.2
친밀한 관계	13.6	16.6	17.8
아는 관계	57.8	64.1	67.1
모르는 사람	6.5	5.8	3.8
기타, 미파악	11.8	8.1	6.1

[표 24.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가해자 관계를 전

체 상담, 불송치 건, 불기소 건 중에서 살펴보면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상담 전체 중 비율보다 불송치/불기소 내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 친족 성폭력과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고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인데, 신고·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불송치/불기소에서 누락되는 비율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친밀한 관계의 경우 상담 전체는 13.6%, 불송치는 16.6%, 불기소는 17.8%로 비중이 높아진다. 아는 관계 역시 상담 전체는 57.8%, 불송치는 64.1%, 불기소는 67.1%로 높아진다. 친밀한 관계와 아는 관계는 실제 강간사례 중 비중이 높으나 수사과정에서 배제, 누락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자료집에 별첨한 2022년 전성협 통계분석 전문 [표 30.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파·가해자 관계 (26유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전체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관계는 ‘채팅상대자’였는데, 불송치 중에서는 ‘단순대면인’이 가장 높았고, 불기소에서는 ‘직장관계자’가 가장 높았다. 친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등은 전체 상담 > 불송치 >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적어진다. 반면 전·현애인, 과거 배우자, 단순대면인, 채팅상대자, 직장 관계자의 경우 전체 상담 중 비율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 발생 관계, 조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현애인, 과거 배우자, 단순대면인, 채팅상대자, 직장 관계자 등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비율이 높은 것은 수사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수사이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II. 다양한 현실에서의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문제와 ‘동의’의 의미

-준강간, 위력, 성매매, 청소년, 장애, 이주, 부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은 특정 성폭력 유형에만 한정한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또는 현재 법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의 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서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의 문제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후 강간죄 구성요건이 변경된다면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여러 유형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질문도 있다.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3년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릴레이 리포트]를 통해 준강간, 위력, 성매매, 청소년, 장애, 이주, 부부 유형의 성폭력의 현황과 폭행·협박 기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의여부로의 변경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짚었다. 아래는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1. 준강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 공대위)는 2020년 전성협 준강간사건 통계분석(67개소, 760명)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는 14%(112명)임을 확인하였다. 불기소와 무죄 판단 근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다, 블랙아웃⁹⁾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답지 않다,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서’가 이유였다.

준강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억이 아닌 피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전화·문자 기록, 가해자와의 관계, 평소 행동패턴과 전혀 다른 행동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인지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CTV와 가해자의 기억뿐이다.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 없이 걷는 등의 모습에 대해 가해자는 ‘만취인 줄 몰랐다’, ‘스킨십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사기관은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가 동의한 것이라 오인·착각할 수 있었다’,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준강간은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로 구조화되고, 해당 진술은 불기소이유가 된다. 심지어 술이나 클럽에서의 상황은 즐겁게 혹은 쉽게 성관계까지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성폭력 통념이 불기소 이유에 더해진다. 준강간공대위 통계분석에서 피해자의 17%가 수사·재판기관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신고를 하지 않음, 피해자답지 않음, 피해자의 성이력 등이었다. 이러한 태도와 판단이 준강간의 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방조한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술·잠·약물에 의한 심신상실·항거불능상태와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고의성’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피해자가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추정한 것이라면 고의를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가해자의 관계·상태·진술신빙성,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2. 위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피·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제일 높다. 고용, 평가 등의 직장 내 위계가 성차별, 남성중심 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갑질, 성희롱, 성폭력 등은 일상적인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 조명됐다. ‘소속집단’내 권력자가 자행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신

9)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 -알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인 패싱아웃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_대법원 2018도9781

고할 수도 없고, 생계,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을 위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를 이용할 때 폭행·협박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강간죄가 처벌하지 못했던 폭행·협박 없는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은 강간죄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그런데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근거로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고 주장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건수는 2021년 24건, ‘강간죄’ 건수는 2021년 5,263건이다.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이다.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하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등 위세나 권세에 눌려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¹⁰⁾한다. 이는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이며, 피해자의 나이, 장애, 판단능력에 따라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폭행·협박,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¹¹⁾’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실에서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법 취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강간죄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

3. 성매매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는 성관계]

1988년 12월, 대구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았고, 3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성매매는 무수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반성매매운동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것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 중 십대여성, 이주여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사회인식은 ‘성매매’로 이해되어 피해자는 성매매, 무고죄의 처벌대상

10)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진행 김현정 앵커, 대담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11) '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 2018.3.26. 김경욱 기자

이 된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도,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력함이다. 피해자들 역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지만 처벌 두려움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렵다.

4. 청소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는 성관계]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사귄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귀어 주겠다고 회유·설득·위협을 반복했다.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친절히 다가오는 가해자가 좋았다. 이러한 친밀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이뤄진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등의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다. 청소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주변이 납득할 수 있게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강간문화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한다. 포르노그래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5. 장애여성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쉽지 않고 1)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여성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등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가 입증되어야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피해자는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이동하거나'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장애정도'로 얼마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한다.

두 번째, 가해자들은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한다. 수사기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위계', '위력'에 대한 판단이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릴레이리포트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은 나이와 장애여부만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 '위력12)'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나 작동될 수 있다.

6. 이주여성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¹³⁾]

이주여성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할 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언제든지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이주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고, 차별

12)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판결 등 참조)

13) 본 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결과보고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판결을 통해 본 이주여성 대상 '폭력' 사건 특징과 문제점 - 성·가정폭력 체류 중심으로" 중 '이주여성 성폭력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요약한 글

과 혐오를 강화한다. 이러한 차별은 이주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든다.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주로 노동, 가족,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한다. 노동현장에서서의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이다. 그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장내에서의 성적 언동, 신체 접촉은 매우 일반적인 ‘한국문화’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주여성 피해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기회를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했던 동료들은 피고인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다른 피해자도 있었지만 진술을 거절했다. 다른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이 피해자를 조력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업주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폭행·협박, 업무상 위력 등 엄격한 인정은 불필요한 처사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관계인이며,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일하다. 규범적 성역할만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의 태도, 출신국과 인종에 대한 차별,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사돈덕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해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친정엄마의 사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을 위해 신고 뒤 피해 진술을 번복한 사촌동생의 사정이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증거로 선택된다.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가해자들은 불법성매매, 강제출국대상자 등을 이유로 협박하며 성폭력을 행사한다. '이주여성을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분명한 유형력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주여성 피해자는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불리한 진술의 구별 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험에 처한다. 조력을 받기 어렵고 피해를 인정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인 채 피해경험을 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7. 부부

1970년,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이었다. 당시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며, 1995년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2012년,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아

내를 포함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2013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사건에서 아내강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최협의설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둬으로써 아내강간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치시켰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경험한 피해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도 가족, 친인척,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아내강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아내강간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험 자체도 매우 적다. 2022년 한국여성 의전화 상담통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이혼하면 그만인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아내강간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며 가부장 중심의 체제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지만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Ⅲ. 다양한 성폭력 현실에서의 '동의' 의미와 강간죄개정 필요성

1. 폭행·협박 유무로 '진짜' 성폭력을 선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현실과 맥락을 삭제한다.

전성협 통계를 통해 직접적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건이 62.5%(2,979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가 22.7%임을 확인하였다. 2019년 발표한 전성협 통계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측면은 있으나, 강간 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비율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성협 통계와 릴레이 리포트를 통해 해당 주장만으로 끝낼 수 없음을 확인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황에서 폭행·협박 유무는 장애, 준강간, 피·가해자 관계 안에서 복잡한 함의들 담으며 공존하고 있기에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강간 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은 24.7%이며, 신고·고소한 강간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

은 36.4%였다.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한 건은 23.5%, 이의제기 후 기소된 건은 14.2%에 불과했다. 불송치, 불기소 이유에서는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주요 판단 근거이며,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행·협박 입증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연이어 높게 나온 것은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불인정으로 연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추하게 된다.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저항유무’의 기준은 오랫동안 ‘저항하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라는 피해자다움을 형성해왔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진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여러 상황, 관계, 조건, 전후의 맥락, 피해자의 대처방식 등이 수사기관으로는 ‘믿지 못할 것’이 되고 피해자가 진술신빙성 없는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심지어 앞서 살핀 신고·고소하지 않은/못한 이유에서 경찰이 증거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폭행·협박 정도 요건으로 불송치 판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최협의설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문제인지, 변화되어 온 판례를 숙지하지 않는 문제인지, 피해자 의심, 가해자 봐주기 식의 편견이 폭행·협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응집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져야 한다.

협소하게 판단되어져 왔던 폭행·협박,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위계·위력 모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변경하거나, 판례를 완화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신빙성 인정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지 않으면 요건 성립/불성립도 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론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불송치와 불기소 이유, 피·가해자 관계, 장애 및 준강간 여부 등도 세부적인 통계와 분석이 진행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판단기준, 수사력 등이 변화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 과정 및 사회적 지원, 예방 과정도 변화될 수 있다.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 기준,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문제 삼는 판례와 학설은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피해자 진술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맥락적으로 듣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피해자다움이나 피해자의 극심한 저항유무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신고/고소,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다. ‘진짜’ 성폭력을 선별하려는 것은 성폭력의 본진과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것이며, 남성중심의 강간문화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현실과 맥락을 삭제한다. ‘폭행·협박’은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폭행·협박 유무가 아닌 다양한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봐야 한다.

1)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 : 자책, 낙인, 보복, 2차 피해, 관계단절, 사회적 고립 등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한 경우는 67.9%(3,235건),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1,009건)이다. 전성협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고하지 않은 비율 23.8%, 1009건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건’이 아닌 1,009명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상담소의 수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황·상태, 사건관련, 2차 피해 두려움, 주변인관계, 다른 해결 원함, 피해인식 여부, 가해자 상황 등 7가지 카테고리 안에는 피해자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다.

가장 많은 내용이 담겼던 ‘피해자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고한 사회통념으로 인해 본인 탓이라 자책하고, 폭행·협박이 없어서 피해가 맞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오랜 시간 혼자 견디느라 고소할 생각을 못했다. ‘사건관련’은 증거가 없어서, 증거 있는 사건만 고소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울까봐, 폭행·협박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 증거를 찾아오라, 입증이 어렵다는 경찰관, 변호사의 이야기에 신고를 포기하고, 고소를 진행하다가 결국 취하를 결정하게 된다. 관계가 단절될까봐 가족·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고, 가족이 신고를 반대하고,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서 등 ‘주변인의 반대와 관계’로 인해 신고의사를 유지하기 어렵다. ‘2차 피해’와 가해자의 보복, 직장·가족·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두렵다. 장애 여성의 경우,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로 인해 피해경험을 성적권리가 침해된 성폭력으로 인지하기도, 말하기도 어렵다. 가해자가 친부모, 애인, 직장동료 등 가장 친밀한 관계여서 신고가 주저된다.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자신, 직장과 소속업체, 종교나 문화적 관념, 가족과 주변사람, 경찰 등으로부터 강한 자책감, 무력감, 힘듦, 해결이 요원한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고소는 손쉬운 방법이 결코 아니며, 많은 난관과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결정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많은 서사가 폭행·협박이라는 법적 기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2) 폭행·협박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상황 : 강요, 회유, 속임, 그루밍, 지위이용 등

성폭력에서의 피해 당시 상황은 성폭력 사건이 폭행·협박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러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봐야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피해 당시 상황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는 ‘원하지 않는, 강제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제압’, ‘지속적인 요구, 구걸, 애원’, ‘헤어진다, 이혼하겠다’였다. 피해자의 ‘원하지 않는’ 의사가 수용되지 않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유지 또는 중단’을 협박으로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구걸, 애

원'하는 집요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심리적으로 기운 없고 취약한 상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음,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가출로 인한 숙식 제공, 수급비 갈취, 만취상태, 집에 가게 해준다고 하고서 못 가게 함, 금전을 미끼로 성폭행, 집 구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유, 속임의 방식이 작동된다. '예쁘다, 사귀자, 결혼하자, 용돈을 줌, 노는 것이다, 커피를 사주겠다, 모텔에 잠깐만 들어갔다 가자, 술모임이 아닌 마약병개, 애기만 하자, 마사지 하는 것이다, 고액의 알바 소개' 등이다. 이와 같이 가해자는 폭행·협박이 아닌 강요, 회유,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위에서 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본인의 의도대로 이용한다.

3) 피해자의 불평등한 사회적구조적 조건과 위치

반성폭력 운동현장들은 협소한 기준의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를 표하기 어려운, 동의가 강제되는, 동의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동의가 전제된'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기억이 없는 항거불능상태, 직장·소속 집단 안에서의 불평등한 위치,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과 불법적 위치, 보호자에 의해 의사가 대리되는 청소년·장애여성, '미등록'이라는 불법체류 자격과 지위의 이주여성, 가부장·정상가족 프레임속에서 강요되는 성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위치 등 피해자들은 나이, 장애, 국적, 가족형태, 성적체성, 인종, 경제력, 혼인여부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에 놓여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가 놓인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차별속에서 발생한다. 성폭력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폭행·협박, 위계, 위력, 항거불능 상태를 물리적인 협소한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 불평등한 개인·권력관계·사회구조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3. 이미 모두의 상식인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당장 개정하라

앞선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동의여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동의'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동의도 거절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이야기가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 될 뿐 가해자의 고의성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김성돈(2019)¹⁴⁾은 위력 간음죄의 피·가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

14) 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3~155쪽

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매매여성의 의사는 '돈=동의'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진다.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고, '동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동의·판단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규정되는 청소년, 장애여성일 것이다. 일상에서 의사가 대리되는 청소년과 장애여성인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주여성의 불법적 위치는 동의가 필요없는 조건이며, 사건 진행시 의사소통 조력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동의여부는 제대로 살피지지 않는다. 가부장·남성 중심 사회에서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아내의 '동의'는 확인될 필요없이 전제된 것이다. '동의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닌 사회구조로 인해 수많은 가해자들은 동의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고, 자의적으로 동의, 합의를 '추정'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인식,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국제사회도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하라고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 하며,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국가와 사법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상황, 차별적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침해는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동의여부'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물으며 가해자를 조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¹⁵⁾. 피해자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적극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당장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 개정운동은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의가 가능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들이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으로서 동의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동의를 '주체'로 서고,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사회는 함께해야 한다.

15)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콜로퀴엄> 자료집

‘비동의 강간죄’ 반대주장에 대한 검토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1.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1) 강간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규정하는지(consent-based definition), ‘강제력, 폭력’ 여부로 규정하는지(force, coercion-based definition)에 따라 강간죄의 기본 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강간죄를 ‘비동의간음죄’로 명명하여 논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동의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만이 아닌, 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즉 성폭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동의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제를 유지하면서 소위 ‘비동의간음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한국에 대한 권고문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Amend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so as to place the lack of free consent of the victim at the center of the definition)하라고 권고함으로써,²⁾ 단순히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만 것 문제가 아니라, 강간의 정의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는 결정권의 주체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의사, 즉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나 성적 접촉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자 성폭력의 본질인 것이다.

때로는 어린 나이나 장애, 음주나 약물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동의 여부를 제대

1) 이경환,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김삼화,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추진 토론회 자료집(2019. 11.13)

2) CEDAW/C/KOR/CO/8, para. 23 <https://undocs.org/CEDAW/C/KOR/CO/8>

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실되게 선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강제력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강제력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비가시적 권력관계, 협박, 기망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은 성폭력의 본질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징표 중 하나일 뿐이다. 피해자의 동의 의사 유무를 중심으로 강간 등 성폭력을 규정하면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나이, 장애, 주취상태, 약물 영향,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현상(psychological freezing)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성폭력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을 ‘폭행·협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일지 몰라도 성폭력의 본질과 기본적 구성요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³⁾에 있어 많은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원론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폭력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지만, 실제로 ‘동의’를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적 구성요건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반대론 또는 유보적 입장이 존재한다. 그 중 주요한 몇 가지 반대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2. 반대논리와 검토

1) 반대논리 ①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⁴⁾

① 특별한 강제력 행사 없이 상당수의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형법을 통해 막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제력이 없는데도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교에 응한다는 논리는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며,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인 가부장주의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⁵⁾

3) 기자이자 성폭력 피해생존자인 크리스틴 홀스트(Kirstine Holst)는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과 폭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강간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9/04/denmark-consent-laws-kirstine-holst/>

4) 연합뉴스 2023. 1. 26.자 기사, 「與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갈등 조장' 여가부 폐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59300001>

5) 조국, 형사법의 성평향(전면개정판), 박영사, 2018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존중하고 과잉보호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부분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에 포섭되지 않는 위력이나 특별한 강제력의 행사 없이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지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통상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비장애인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상대방과의 자유롭고 대등한 성적 교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의 차이, 신체적 능력의 차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자간의 관계(종교인과 신자, 의사와 환자, 상담자와 내담자 등), 사건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폭행, 협박, 위력 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피해사례 1,030명 중 71.4%인 735명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⁶⁾ 구체적인 사례 유형으로는 상습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온 남자친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입원 중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여행지에서 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이 있으며,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이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으나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② 피해자는 ‘긴장성 부동화’ 상태를 경험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외국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황에 직면하여 ‘긴장성 부동화’ 또는 ‘긴장성 무운동’(tonic immobility) 상태나 ‘비자발적 마비’(involuntary paralysis)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일례로 스웨덴에서 2017년에 실시된 연구⁷⁾에 따르면 298명의 강간 피해자들 중 70%가 상당한 정도의 긴장성 부동화 상태를 경험하였고, 48%는 그 정도가 극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희정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태’(psychological freezing)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⁸⁾ 대사관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리를 벌리지 않은 채 꼳꼳하게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었다’, ‘마치 목석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 있었다’, ‘마치 나무처럼 입과 몸이 딱딱하게 굳어

6)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2019. 7. 9.) <http://women21.or.kr/rights/14347>

7) Anna Möller-Hans Peter Söndergaard-Lotti Helström, Tonic immobility during sexual assault – a common reaction predic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evere depression, Acta Obstetricia et Gynecologica Scandinavica Volume 96, Issue 8

8) 다만, 안희정 사건의 제1심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버린 것 같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고단9145 판결). 이처럼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로 인해 저항을 하지 못하면 가해자로서는 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실제로 행사된 강제력이 최협의설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강제력 기준이 아닌 동의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과 그러한 여성의 의지를 무시하고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위 견해는 자칫 '폭행, 협박, 위력이 없다면 여성은 성교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⁹⁾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성교로 나아갔다면 이는 여성이 성교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위험한 논리로 발전하기 쉽다. 비슷한 취지에서 Equilty Now라는 단체는 강제력 기준의 강간 정의가 '강간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식의 강간신화나 통념에 기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⁰⁾

2) 반대논리 ②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나?”¹¹⁾

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좌우되는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이분법적으로 분명하다는 가정이 실제 현실에서는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이 아니며, '동의'는 성적인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서는 동의 개념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¹²⁾ 동의 여부만을 근거로 해서는 명확성을 본질적으로 요소로 갖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¹³⁾ 이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내심의 영역에서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내심만으로 범죄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도 연결된다.¹⁴⁾ 내심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무고한 가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이분법적으로 항상 명확하게 정하고 상대방이 그

9) 조국, 위의 책

10) <https://www.equalitynow.org/understanding-definitions-of-rape-why-consent-is-key/>

11) 각주 4 기사

12) 한현희, 토론문, 「미투 입법 과제 토론회 자료집」,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8, p.110. 이 토론문에서 한현희 판사는 술집에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가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해야 하는 법관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남녀 인식의 간극 사이에서 과연 피해자의 동의를 어디까지로 해석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13) 서보학, “성폭력 범죄의 형법 정책”, 「현상과 인식」, 제22권 1·2호 통권 75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8. 봄·여름, p.57

14)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사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p.28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 분명하다. 그 상황이 성 인간의 성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성적인 상황에서 항상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거나,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결정하고 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상황에 대해 법이 일일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동의/비동의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동의’라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는데, 바로 ‘양해’(諒解, Einverständnis)와 ‘승낙’(承諾, Einwilligung)¹⁵⁾이 그것이다. 단적으로 집주인이 동의하면 집들이 등 정상적인 방문이 되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를 폭행하면 권투나 UFC 경기가 되고, 동의가 없으면 폭행, 상해가 되는 것처럼 오로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처벌이 좌우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②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의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강간죄의 경우에도, 소위 SM(sadism, masochism)과 같은 동의에 의한 가학적·피학적 성행위라면 폭행, 감금, 구속 등이 수반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강간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상대방과 동의에 의한 가학적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동의가 없거나 동의했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된 사례,¹⁶⁾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¹⁷⁾ 이러한 사례들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강간죄가 문제된 사안이지만, 그 판단의 핵심은 오로지 ‘피해자의 동의 의사 유무 및 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법원은 동의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

15) 양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대법원 97도183 판결 참조), 절도(대법원 90도1211 판결 참조), 주거침입, 강간(부산지법 91고합291 판결 참조), 강제추행 등이 해당되며, 승낙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위법성조각이 되는 것으로서 상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주석 형법 제2판 제24조 부분). 이러한 구분은 독일 형법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우리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16) 수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21고합13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노209 판결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합3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289 판결

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반복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동의를 반복할 자유,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범위를 한정할 자유, 그와 같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그 외에도 현재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있어 폭행, 협박 여부는 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¹⁸⁾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만으로는 강간죄 개정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희정 사건의 판결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안희정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주목할 만한 점은 위 사건 제1심 판결이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제1심 판결문 p.2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제1심 판결문 p.95). 즉, 무죄를 선고한 제1심과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단의 차이는 강제력(위력)에 대한 판단이 아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존재하였던 것이다.¹⁹⁾

③ 다른 법적 개념과 비교할 때, ‘동의’ 개념이 입법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적용 단계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회색 지대가 존재

18) 장다혜·이경환,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p.199

19) 안희정 사건 제1심은 ‘No means No’ 또는 ‘Yes means Yes’ rule에 따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제1심 판결문 pp.96~97),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강간죄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 제1심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문제는 법체계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개념이 불명확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제기된 개념들만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헌법재판소 2005헌바36 결정), ‘궁박’, ‘현저히 불합당한 이익’(헌법재판소 2005헌바19 결정), ‘직무’, ‘유기’(헌법재판소 2003헌바52 결정), ‘위력’, ‘업무’, ‘방해’(헌법재판소 97헌바23 결정), ‘음란한 물건’(헌법재판소 2011헌바176 결정) 등 여러 내용들이 있으나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어떤 개념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입법화가 반드시 불가능 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현재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협의설에 따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된다.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간단할까, 아니면 가해자와의 성행위를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간단할까? 물론 동의 여부의 판단이 굉장히 애매한 사례들도 현실에서 당연히 존재하겠으나, 최협의의 폭행·협박과 동의 개념을 비교하여 볼 때, 어느 한 쪽이 입법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인지 의문이며,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대한 판단사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면서 기준이 명확해진 것 같이 동의 개념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론적 보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의’ 개념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이스탄불 협약이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동의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도, 동의의 정확한 법적 개념정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스탄불 협약의 해설 보고서²⁰⁾는 동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협약 당사국에 맡겨져 있으며, 협약은 오로지 동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변 정황 및 맥락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²¹⁾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동의없이’,²²⁾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하여’,²³⁾ ‘의사에 반하여’,²⁴⁾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²⁵⁾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²⁶⁾ 등의 문구들이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법률 문언의 조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의 해석으로 의미가 보충될 수 있

20)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2011, para 193

21)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 70(Rule 70,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규칙)은 피해자가 폭행, 협박, 강압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이나 진정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피해자가 진정한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침묵, 저항의 부재 역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행 전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의 행동의 성적 성격을 근거로 피해자나 증인의 신뢰도, 성격, 성적 성향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한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Second Edition 2013, The Hague

22) 천정배 의원안(2012795), 박인숙 의원안(2019460), 송희경 의원안(2014438)

23) 이정미 의원안(2015062)

24) 김철민 의원안(2020810), 백혜련 의원안(2012601), 나경원 의원안(2015354), 홍철호 의원안(2012532)

25) 김수민 의원안(2014981)

26) 강창일 의원안(2012564)

으므로, '동의'라는 개념의 의미가 100%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강간죄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④ 현행 성폭력법제는 이미 동의 기준에 따른 판단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성폭력법제는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새로운 구성요건 신설을 통해 폭행·협박 등 강제력 기준만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동의 기준을 채택한 다른 나라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예컨대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13세 미만에 대한 범행(형법 제30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범행(형법 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위계·위력을 이용한 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형법 제302조, 제303조) 등과 같이 피해자가 자유로운 동의 의사를 선택할 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사실상 폭행·협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기습추행(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사례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폭행·협박 없이 사람을 추행하기만 하면 죄가 인정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도 규정되어 있다.

이미 우리 법제가 동의 기준에 따른 판단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불명확 하거나, 동의 기준을 도입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은 현행 법제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일본은 '강제 성교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죄명을 바꾸면서 8가지 부동의 상황²⁷⁾을 목록화 하였는데, 이 중 4개 항목은 기존 법률에 있던 내용이고, 나머지 4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²⁸⁾ 우리도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관련 판단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건으로 동의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그러한 동의 해석에 있어 기준과 참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 해석상 어려움이나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동의 기준의 강간죄 도입은

27) 구체적인 '부동의 상황'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거나 이를 당한 것 △심신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 또는 그것이 있는 것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게 하는 것 또는 그 영향이 있는 것 △수면 및 그 밖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그 상태에 있는 것 △동의하지 않은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예상과 다른 사태에 직면하게 하여 공포를 일으키거나, 경악케 하는 것 또는 그 사태에 직면하여 두려움이 크거나 경악하고 있는 것 △학대에 기인하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것이 있는 것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기초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거나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8) 이데일리 2023. 7. 14.자 기사, 「 日 도입 확정된 비동의간음죄...국내 입법 논의도 급물살 탈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35674520&mediaCodeNo=257&OutLnkChk=Y>

29)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도 제74조에서 폭력의 사용 또는 즉각적인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경우, 불법 구금,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약물 투여 등 동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장다혜·이경환, 앞의 글, pp. 137~143), 우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우리 성폭력법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변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있고 판단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더 분명하게 원칙론적으로 드러내고, 일부 처벌의 공백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이미 현행 법제에 관련 규정들이 반영된 것이 많고, 법원이 최협의설에 따른 폭행·협박의 실무적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투운동 이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주목받고 전향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감경적 구성요건 신설이나 최협의설을 폐기하는 해석론적인 접근으로 현행 법제의 처벌의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³⁰⁾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성인의 경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 강제력 기준의 성폭력 규정으로 인하여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다.³¹⁾

3) 반대논리 ③: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³²⁾

① 검사의 입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동의를 중심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피고인에게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의도적인 허위고소(무고)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³³⁾

그러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개정하면 검사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문제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검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미 동의 기준 강간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동의 기준 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원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이 적용되더라도, 실무적·현실적으로 피

30) 황주홍 의원안(2003726), 최경환 의원안(2013098), 조국 앞의 책, 박상기, 형법각록(제7판), 박영사, 2008, 국회입법조사처,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제8호, 2011, p.152, pp.83~86

31)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유죄율이 높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유죄율이 높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실효적으로 처벌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유죄율만이 아닌 신고율, 기소율, 유죄시 실형선고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동아일보 2023. 2. 8. 자 기사, 「한동훈 “비동의강간죄에 억울한 사람 생길 것..법률가로서 100% 확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8/117799500/1>

33) 조국 교수는 합의 성고 뒤 관계가 나빠져 비동의간음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예상되고, 부부 사이 강간이 인정되기에 이혼 과정에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국, 앞의 책.

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취지일 수도 있겠으나, 현행 법제 하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경우 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결국 이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 판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평을 통해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입법을 할 수 없는 장애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검사의 입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무고에 대해서는 일단 '성폭력 사건은 무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인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비롯한 어떤 통계에서도 성폭력범죄의 무고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무고가 많다, 적다는 주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일부 사례에만 근거한 주장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대검찰청과 MOU를 체결하여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통계분석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성폭력 무고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 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남
- 성폭력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7.6%만이 기소되었으며, 5.9%만이 유죄로 선고되었음(즉, 고소 사건 중 94.1%는 처벌되지 않았음)³⁵⁾
- 2017~2018년 성폭력범죄 처분 인원수는 80,677명인데, 그 사건들 중 성폭력 무고로 유죄가 선고된 인원은 341명이었음
- 성폭력 이외의 무고 사건의 수사 단서 중 '검찰인지'는 평균 15.6%인데, 성폭력 무고 사건의 수사단서 중 '검찰인지'는 27.7%임
- 고소와 인지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율은 6.1%로서 전체 형사 범죄 무죄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음
- 성폭력 무고 사건의 유죄 종류는 집행유예(41.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식명령(31.1%), 유기징역(10.7%), 재산형(9.6%) 순임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 허위 신고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³⁶⁾ 아일랜드의 법률상 기구인 '법개혁 위원회'(Law

34)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3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권고문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같이 형사소송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다(CEDAW/C/KOR/CO/8, para. 23). <https://undocs.org/CEDAW/C/KOR/CO/8>

36)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2~8% 정도를 허위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Thw National Center for the

Reform Commission)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고소 사례가 4~9%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강간 사건에 있어서 허위 신고 비율이 낮고, 다른 범죄에서의 비율보다 높지 않다는 학자들의 컨센서스가 존재한다”고 한다.³⁷⁾

이론적으로는 무고의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무고가 많아질 것인지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화가 나거나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쉽게 고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고의 문제는 무고 그 자체에 대한 해법(무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개발, 무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적 단계 마련, 무고죄의 처벌 강화, 무고 관련 인식 개선 등)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고가 (이론적으로) 우려된다고 하여 동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결론

동의 기준 강간죄 도입에 대한 주장은 1990년대 초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친고죄 폐지 주장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취지는 동의이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유보론이 많았으나, 2012년 오원춘 사건을 비롯한 강력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논의도 없이 친고죄가 전격 폐지되었다.

반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나 절차, 정도 등에 있어 논의가 필요하였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전자발찌), 화학적 치료(화학적 거세) 등 법안은 별다른 사회적 논의도 없이 도입되었다.

어느 제도나 법안이든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에 대한 반대론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서있는 무기한의 도입 반대론에 불과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강력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나타나야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성숙하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Prosecu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Helping Prosecutors Give Victims a Voic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umber 1.

<https://www.evawintl.org/Library/DocumentLibraryHandler.ashx?id=22>

37) Law Reform Commission, Knowledge or Belief concerning Consent in Rape Law, 2019, pp.17~20

https://www.lawreform.ie/_fileupload/Reports/LRC%20122-2019%20Knowledge%20or%20Belief%20Concerning%20Consent%20in%20Rape%20Law.pdf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¹⁾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 보호법익의 변화 :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한국의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최협의설'이라 한다. 비록 판례상 폭행·협박의 판단기준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따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기습 강간을 인정하는 등 해석상의 변화가 생겼을 뿐 최협의설 자체는 여전히 공고하다.²⁾

이처럼 강간죄가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였다. 이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였다. '여성의 정조'는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허구적인) 관념이므로, 법원은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강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하기도 했다. '여성은 정조를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한다'라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탕으로 강간죄는 여성이 스스로 정조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1991년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 1992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의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 등이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됐다.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형법 개정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³⁾

1) 본 발제문은 '반성폭력 운동과 강간 개념의 변화 : 동의 및 적극적 합의 담론을 중심으로', 2022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가) 발제문과 '시대적 변화 방해하기 : 무고죄로 개정 가로막기', 2023년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기 잡기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한국여성성단체연합 발제문을 일부 전재, 인용, 참고했다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형법 제32장의 제목 개정은 성폭력 보호법익의 변화를 상징하고 이후 판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조에 관한 죄’를 전제로 입법된 법 조항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했다.

2. 강간죄 개정 운동 :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반성폭력 운동은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2005년에는 여성인권운동단체와 형법학자들이 모여 <여성인권법연대>를 구성하고, 동의 없는 성적 행동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설 폐기, 친고죄 폐지 등을 핵심으로 담은 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형법개정안은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했으나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 회기만으로 자동폐기됐다. 그 이후로도 대법원이 최초로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국회가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판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어졌으나,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은 변함없이 남아 있다.

2018년 #metoo(미투) 운동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공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구에 힘입어 제20대 국회는 당시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모여 출범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기존 형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법 전반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첫 번째 법 조항이자 기본법으로 인식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대중적으로는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

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판결 참조.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2019. 7. 9.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2차 의견서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현실”을 비판하며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 국민의 동의를 모았다.⁵⁾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변했으나 강간죄 개정 법안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시기상조론으로, 법원행정처는 신중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제20대 국회 회기만으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백혜련 의원, 류호정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3. 사회적 인식과 국제 인권 기준의 변화 :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

이제 강간죄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다시금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는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과 그 부록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유형력 또는 유형력 행사 협박은 동의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유형력이 곧 강간의 구성요건은 아니다. 국가는 반드시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개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freely)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동의 없는 성교는 모든 정의에서 강간으로 범죄화되어야 한다.”⁶⁾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2017년 일반권고 제19호 제35호(e),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첫 번째 권고).

5) 대통령기록관 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3605>

6)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2022.

2023년 1월 26일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UN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CEDAW에서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파나마),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미국)라는 질의를 받았다⁷⁾.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들은 모두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다.

4.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투 운동 이후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동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성요건이다.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피해자는 사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다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의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또한, 대법원 판례는 동의를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구조적 성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가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성적 자

7) 제42차 유엔인권정계검토 한국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받은 질의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kr-index>

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내부 정신작용이 왜곡되기 쉬운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는 비장애 성인 피해자라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도 12419 판결)

이처럼 판례는 비동의의 강간죄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의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상 재판부가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강간죄의 쟁점은 결국 폭행·협박 여부를 인정할지 말지로 귀결된다. 여전히 최협의의 폭행·협박 여부만 판단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판결이 많고, 때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입법을 통해 강간죄의 쟁점이 되는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

5.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20대, 21대 국회의 논의

미투운동 직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10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인지 보여준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2019년 3월 발족한 이후 형법학자 및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9년 11월 13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를 법안을 발표했고, 각당에서 이를 적극 활용한 법안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들에게 16만번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여 형법상 강간죄 개정 의지를 질문한 바 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묻는 질문에 206명의 후보자 중 204명이 ‘찬성’에 응답했고, 그 중 당선된 21대 국회의원은 45명이다. (<https://call21st.works/>)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백혜련 의원, 류호정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0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하고,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었다.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셋째,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정조’ 관념에 기반한) 법체계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재정비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통폐합하는 법안이다.

2021년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①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②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①항과 ②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①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2022년 11월28일 형법 32장 제목 및 체계 변경안 및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담은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인규 전문위원이 비동의간음죄 비동의추행죄 신설 필요과 해외법 검토, 문구에 대한 찬반론, 형량 조정안 등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법무부 차관은 “개정안들은 이른바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나 성폭력범죄 처벌 법체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발언한다.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도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마음속이거든요. 이 마음속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상대방이 동의한 거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상대방이 ‘나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한 적 있잖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그래도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것 입증하기는 좀 쉬운 거였는데, “또 하나가 상대방의 의사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원래 형사절차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소추기관에 있다는 게 대원칙인데 그런데 사실상 ‘그때 나 동의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우리 형법이 조문 말고 다른 성범죄에도 여러 가지 구성요건들이 있는데 그 구성요건들하고 체계상 맞느냐 하는 검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체계와 전체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다.

권인숙, 이탄희 의원은 세계적인 변화의 추이와 한국의 성폭력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서양과 한국의 유교 문화권은 성인식이 다르다고 대꾸한다. 법적 체계에서의 법리, 입증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하면서도, ‘한국 유교문화상 시기상조다’라는 반응이 뒤섞여 있는 형국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수렴하였다.

6.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현 정부 반대

현 정부 여당은 ‘젠더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전략과 정동의 시기를 거쳐왔다. ‘성폭력 무고죄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걸렸던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제는 이러한 정치적 젠더갈라치기 사이에서 후퇴하는 의제로 취급되기도 한다.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이 통과한 이후 법무부가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같은 날 여당 국회의원은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가부 폐지 명분이 증명됐다”며 ‘성폭력 무고 선동’을 통해 ‘강간죄 개정’ 과제를 막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여가부도 추진계획 없다고 9시간만에 번복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상 ‘강간죄 개정 검토’ 과제 번복을 “‘정치적 변경’이 아니라 ‘정부 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스스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행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권 하에서 실제로 여겨지는 법무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으로 삼았던 과정을 익히 보아오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계획 상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에 모두 반대⁸⁾하겠다고 나서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미 검토되고 추진되어 온 정책과제를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목적과 역할을 망각하고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과제를 빠르게 삭제처리하고자 하고 있다.⁹⁾

또한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서면답변을 6월 6일 제출했다. CEDAW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며,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모델로 변경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

8) [단독] 법무부, 여가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반대, 2023년 2월 10일, 이주빈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9253.html>

9) 비동의 간음죄, 올해 정부 과제서 제외...사실상 백지화, 연합뉴스, 2023년 4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049200001?input=1195m>

다. 그러나 이런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계획을 폐기하고, 반대를 표방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성폭력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성폭력 현황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 논의에 기초한 의견이 아니라, 답보와 퇴행을 향한 정치적 의견표명인 듯 하여,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7.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과 시민 삶의 변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는 이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이 짙어졌다. 법률에 의해 3년 단위로 시행하는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2022년 8월~10월 전국 19살 이상 64살 이하 1만 20명(여성 48.7%, 남성 51.3%)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결과 초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상황 질문에서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각각 2.7%, 7.1%로 집계되었고, ‘가해자의 속임수’는 34.9%로 가장 많았다. 폭행·협박 없이 갑자기 성추행(26.6%),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18.7%),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위력)를 이용한 성추행(16.2%)이 뒤를 이었다(복수 응답).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도 강요에 의한 피해가 41.1%로 폭행(23.0%)이나 협박(30.1%)에 따른 피해보다 더 많았다.¹⁰⁾

인식과 시민들의 삶도 이미 변화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세도우핀즈, 널채움이 공동제작하고 2021년 3월 8일 오픈한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는 참여자가 직접 판사가 되어 강간 사건을 재판한다. 참여자 중 절대다수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으며, “지금 법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에 “바뀌어야 해요” 37,236명이 응답하고, 강간죄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24,478명이 참여했다.(2023.7.17. 현재) (<https://wonderful-law.korea.wtf/>)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1년에 진행한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에 따르면, 여남 동수로 구성된 응답자 600명 중 96.7%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라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남성 94.0%, 여성 99.3%).¹¹⁾

여성가족부가 2018년에 진행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도 각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경찰,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NGO 등 총 48명의 응답자 중 54.2%는 ‘폭행·협박의 유형력 요건을 제거하고, 비동의 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¹²⁾

10) [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한겨레신문, 2023년 2월 8일, 오세진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8745.html>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2022.

12) 여성가족부, <젠더폭력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2018.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¹³⁾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원치 않는 설문조사」를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했다. (결과 전문 첨부자료 참고)

○ 응답자는 1,346명이었고, 20대가 439명(32.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390명(29.0%), 40대 268명(19.9%), 50대 177명(13.2%), 10대 37명(2.7%), 60대 32명(2.4%), 70대 이상은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시스, 트랜스) 1,191명(88.5%)이 가장 많았고 남성(시스, 트랜스)은 88명(6.5%), 논바이너리 54명(4.0%), 그 외 13명(1%) 순으로 나타났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에서 유형력이 필수요건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771명(57.3%)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몰랐다’라고 응답한 수는 575명(42.7%)으로 나타났다.

○ 강간죄 판단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법 그대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에 24명(1.8%)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총 29명(2.2%)가 응답하였다.

○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 동의 외에는 모두 강간이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행동이어야 한다’, ‘적극적 동의가 없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 ‘동의를 기본으로 두지 않더라도 모든 강간죄는 가중처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적행위 금지’ 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대체로 기타 의견에서는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주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보고 듣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있다’는 답변에 919명(68.3%)으로 나타났으며 ‘없다’에 427명(31.7%)이 응답하였다.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 간접경험이 68.3%가 나온 것은, 전국성폭력상담소 강간 상담에서 65~71% 가량이 직접적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이라는 통계분석 결과와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행법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로 인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성폭력 무고로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¹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2018년 1

13)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2323 판결 참조 “강간죄란 피해자의 항거의사를 폭행·협박 등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억압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그 불법의 요체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성관계가 내심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내심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피고인의 내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의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

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체 45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무고 역고소 상담사례를 살펴본 결과, 무고 역고소 상담사례 총 70건 중 원 사건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성폭력이 발생한 상담사례는 75.7%(53건)였고, 피해자가 무고 역고소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담사례 총 13건 중 원 사건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성폭력이 발생한 상담사례는 92.3%(12건)에 달했다.¹⁵⁾

8. 21대 국회,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형력에서 동의여부로 변경하라

강간 개념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구성되고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온 개념이다. 현 시대상과 사회적 인식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 초석은 비동의의 강간죄 개정이다.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나아가서 성적 통합성(integrity)의 침해로 본다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와 인권을 중시하는 동의 모델로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재판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통념, 시장화된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의 변론 전략 등이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가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은 ‘동의’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는 설령 외관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동의를 아닐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성적 주체에게 각각 어떻게 동의 역량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동의’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쏟아져 나올 질문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언어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적극적 합의 담론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더욱 활발하고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럽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가 피고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로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죄가 될 수 없는 행위에서 처벌가치가 매우 높은 가벌적 행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15) 박아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란 무엇이고, 우리 형법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을 어떻게 다루는가/다루어야 하는가?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장의 관점에 이입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제도의 언어와 고통의 언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가 고통을 이해하려면 더 오래 더 자주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길뿐.

(이지혜, 책상물림은 쉽게 말하지, 한겨레신문 2022.9.8.)

1. 발표문이 지적하는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폭행·협박 없는 강간과 같은 말로, 폭행·협박의 외관이 없어도 강간피해와 달리볼 이유가 없는 성폭력을 뜻하고자 하는 용법으로 보인다)이 현실 강간 사례중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엄격한 폭행이나 협박 개념으로 강간의 현실을 제한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한 법개념의 부당성에 대해서 비판이 마땅할 것이다.

요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강간 현실의 대부분은 지인 내지 친밀 관계내에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노골적 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지가해자 개인과 피해자 개인 사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구성된 형법상 강간죄 개념은 성폭력의 현실 상당 부분을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이 강간에서 ‘강’을 의미하는 가해자의 폭행·협박 행위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피해자의 비동의 의사를 기준으로 비동의 상태에서의 간음행위를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는 것이 비동의간음죄 입법론의 취지라 생각된다.

2. 강간죄 성립요건을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할 것인지, 피해자의 비동의로 할 것인지를 문제된 연원을 따져보자면 법원의 판례다. 즉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인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기준 중의 하나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본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즉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우선 판단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판단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항거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라는 판단기준은 항거가 가능했거나 단지 곤란한 정도였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뜻한다. 이는 강도죄에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 11899, 판결)이라는 판단기준과도 대조된다. 재물 탈취를 위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강도피해자의 항거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성인간 간음행위는 반드시 쌍방 당사자의 자기결정의 합치에 따른 행위일 필요가 없고, 일방 당사자의 항거(거부의사표현과 반항행동)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또는 단지 곤란할 정도였다 해도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는 기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법원의 "경험칙과 논리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지난 7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과자로서 제방을 배회하는 불량 폭력배이고 본건 범행전 약 4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간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0여회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있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외포를 느껴서 정조를 버렸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간음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니 "나의 요구에 불응하면 칼로 목을 찢러 죽인다"고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 범행 당시 칼이나 기타 흉기를 준비하여 현실적인 위해를 느끼게 한 것이 아닌즉 피해자에게 있어 현실적인 위해를 피할길이 없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간음을 한 후 울었다고 하더라도 처녀가 정교 후 우는 것은 꼭 폭행이나 협박에 못이겨 간음한 경우만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로써 곧 위 간음행위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고인의 협박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소녀라고 하더라도 ... 기록에 나타난 동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위 논지에 지적인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도 동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위해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 있어 이 위해를 피할 길이 없어 부득이 위 간음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없으니(서울고법 1967. 12. 12., 선고, 67노 25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그동안의 변화라면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적 기준을 추가한 정도의 변화일 뿐인데,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간음죄 입법론은 형법 규정상의 폭행·협박 요건보다는 법원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된다. 즉 강간죄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험칙과 논리칙과 거리가 먼 법규정과 판례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이를 피해자 항거의 현저한 곤란성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강간죄의 성립을 가해자의 의사와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폭행·협박 요건 대신 상대방의 동의 없음으로 대체하게 되면 저항의 곤란이라는 요건 대신 동의하지 아니함이라는 요건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3. 발표문에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강간이라할 때 ‘폭행·협박’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가리키며, 이때 ‘직접적’이 의미하는 바는 물리적 유형력(폭력), 명시적(협박)이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라 함은 유형력 행사 이외의 폭력적 상황이나 명시적이지 아니한 위협상황에서 간음에 이르거나 시도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인정되어야 할) ‘폭력성’은 타방의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무시하거나, 타방의 동의 여부를 애초 염두에 두지 아니하거나, 또는 쌍방향적이어서 할 성적 결정을 무단히 독단하려는 의사와 행동에서 실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폭행·협박없는 성폭력/강간의 의미를 담고자 ‘비동의’ 또는 ‘부동의’ 라는 건조한 용어가 거론되지만, (부동의 개념은 현행 형법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의 요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상황은 촉탁이나 승낙의 문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상호의사소통과 합의의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형법체계상 ‘부동의간음’ 용어는 적절치 아닐 것이다) 결국 ‘비동의’간음죄는 생생한 폭력적 간음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비동의’ 개념은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 행동에 단지 동의하지 않았음이거나 동의가 없었

음이라기 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여부가 폭력적으로 부인됨으로써, 그 불가피한 결과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이르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동의간음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라기 보다는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과 자유가 된다.

4. 전통적으로 강간되는 살인, 강도, 방화와 함께 강력범죄 내지 흉악범죄로 분류된다. 현행 형법 편제상 제24장 살인-제25장 상해와 폭행-제26장 과실치사상-제28장 유기와 학대-제29장 체포와 감금 - 제30장 협박-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제32장 강간과 추행으로 규정되어 있고, 폭행과 협박의 개념으로 함께 묶여 있는 이유다.

중세 시대까지 강간은 부친이나 남자배우자가 여성의 정조(성적 순결)에 대해 갖는 독점적 보호권 내지 소유권에 대한 강취(強取)의 의미였다. 1995년 개정 이전까지 우리 형법 제32장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물론 근대 형법에서 보호법익의 주체는 개인이므로 정조의 주체는 여성이겠지만, 성적 순결이 여성의 신체 안전과 자유 향유의 어떤 내용을 이루는지는 불분명하다. 개정 이후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 입법취지의 근거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거나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이후 대법원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판단하였다. 즉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하고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 형법편제상 강력범죄가 아니라 권리침해 범죄로 분류될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간죄의 여성차별적인 역사적 연원과 또다른 한편에서는 전형적인 중한 강력범죄라는 역사적 인식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간죄를 비동의간음죄(sex without consent)로 대체하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 가해지는 중한 폭력의 피해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Susan J. Brison, What’s Consent Got to Do with It? Social Philosophy Today 37(9), 2021; Reginald Williams, Feminism and Rape, Public Affairs Quarterly 29 (4), 2015; Lisa H. Schwartzman, Defining Rape, Social Philosophy Today 35, 2019)

그렇다면 현행 형법 편제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을 신체의 완전성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력범죄로서 기본형태를 비동의간음죄로, 가중형태를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요건과 함께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준강간죄로, 변형형태를 위계위력간음죄 등으로 하여

재판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발표문에 따르면 불송치·불기소 사유 중 기타 (증거불충분, 무혐의 등)가 불송치의 경우 23%, 불기소의 경우 22%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하지만, 진술 신빙성(피해자 신빙성 의심 +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불송치의 경우 27%, 불기소의 경우 29%로 오히려 가장 높고, 이어서 입증곤란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 + 항거불능상태 입증 어려움)이 불송치의 경우 24%, 불기소의 경우 25%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성폭력범죄 특성상 당사자 진술에 상당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 진술신빙성 부인과 입증곤란이 서로간에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송치, 불기소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편견' 문제와, 중한 폭력범죄 사안에서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데 있어서의 불가피한 신중함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발표문이 지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 파악과 이해의 문해력, 성인지감수성, 수사의지 모두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중범죄에 요구되는 엄격한 입증문제가 인식전환과 의지 촉구만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요건을 동의 요건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동의(without consent)=폭행·협박 없음(without without coercion)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래 강간죄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될 수 있다.

또한 발표문에 따르면, 폭행·협박 없는, 즉 물리적 유형력 행사 이외의 폭력적 상황 내지 명시적이지 아니한 위협상황의 구체적 양태는 회유, 강요,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등으로 나타난다. 현행 형법상 위계, 위력, 기망, 업무고용관계 위력 개념으로 모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회유, 애걸, 애원, 지속적 요구, 속임, 그루밍 등의 행태를 형법상 가해행위로 개념화하거나, 법원이 포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양태로 보아 비동의 여부 판단의 전제사실로 삼으려면,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개인 개념과 구별되는, 즉 불평등 구조에서 취약지위에 있는 특별한 성적 자기결정 주체를 상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일 것이다.

비동의간음죄 도입론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1. 비동의간음죄 도입, 무엇을 얼마나 바꾸게 되나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성범죄재판실무를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제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현행 성범죄재판실무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성범죄 본질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재판실무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여성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토론자가 생각하는 성범죄재판실무의 가장 큰 과제는 젠더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의 극복이다.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젠더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으로 시정될 수 있는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운동의 역량을 어떤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좀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발제문은 대체로 비동의간음죄에 관련된 대부분의 반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이 토론문은 기본적으로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다소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2.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입장과 현재 성범죄재판의 실무 - 유형력의 정도가 아닌 동의 여부

현재 우리 실무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협의설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최협의설이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최협의설은 항간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은,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외 다수). 또한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러한 판시는 최협의설의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부여한다.

물론 모든 재판부가 같은 정도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 이후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 법원의 실무는 점점 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성범죄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피해자가 기존의 통념에 비해 **매우 약한 유형력의 정도로도 쉽게 항거불능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고, “항거불능”이라는 명목적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항거를 불능케 하는 유형력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협의설은 변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범죄재판의 실무에서 유형력의 정도 문제는 대다수의 사건에서 더 이상 실질적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현재 무죄를 다투는 성범죄재판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수렴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에 이른 경우 **아무리 작은 유형력이 작용하였다**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항거불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신체와 신체가 접촉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런 유형력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근자의 성범죄 재판에서는 “폭행·협박”이라는 용어보다는 “유형력”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다소 거친 비약을 동원하여 설명하자면, 근래의 성범죄 판단공식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왜 하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비동의 ≙ 항거불능”의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공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이 상당한 설명과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책임의 전가라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증명책임(거증책임)의 개념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변소 증명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시점에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증명책임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적

절한 운용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추구하는 정의실현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문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초고 기준 6쪽 이하) 현재 성범죄재판실무가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여전히 명목상 최협의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사각지대를 허용하는 재판 사례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의를 없는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의 성범죄재판실무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최협의설에 대한 다양한(또는 잘못된) 이해에 의해 간혹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 본다.

3.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가

발제문에 인용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반론들을 검토해 보면, 이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자체를 반대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되 세부 쟁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임예인은 성관계마다 “명시적인 동의”만을 요구한다면 로맨틱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동의간음죄 도입 주장이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만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증이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입법례들 중에 강간죄 기각을 위해 “명시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묵시적인 동의만으로도 강간죄를 기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 성립에 “맥락적 사정”이 중요하듯,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맥락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고인이 “동의를 있었던 것으로 믿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고의 조각으로 강간죄가 기각된다.¹⁾

물론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있었던 경우에만 강간죄를 기각하는 입법을 희망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보다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며, 입법의 성공가능성을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 다만, 이때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근거로 동의 있음을 믿었을 경우 무죄로 볼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피고인이 동의 있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한다(제1조(1)(c)). 예를 들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동의한다고 믿었다면 이를 두고 고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내심의 의사라서 불명확한가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내심의 영역에서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내심만으로 범죄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영란의 반론 역시 결국 재판의 양상은 내심의 영역을 추단계 하는 외부적 사정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재판의 실무 역시 그러한 외부적 사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반박된다. 원래 형사재판이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를 “고의”라는 개념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판하고 있다. 내심의 영역을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은 재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5. 피고인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되는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증명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주장 역시 실증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현재의 성범죄재판실무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쟁점이 집중되고 있지만, 당연히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죄 사안에서 “동의 없음”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소되는 사건들 대부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동의 없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소가 좀 더 관대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동의간음죄 도입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진다는 염려도 사실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형사소송의 근본명제를 바꾸는 것이므로 비동의간음죄 도입 여부를 넘어서는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법은 피고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²⁾ 그 내용을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있음을 믿었던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관련된 행위 시 내지 그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람이 고소인에 대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에게 즉각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거나
(b) 관련된 행위 시 내지 그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고소인이 타인에 대해 폭력이 사용되었거나 즉각적인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거나
(c) 고소인이 관련 행위 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았거나
(d) 관련 행위 시 고소인이 잠이 들었거나 기타 의식이 없거나
(e) 고소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고소인이 행위 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거나,
(f)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에게 물질을 투여하거나 투여하도록 하여 그로 인해 관련 행위 시에 고소인이 몽롱하게 하거나 제압되도록 하는 경우

보면, 사실상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완료된 경우에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주관적 증명책임을 객관적 증명책임 전환의 형태로 규정해 놓은 것일 뿐이다.

6. 피해자 동의의 개념이 불명확한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성적 동의(sexual consent) 개념에 대한 혼란은 현실적으로 여전하다고 하면서 비동의간음죄 입법론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보이는 입장도 있으나,³⁾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 동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⁴⁾ 즉, 성적 동의 개념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적 동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가의 문제이고, 그러한 변화를 법원이 어떻게 포착해내는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7. 피고인의 잘못된 확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 있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실무를 하면서도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있어 법리적 관점에서 처리가 다소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분명히 “비동의”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이를 “비동의”로 포착해내지 못하는 피고인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비동의”로 인식될 만한 신호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나, 이를 “비동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행동하였을 경우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남녀간 또는 파트너간 상호작용에 관한 교육의 부족으로 포착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한 인식능력 부족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이론적 엄밀함을 적용하자면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고의를 조각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금지의 착오의 경우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나,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⁵⁾

3)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2018. 6.), 428쪽 이하.

4) 주 4)의 글이 소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영국 고등법원은 성교에 상호동의하였으나, 사정단계에서의 여성 당사자의 질내사정 거부 의사에 무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신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였다. 검사는 문제시점에서 남성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동의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는 입증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여성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내용은 질외사정이 전제된 성교였으며, 이에 대하여 남성 당사자는 동의와 그 전제내용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당사자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무시한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건대 여성 당사자는 성교에 동의한 본래 의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선택의사를 부인당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토론자의 견해로는 동의 중심의 우리 성범죄재판실무에서도 이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상의 고의·과실은 단순한 자연 개념의 “인지(cognition)”가 아닌 규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이론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고,⁶⁾ 스웨덴법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가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과실강간죄로 처벌한다.⁷⁾ 비동의간음죄 도입 과정에서, 아니면 그와 별도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판례에 의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8.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미치는 말에 같음하여

성폭력범죄의 본질은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성범죄재판의 실무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범죄를 정의하라는 CEDAW의 권고는 형식과 본질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법제에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재판의 실무가 동의 여부 판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기대하고 있듯이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범죄에 관한 의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토론자가 생각하는 성범죄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젠더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의 극복이고,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성범죄재판 실무의 물길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젠더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은 “비동의”를 비동의로 포착해내지 못하게 방해한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다고 하여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남성과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몰입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도 매우 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고정관념과 통념으로 나타난다. 서로의

5)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영국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1조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믿은 것이 아닐 때(does not reasonably believe)”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를 믿었을 경우에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주3에 열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기 믿음의 합리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7) 스웨덴형법 Chapter 6, Section 1a. “Section 1에 규정된 행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완전히 부주의한 경우(grossly negligent) 과실강간죄(negligent rape)의 죄책을 지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무시의 사정에 비하여 그 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는 유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상호간의 양보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이해의 간극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양쪽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의 의무는 보다 권력적인 지위의 사람에게 더 크게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권력은 남용의 가능성을 수반하고, 남용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1. 상담분석 개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 및 불송치·불기소’ 현황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 지원한 강간사건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집계는 강간, 유사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을 포함한 강간 상담 사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기관은 협의회 소속 136개 기관 중 119개 기관이었고, 2개 기관은 강간사례 없음으로 제외하였다. 통계 집계한 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무) 경우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중복 선택 조사하였고, 불송치/불기소 이유 역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중복 선택 조사하였다.

1) 피-가해자 관계

2022년 강간상담은 총 4,76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강간사례 4,765건 중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통계프로그램의 ‘피-가해자 관계’ 분류형식을 기준으로 2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다시 친족, 친·인척 관계, 친밀한 관계, 아는 관계(친족 관계, 친밀한 관계 제외), 모르는 사람, 미파악·기타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1. 피해자-가해자 관계] 집계결과 아는 관계(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 제외)가 57.9%(2,757건)로 가장 많았고 친밀한 관계가 13.6%(646건)로 뒤를 이었다. 친족, 친·인척관계는 10.2%(487건), 모르는 사람 6.5%(311건), 미파악·기타 11.8%(564건)로 나타났다.

표 1. 피해자-가해자 관계 (대분류를 기준으로)

대분류 (5개)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제외)	친밀한 관계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	미파악 ¹⁾ 기타	계
건수	2,757건	646건	487건	311건	564건	4,765건
비율	57.9%	13.6%	10.2%	6.5%	11.8%	100%

1) ‘미파악’은 일회성 문의, 긴급 상담, 피해자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전화상담 등의 사유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표2.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1위에서 4위는 아는 관계였는데, 1위는 '채팅 상대자(612건 12.8%)', 2위는 동급생·선후배·친구(591건 12.4%), 단순 대면인이 3위(544건, 11.4%), 직장관계인이 4위(491건, 10.3%)로 나타났다.

5위는 친밀한 관계인 (전.현)애인으로 413(8.7%)건이었다.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관계와 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를 모두 포함하면 그 비율은 81.6%가 된다.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표 2. 피해자-가해자 관계 (순위별 1위부터 5위까지)

구분	피-가해자관계	건	비율	순위
아는 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채팅상대자	612	12.8%	1
	동급생·선후배	591	12.4%	2
	단순대면인 ²⁾	544	11.40%	3
	직장관계자	491	10.3%	4
친밀한관계	(전.현)애인 ³⁾	413	8.7%	5

표 3. 피해자-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관계)	<u>채팅상대자</u>	<u>612</u>	<u>12.8%</u>	<u>1</u>
	<u>동급생·선후배·친구</u>	<u>591</u>	<u>12.4%</u>	<u>2</u>
	<u>단순대면인</u>	<u>544</u>	<u>11.40%</u>	<u>3</u>
	<u>직장관계자</u>	<u>491</u>	<u>10.3%</u>	<u>4</u>

- 2) 단순대면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평소 오가며 인사정도 하는 사이이거나 혹은 친구의 지인 정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가 없던 사람인 경우
- 3) (전.현)애인: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상대자가 가해자인 경우. 특히 한쪽이 일방으로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쌍방이 연인관계라고 하는 경우로써 피해자가 규정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함.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2,757건 57.8%	동네사람	295	6.2%	8
	교사·강사	79	1.7%	14
	서비스제공자	72	1.5%	16
	종교인	44	0.9%	19
	복지시설 관계자	19	0.4%	21
	의료인	7	0.1%	24
친밀한관계 646건 13.6%	(전·현)애인	413	8.7%	5
	데이트상대자	131	2.8%	10
	배우자	68	1.4%	17
	과거배우자	33	0.7%	20
친족, 친·인척 487건 10.2%	4촌 이내 친척	120	2.5%	11
	친부모	111	2.3%	12
	형제·자매	93	2.0%	13
	의·양부모	75	1.6%	15
	그 외 친족	51	1.1%	18
	조부모	14	0.3%	23
	4촌 이내 인척	15	0.3%	22
	자녀	5	0.1%	25
	시부모	2	0.0%	26
모르는 사람 311건 6.5%	모르는 사람	311	6.5%	6
기타 및 미파악 564건 11.8%	미파악	303	6.3%	7
	기타	266	5.5%	9
	계	4,765	99.8	

기타(263건 5.5%)에는 부모의 지인(애인포함), 성매수자, 가출 당시 숙식 제공자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2) 장애 및 준강간 유무

[표4. 장애유무]를 보면 전체 강간 사례 4,765건 중에서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19.1%(908건), ‘장애 없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74.6%(3,557건), 미파악 6.3%(300건)이었다.

표 4. 장애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계
19.1%	74.6%	6.3%	100%
908건	3,557건	300건	4,765건

[표5. 준강간 여부]에서 전체 강간 사례 4,765건 중에서 술, 약물, 수면 등에 의한 준강간 사례는 29.4%(1,401건)였다. 준강간이 아닌 사례는 57.5%(2,738건)이었다. 상담을 통해 준강간 유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즉 미파악으로 분류된 사례는 10.7%(509)건이었다.

표 5. 준강간 여부

준강간 있음(술·약물·수면 등)	준강간 없음	미파악	계
29.4%	57.5%	13.1%	100%
1,401건	2,738건	626건	4,765건

준강간으로 분류된 사례 중 피해 당시에 대해 객관식 응답을 제외한 기타내용으로 기입된 주관식 서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관식 서술에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해보았고, ‘술’ ‘만취’ 키워드는 총 79회, ‘잠’ ‘수면’은 총 26회, ‘약물’ 또는 ‘마약’은 총 8회가 언급되었다.

3) 장애 있는 사례 중 준강간 유무

[표6. 장애 있는 여부]에서 전체 908건의 장애 있는 강간사례 중 술, 약물, 수면 등에 의한 준강간 사례는 전체 사례 중 13.5%(123건), 준강간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사례는 74.8%(679건)였다. 미파악으로 분류된 사례는 11.7%(106건)이었다.

표 6. 장애 있는 강간상담 중 준강간 상황 여부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계
13.5%	74.8%	11.7%	100%
123건	679건	106건	908건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본 분석에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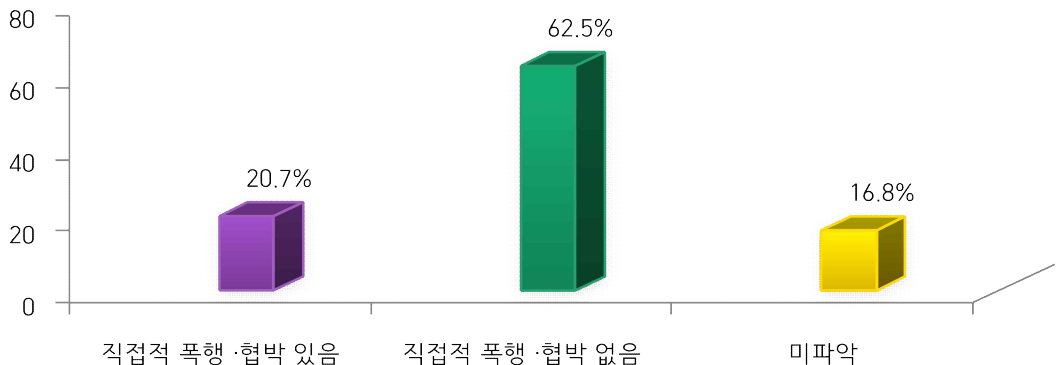
의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함께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의 강간 상담을 66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에 육박함을 밝힌 바 있다. 본 분석에서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상담현장의 현실을 집계하고자 하였다. 본 집계와 분석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한다.

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전체 4,765건의 전체 강간 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은 62.5%(2,979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은 20.7%(984건)였다. 직접적 폭행·협박을 미파악한 사건은 16.8%(802건)이었다.

표 7.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직접적 폭행·협박 있음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	미파악	계
20.7%	62.5%	16.8%	100%
984건	2979건	802건	4,765건



2) 직접적인 폭행 협박 있는/없는 성폭력과 피-가해자 관계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성폭력과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각각 대분류와 세부분류를 산출하였다.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 관계 (친족·친·인척·친밀한 관계 이외) 64.3% 1,916건	채팅상대자	464	15.6%	1
	동급생·선후배·친구	406	13.6%	2
	단순대면인	350	11.7%	3
	직장관계자	345	11.6%	4
	동네사람	181	6.1%	7
	교사·강사	61	2.0%	14
	서비스제공자	47	1.6%	16
	종교인	39	1.3%	17
	복지시설 관계자	18	0.6%	20
	의료인	5	0.2%	24
친밀한 관계 11.5% 341건	(전·현)애인	225	7.6%	5
	데이트 상대자	86	2.9%	10
	배우자	18	0.6%	19
	과거배우자	12	0.4%	21
친족, 친·인척 10.0 299건	4촌 이내 친척	79	2.7%	11
	형제·자매	62	2.1%	12
	친부모	61	2.0%	13
	의·양부모	53	1.8%	15
	그 외 친족	27	0.9%	18
	4촌 이내 인척	9	0.3%	22
	조부모	5	0.2%	23
	자녀	2	0.1%	25
	시부모	1	0.0%	26
모르는사람 200건 6.7%	모르는사람	200	6.7%	6
기타 및 미파악 223건 7.5%	기타	154	5.2%	8
	미파악	69	2.3%	9
	계	2,979	100.0%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관계 (친족·친·인척·친밀한 관계 이외) 53.7% 528건	채팅상대자	96	9.8	4
	동급생·선후배·친구	121	12.3	3
	단순대면인	128	13.0	2
	직장관계자	90	9.1	5
	동네사람	73	7.4	6
	교사·강사	8	0.8	19
	서비스제공자	9	0.9	18
	종교인	1	0.1	22
	복지시설 관계자	1	0.1	22
	의료인	1	0.1	22
친밀한관계 24.3% 239건	(전.현)애인	147	14.9	1
	데이트 상대자	35	3.6	10
	배우자	40	4.1	9
	과거배우자	17	1.7	13
친족 ,친·인척 8% 79건	4촌 이내 친척	14	1.4	14
	형제·자매	10	1.0	17
	친부모	20	2.0	11
	의·양부모	13	1.3	15
	그 외 친족	13	1.3	15
	4촌 이내 인척	5	0.5	20
	조부모	3	0.3	21
	자녀	1	0.1	22
	시부모	0	0.0	26
모르는사람 69건 7%	모르는 사람	69	7.0	7
기타 및 미파악 69건 7%	기타	51	5.2	8
	미파악	18	1.8	12
		984	100.0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와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피-가해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자(15.6%) > 동급생·선후배·친구(13.6%), 단순대면인(11.7%), 직장관계자(11.6), (전.현)애인(7.6%) 순서였다.

채팅상대자가 1순위(464건 15.6%)로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팅상대자는 전체 강간상담집계 건 수 중 26유형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일 유형이기도 하다. 전체 채팅상대자 사건 612건 중 폭행협박 있는 경우는 15.7%(96건), 폭행·협박 없는 경우는 75.8%(464건)이었다. 전체 강간상담 중 폭행협박 있는 경우(20.7%)보다 폭행협박은 적었고, 전체 폭행협박 없는 경우(62.5%)보다도 폭행협박 없는 경우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지하고 경험한 가장 많은 유형인데,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채팅, 어플, 온라인 등은 사람을 만나는 환경이 변화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법이 규율하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의 현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자들 흥런 치는 방법”, “술 마시고 강간하고 고소당하지 않는 법(ex. 모텔비는 여자 카드로 결제하라)” 등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성이 작동한다.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는 (전.현)애인(14.9%) > 단순대면인(13%) > 동급생·선후배·친구(12.3%) > 채팅상대자(9.8%) > 직장관계자(9.1%) 순서가 도출되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와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가 성격이 다를 듯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관계가 그대로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의 상위 5개 관계였다. 이 중 친밀성이 가장 높은 ‘(전.현)애인’ 관계에서 폭행·협박이 가장 높게 존재했다.

현행 법이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저항정도로 그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은 진짜 성폭력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은 진짜 성폭력일 거라는 편견을 재생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협박 있음과 폭행·협박 없음은 공존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저항했던 피해자만 선별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외면과 왜곡일 뿐이다.

3)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에서 장애, 준강간, 피-가해자 관계의 작용

[표 10. 장애있는 강간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에서 전체 908건의 장애있는 강간사례 중 직접적 폭행·협박 없었던 강간은 62.0%(563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은 22.7%(206건)이었다. 직접적 폭행·협박 미파악 15.3%(139건)이었다.

표 10. 장애있는 강간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폭행 협박 있음	폭행 협박 없음	미파악	계
22.7%	62%	15.3%	100%
206건	563건	139건	908건

[표 12. 직접적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에서 장애 및 준강간유무]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던 경우는 21%로, 직접적 폭행·협박 없는 상황(표 11)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던 경우 19%에 비해 다소 높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 상담 중 술·약물·수면에서의 성폭력(준강간)은 40%에 이르렀다. 준강간 아닌 상황도 57%에 달했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 상담 중에서도 술·약물·수면에서의 성폭력(준강간)은 14%가 있었으며, 준강간 아닌 상황은 57%였다.

표 1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2979건)에서 장애 및 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19%	75%	6%
563건	2244건	172건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40%	57%	3%
1,205건	1,706건	68건

표 12.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984건)에서 장애 및 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21%	76%	3%
206건	744건	34건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14%	80%	6%
140건	789건	55건

위 결과를 보면 술·약물·수면의 상황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준강간 상황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우연히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술을 먹다가 성폭력 상황으로 이어진다고보다, 술·약물·수면이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상위 5개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에서 피-가해

자 관계를 분류한 26유형 중 상위 5위를 나타낸 관계 - 채팅 상대자,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 대면인, 직장관계인, (전.현)애인 사건에서 장애유무, 준강간유무,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피-가해자 관계를 차지한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 비율이 전체 장애있음 비율 19.1%보다 훨씬 높은 28.6%로 나타났다. 단순대면인의 경우에도 장애있음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21.9%였다.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 관계자의 경우 준강간 상황과 준강간 아닌 상황이 비슷하게 나타날 정도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준강간’ 비율을 나타냈다. 단순대면인, 직장관계자, 동급생·선후배·친구의 경우 성폭력 상황에서 폭행·협박보다 술·약물·수면이 활용, 이용되었으리라 예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앞서 분석한 내용대로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피-가해자 유형으로는 채팅상대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현)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율 17.7%에 훨씬 상회하는 31%가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상위 5개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피-가해자 관계	건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있음	없음	미파악
채팅상대자	612	175건	417	20	105	464	43	98	464	52
		28.6%	68.1	3.3	17.2	75.8	7.0	16.0	75.8	8.5
동급생·선후배·친구	591	85	479	27	251	296	44	121	406	64
		14.4	81.0	4.6	42.5	50.1	7.4	20.5	68.7	10.8
단순대면인	544	119	408	17	244	240	60	128	350	66
		21.9	75.0	3.1	44.9	44.1	11.0	23.5	64.3	12.1
직장관계자	491	32	420	39	215	227	49	90	345	56
		6.5	85.0	7.9	43.5	46.0	9.9	18.2	69.8	11.3
(전.현)애인	413	56	341	16	80	299	34	147	225	41
		13.6	82.6	3.9	19.4	72.4	8.2	35.6	54.5	9.9

4) 성폭력 당시 상황

전체 강간상담 4,765건 중 직접적인 폭행 협박 있었던 사건은 20.7%였다. 그렇다면 그 외 어떤 상황에서 강간/성폭력이 발생한 것일까? 본 통계분석에서는 성폭력 당시 상황을 객관식

과 주관식으로 집계하였다. 1순위, 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많았던 상황이다. 미응답 1,874건을 제외한 2,891건의 응답을 총수로 놓고 비율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4. 피해 당시 상황

강요	회유	지위이용	속임	그룹	폭언	괴롭힘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과시	경제적 속박	기타	계
19.9%	17.6	11.0	9.7	7.9	4.6	2.9	1.8	1.5	1.4	21.7	100
576건	508	318	281	228	134	84	52	44	40	626	2891

표 15. 피해 당시 상황 (상황 서술)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강요	576	<p>사귀던 남자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 요구한 이후 대인관계 어렵고 적극 대항 못함</p> <p>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기면 가해자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싫어 원하는 대로 해줌</p> <p>성폭행 후 폭행</p> <p>지속적인 요구</p> <p>이복오빠 갑자기 강압적으로</p> <p>위력에 의한 강간</p> <p>헤어지자고하니 찾아와 강제로 유사강간</p> <p>성기 고통</p> <p>불법촬영</p> <p>폭행</p> <p>스킨십을 시도하자 거부했으나 가해자가 강간</p> <p>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하는 이유로</p> <p>성관계를 안하면 헤어진다고 함</p> <p>장애를 이용</p> <p>헤어지자는협박</p> <p>장애를이용</p> <p>협박</p> <p>기습</p> <p>가족이 알게될까봐 소리지르지 못함</p> <p>단 둘이 있을 때 본인 신변안전에 대한 불확실함</p> <p>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가해자가 억지로 성폭행</p> <p>기습적</p> <p>부부관계 응하지 않으면 이혼사유 된다면, 몸이 아파도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p> <p>제압</p> <p>더 심해질까봐 참음</p> <p>힘으로 제압</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가해자가 세명이고 두명이 양팔을 잡고 힘으로 제압 같은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끼리 함께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압적으로 성폭력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강요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실랑이 끝에 도망쳐 나옴 계속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다 도망쳤는데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 호스트바에서 호스트에게 추행, 성폭행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에 삽입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함 피해자를 몸으로 방어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그걸빌미로 협박함 술로 인사불성 사귀려면 성관계 해야한다고 함 친부로부터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 당함 기습 억지로 요구함</p>
회유	508	<p>아빠가 딸을 유사강간했으나 엄마의 충격이 걱정되어 신고 못함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모텔에 가서 싫다는데 강간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함 애인이라며 원치않는 성관계 지속요구하여 성병 걸림 학원원장이 중학생인 피해자에 예쁘다며 성적접촉하고 성관계 힘으로 억압 콘돔이 준비안되어 거절하였으나 나중에 자포자기함 처음에합의하였으나 중간에 고통스러워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함 좋다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 피해자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는 질내사정을 유도 한 것이고, 펠라치오를 했을때 역겨워서 초코우유를 먹은 것을 피해자도 즐 긴 것이라고 피해자를 호도함. 이후에도 계속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자를 괴롭힘 만취한 내담자 유인 심리적으로 기운없고 취약한 상태 가출로인한 숙식제공 집에 가게 해 준다고 하고서는 못가게 함 혼인약속 선배여서 위력이 행사 가해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함 음식 및 선물등 물질적 회유 구걸 애원 마약소지 피해자의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었다가 뺏다가 하는 성행위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금전을 미끼로 성폭행 어릴적 오빠로부터의 성폭행 부동산문제로 가해자와 만난 상황에서 회유하며 들어와 팔 아픈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행 어릴적 가정폭력을 피해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 거부하였으나 잠시 쉬어가자며 끌고감 스토킹 초등학생때 놀이한다 함 미성년자 채팅술자리 성매매알선 지속적요구 가만히 있었음 유인 피해당시 잠을 자고있었고 계부가 범행을함. 본인만 참으면 엄마가 새롭게 이룬 가정이 깨어지지않을거라 생각하여 참음 지속적으로 용돈을 줌 약귀에 씌었다고속임 3명의 사촌오빠로부터 유사강간 아는사람 심적부담 집구해주겠다 약물 연인관계위장 돈을받고 성관계함 채팅어플이용 협박 커피사주겠다 유인 강아지를 함께 찾아주겠다 함</p>
지위이용	318	<p>만취상태로 피해장면만 잠깐 기억나는 상황에서 피해 친부관계 저학년 괴롭힘 동정심 몸을 짓누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년에 피해자가 죽을 사주다. 기도만 하면 된다.' 는 말을 해서 두려운 마음에 이모에게 이야기하니 물으려고 함 기습 직장에서 근무시 지속적인 추행 피해사실 알릴 시 가족봉괴에 대한 걱정 거래처납품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으로 감금 병원 입원시 병원관계자로 부터의 피해 어릴적 친오빠로부터 폭행과 함께 성폭행 피해 직업적으로 가해자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폭행 술 마신 상황에서 성폭행 중 피해자가 깨서 거부하니 진급을 이유로 회유하며 성폭행 지속함 공권력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직장 내 집단 따돌림 어릴때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알게 되었을때도 저항하지 못함 술을 마신후 조건제시 하지 말라고 뿌리치며 저항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미성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문화센터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바지 내려라"라고 함 4학년 때 교사가 성폭력했으나 당시는 신고못하고 중학생이 되어 말하게 됨 평상시 거부에대한 부정적 신념이 작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활동보조하는 대상자로서 가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게되었고 취기가 있다보니 잠시 누어있겠다고 말한뒤 잠이 들었는데 잠든 피해자를 강간미수하려다 그친상황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2급에 피해자로서 친부와 사촌오빠가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결혼하자는 등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간음 사랑 = 성관계라고 함 지적장애</p>
속임	281	<p>어린시절 성폭력 경험으로 신고 못했고, 이후 성정체성 혼란 술을 함께먹고 의식없었는데 눈떠보니 모텔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었음 집에 찾아와 애인처럼 여기게하며 원치않는 강간하고 연락 안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2인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피해를 입음 의료행위인척 속임 모텔에 잠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함 술모임인줄 알았는데 마약병개 보드카페 가서 음란물 상영 얘기만 한다고 함 약물사용 피해자 부상중에 교제약속 귀신불임 술과 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행세함 수면중 너무 어려서 행위의 의미를 잘 몰랐음 성매매알선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제공자에게 옆드려보라며 본인이 마사지 잘한다며 속이고 강제로 성기 삽입 채팅으로 만나 고객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합동으로 간음 차를 태워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 전 연인관계이지만 채무관계가 얽켜있어 채무로 협박하며 성폭행 종교단체 교주를 신격화하여 저항하지 못함 가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정말 닮았었는데 남자친구와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와 성관계 미성년자, 성인채팅자</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평소 가해자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거절하지 못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음만난 당일 사귀자고 제안하고 사귀는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그루밍하여 강제로 성관계 가족을 만나기 전 전 직장동료인 가해자를 만남 채팅으로 만난 상대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여 연애상황 처럼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성관계를 요구. 가족을 만나기 전 전 직장동료인 가해자 만남</p>
그루밍	228	<p>카톡으로 알게되어 금전사기와 강간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삽입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함 아동에게 담배 중고폰 돈을 줌 가출하여 디지털성폭력 피해 탈시설한 보호자 없는 궁박한 아동내 성폭행, 아동은 사랑이라고 여김 수년 전이고 두려워 잘못함 할아버지가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며 성폭력 어렸을 때 동네삼촌이 예뻐해서 성폭력 인지 함 피해사실 알릴 시 가족붕괴에 대한 걱정 저항하지 못함 가해자의 그루밍에 의한 성폭행 연인관계로 포장(미성년자) SNS로 알게된 가해자와 만남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화장실을 가는사이 따라와 힘을 강압적으로 성폭행 같은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끼리 함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압적으로 성폭력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사건 발생</p>
폭언	134	<p>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강간 폭력, 협박, 갈취 피해 당시 미성년자, 편부-양부로부터 가해상황 지속발생 가부장적가족 문화로 큰오빠인 가해자의 위력이 강력했음 조직폭력배, 온몸 문신 지인의 집에서 잠시 숙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절도혐의를 우며 폭행하고 협박한 후 성폭행 신체적 폭력 구타, 목조름, 공포감 조성 힘으로 제압당함 피해당시 아주 어린나이(입학전)였고 가해자는 친할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사실을 알리면 가족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영업실적을 빌미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계약을 빌미로 강간 기초수급비 못받게한다 협박하며 성관계 강요 폭행 엄마가 있는 곳에서 강간</p>
괴롭힘	84	<p>가해자가 가족이라서 대응하기 힘들. 구걸 애원</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채무관계 소극적 거절의사 밝혔으나 가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함. 가해 장소가 가해자의 집이었는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신변이 위험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하게 됨.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몸이 아플당시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학원원장, 계부가 힘을 이용하여 성폭행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함 정신장애 이용</p>
가스라이팅	52	<p>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력 완력 사용 피해자의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이용 사랑하는 사이 이용</p>
가해자의 과시	44	<p>일진 선배 협박 저항하지 못함 부부간 성폭행 신뢰관계 이해부족</p>
경제적 속박	40	<p>성학대, 낙태경험 14세 가출 후 우연히 만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자 마자 폭행을 하고 성폭행</p>
기타	626	<p>가출상태 알바직원에게 피해 미취학 아동으로 어려서 그냥 당하고 성인되기까지 지속됨 잠결에 기습하여 거부 못함 모텔에서 술만 마신적이 있어 의심없이 갔으며 강압적인 힘으로 강간 음료수에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함 25년전 사건으로 성폭력인지 못함 술에 만취되어 수면중 주는 술을 잠깐 입에 댔는데 정신없음 약물이용 심신상실상태 만취상태 친구들과 술 마신후 헤어졌는데 역으로 향하던 중 의심 없음. 행인이 남자 화장실에서 하의가 벗겨진것을 발견 스킨십이 더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미수 데이트성폭력 차안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하여 유사강간. 애무만 하기로 하여 스킨십을 하는 중에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붙잡고 강간 성관계 중 중단을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감금, 절도 미성년자간 온라인그루밍 사건 당일 아닌 다른 날 자살협박</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성관계 후 연애편계로 잠시 전환 외국인(돈환전 도움) 술자리를 갖다가 취하지 않았는데 강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당함 차 뒷좌석에서 눌러서 움직일 수 없었음 체중으로 누름 외진곳으로 데려감. 저항 어려웠음 가출팸에서 피해입음 스텔싱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황이용 거절의사 밝힘 밀치는 정도 약간의 억압.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함 강제로 삽입 손목잡고 몸을 눌러 피해자 억압 자는척했음 친한 동료(가해자)와 술마시고 잠든 상황에서 발생한 비동의간음 성기 음란행위 불법촬영 학교내 성폭력 13살때 아버지의 성폭행 장남만위하는 가정환경 삼촌 성폭력인지 몰랐음 이복오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억이 없음. 약물사용 술에 취함 대면상담에서 상세 내용 파악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음 피해자 만취 후 잠든사이 강간 기습 준강간 만취한 내담자 유인강간 기습 방으로 유인 공포로인한 경직 술자리에서 기습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폭력을 행사함 야간 이동시 폐쇄병동에서 만난 사람 잠자다가 강간 자고 있는데 강간함 룸카페에서 힘으로 제압당함 만14세미만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 두려워 성관계를</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음 상대 가해자를 연인관계로 생각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엄마와 헤어질까 두려움) 연인관계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할 것에 합의하여 성관계 하던 중, 콘돔이 빠진 것을 피해자가 인지 하고 중단하길 요청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지속 가해자의 힘으로 제압 친족성폭력 만취상태로 노상방뇨중 사진촬영됨 조건만남 약물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 가해자 집에서 잠이 들었고, 가해자가 핸드폰 동영상을 찍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음 싫다고거부 블랙아웃 술과 잠 3일을 못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상황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렸고 정신을 잃음 집에 무단 침입하여 수면 마취 기습, 협박(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 술을 많이 마셔서 피해 당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방심하자 가해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피해 당시에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목격자가 있어 피해 상황을 알게 됨 엄마의 지인, 일을 도와달라 하여 갔다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 후 사건 발생 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어남 피해 당시 아동으로, 피해 인지 못함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음(준강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환경미화원이 신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성폭행.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며 연인관계 형성. 어릴적 택시기사로부터 강간미수 피해 같이 술을 마신 후 가해자가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가해자가 들어와 성폭행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피할 곳 없는 차 안에서 유사강간 어릴적 친족성폭력으로 연인사이로 착각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끌고감 감금으로 도망나올수 없는 상황</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 청소년성매수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 무서워 얼어붙음 어려서 제대로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상함만 감지 공포, 두려움 저항, 화장실로 도망 가해자가 영상을 찍고있었음, 도망, 주변인 도움요청 강제로 옷벗김, 거부의사표현 남자화장실로 강제로 끌고감 침대로 끌고감, 공포, 두려움 가해자와의 채팅에서 금전적인 내용이 오갔고 피해자가 5만원 받았다고 함 피해자 모의 애인집에서 피해자는 자고 있었는데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 함. 하지말라고 팔꿈치로 쳤는데 엄마가 와서 가해자는 자는척 함 채팅어플에서 만난 가해자가 돈줄테니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함. 5만원 받 음 가해자 눈빛이 두렵게 느껴짐 가해자 말투, 눈빛 무서움 술 마시던 남친과 남친 친구가 다리 한쪽씩 잡고 특수강간 피의자 2명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특수강간함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못함 피해자가 술에취해있는 상태에서 이웃집 남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간강하 려던중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게됨.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고, 같이 모여 술을 먹고 1박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잡든 피해자에게 간음 술자리가 있었고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올라간 상황 에서 강제로 동네 이웃으로 집에 혼자 아이가 있는것을 확인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 에게 범행 간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속여 술을 먹게 한후 성폭행 놀리로 인식시킴 연인에게 콘돔을 하라고 했으나 강제로 함 아버지가 10세때부터 15세까지 추행, 강간 성매수자인 가해자가 성관계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방식의 성관계 가해자에게 말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술기운에 행동으로 저항하지 못함 모의 동거인에 의한 강간피해 약물복용으로 기억하지 못함 합의하에 성관계, 피해자 13세 채팅상대자와 돈을 매개로 조건만남 피해자 중증장애 피해자의 임신으로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중증장애 학교교사가 피해사실 인지하여 신고 채팅상대자와 돈을 매개로 조건만남 피해자가따라감 아무런 이유없음 어릴적 함께 살았던 사이로 왕래가 있던 사이 </p>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p>위압감 지하철에서 만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카페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에서 성폭력 피해 공원, 화장실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DVD방에서 영화보던 중 갑작스럽게 동거 중 강간및 유사강간행위의 지속 블랙아웃상태 큰아빠의 성폭력 가해자가 만나러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위협 10년동안 동거를 하면서 지속적인 피해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가자고 하여 따라감 집에 찾아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짐 손님이 치마속으로 손을 넣음 가해자와 편의점에서 술을사서 가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함. 핸드폰을 뺏고 욕을 해 무서웠음 아는 남자와 술을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모텔에 감 일하러가는 트럭안에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 예쁘다고 하며 성관계 후 임신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 시도하자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3만원 을 받음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시간에 가해자 집으로 데려감 평소에 아는 사람이 골목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기다리다 피해를 당함 벚꽃구경을 하자고 하며 차에 태워 모텔로 간뒤 성관계함. 12시가 되어 개인택시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놀다 가자고 택시기사가 말하였고 피해를 당함 20살에 만난 남자친구(현 남편)에게 지속적인 피해 폐가 및 공원근처로 나오라고 하여 나간뒤 피해 70세 이웃주민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식사를 하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권해 함께 마시고 노래방을 간뒤 모텔로 이동후 강간 라이브방송중 콩(현금화할수 있는머니)을 준다고 하여 나감 부산으로 데려다줄 사람을 구하다 만난 남자와 모텔, 음식을 배달하고 기다리는 사이 피해 치마를 입고 걸어가다 가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따라감 직장사장이 휴식시간에 창고로 데려가 피해 손님이 야한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길을 가다 만나 차에 타서 피해</p>

피해 당시 상황은 장애유무, 준강간 상황,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 [표 16. 피해 당시 상황]으로 살펴보았다.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족, 모르는 사람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 하나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계로 비율을 산출하였고, 무응답은 별도 표기하였다.

표 16. 피해 당시 상황 - 세부분석

		강요	회유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폭언	괴롭힘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과시	경제적 속박	기타	계	무응답
전체	비율	<u>19.9</u>	<u>17.6</u>	<u>11.0</u>	<u>9.7</u>	<u>7.9</u>	<u>4.6</u>	<u>2.9</u>	<u>1.8</u>	<u>1.5</u>	<u>1.4</u>	<u>21.7</u>	100	
	건수	576	508	318	281	228	134	84	52	44	40	626	2891	1874
폭행·협박 없는	비율	18.1	<u>21.5</u>	12.0	11.3	10.0	2.3	2.6	2.4	1.5	1.3	17.0	100.0	
	건수	356	423	236	223	198	45	51	48	29	26	336	1971	1008
장애 있는	비율	<u>23.2</u>	<u>22.8</u>	5.7	9.9	8.3	4.1	2.2	1.1	1.6	0.3	20.7	100.0	
	건수	146	143	36	62	52	26	14	7	10	2	130	628	280
준강간	비율	<u>22.7</u>	12.2	6.4	10.5	1.7	4.6	2.2	1.5	2.0	0.2	35.9	100.0	
	건수	93	50	26	43	7	19	9	6	8	1	147	409	992
채팅 상대자	비율	17.8	<u>31.2</u>	1.1	13.0	16.5	3.5	0.2	2.0	0.9	2.2	11.6	100.0	
	건수	81	142	5	59	75	16	1	9	4	10	53	455	157
전· 현애인	비율	<u>30.5</u>	14.5	1.1	9.5	8.8	11.5	4.2	4.6	1.5	1.9	11.8	100.0	
	건수	80	38	3	25	23	30	11	12	4	5	31	262	151
친부 모	비율	15.7	9.6	<u>25.3</u>	2.4	7.2	6.0	0.0	4.8	3.6	2.4	22.9	100.0	
	건수	13	8	21	2	6	5	0	4	3	2	19	83	28
모르 는사 람	비율	18.1	14.5	0.6	<u>19.3</u>	6.0	1.2	3.6	0.6	1.2	1.2	33.7	100.0	
	건수	30	24	1	32	10	2	6	1	2	2	56	166	145

전체 집계에서는 강요 > 회유 > 지위 > 속임 > 그루밍 > 폭언의 순서로 피해 당시 상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에서는 회유가 가장 높았고(표 16-1 참고),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는 강요와 회유가 비슷하게 가장 높았다. 준강간 상황에서는 강요가 가장 높았다.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서도 살펴보았을 때 채팅상대자의 경우는 회유, 전·현애인은 강요, 친 부모는 지위이용, 모르는 사람의 경우 ‘속임’이 가장 많은 피해당시 상황으로 파악된다.

가해자가 채팅상대자인 경우, 구체적 성폭력 상황 응답을 보았을 때 회유(132건), 강요(70건), 그루밍(68건), 속임(52건)의 비율이 채팅상대자 중 폭행·협박이 없던 488건 중에서 322건으로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족·친·인척·친밀한관계를 제외한 아는 관계에서 2순위

로 나온 동급생·선후배·친구(442건 13.5%)의 구체적 성폭력 상황 응답을 보면 강요(68건), 회유(45건), 속임(25건), 괴롭힘(12건), 그루밍(9건), 지위이용(8건), 가해자의 과시(7건), 폭언(5건), 가스라이팅(4건), 기타(53건)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피해자의 비동의 의사를 무시한채 회유, 강요, 심리적 지배, 속임의 상황에서 발생한 강간피해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 (순위)

	회유	강요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괴롭힘	가스라이팅	폭언	경제적속박	가해자의과시	기타	계	무응답
비율	21.5	18.1	12.0	11.3	10.0	2.6	2.4	2.3	1.5	1.3	17.0	100.0	
건수	423	356	236	223	198	51	48	45	29	26	336	1,971	1,00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당시 상황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는 응답의 주관식 기입 내용을 살펴보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지속적인 요구, 구걸 애원, 헤어지자고 하니 찾아와 강제로 유사 강간, 성관계를 안 하면 헤어진다는 협박, 헤어지자는 협박, 부부관계 응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 된다면, 몸이 아파도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였다.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종결시키겠다는 강요 속에서 피해자 의사와 전혀 무관한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동급생 선후배, 단순대면인 관계에서 ‘회유’ ‘강요’가 작동하는 상황의 주관식 응답에서는 “사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거나 “구걸 애원”하며 “억지로 요구”한다는 키워드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용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 혹은 중단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걸하고 구걸하며 피해자를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양태를 상담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는 강간과 성관계가 여전히도 구분되지 않는 성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회유’ ‘강요’ 응답에서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주관식 키워드는 “심리적으로 기운 없고 취약한 상태, 가출로 인한 숙식 제공, 집에 가게 해준다고 하고서 못 가게 함, 금전을 미끼로 성폭행, 커피를 사주겠다고 유인함, 집 구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는 가해자 대부분은 채팅 상대자였다.

3.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과 그 이유

1) 신고한/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전체 상담 4,765건 중 신고한 성폭력은 3,235건, 신고/고소하지 않은 성폭력은 1,009건, 미파악 521건이었다.

표 17.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비율

구분	신고·고소함	신고·고소하지 않음	미파악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
건	3,235	1,009	521	4,765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한 경우는 67.9%,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다. 전성협 전체 통계 중 신고·고소 비율은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연구] 성범죄 신고율 2013년 1.1%, 2016년 2.2%, 2019년 1.7% 보다 높는데, ‘성폭력 상담소’를 찾고, 듣고, 안내받아 전화하고 지원받는 경우는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고 지원받는 과정은 신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으나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며,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통계에서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한 해 동안 ‘강간’상담 중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62.5%였다. (표 7 참조) 폭행·협박, 피해입증 가능한 증거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법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고소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신고/고소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21.2%는 어떤 상황일까? 이에 대해 살펴본다.

표 18.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신고한	신고 안한	무응답	계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0
	건수	3,235	1,009	521	4,765
폭행·협박 없는	비율	71.7	22.7	5.6	100.0
	건수	2,135	677	167	2,979

		신고한	신고 안한	무응답	계
장애있는	비율	83.7	10.7	5.6	100.0
	건수	760	97	51	908
준강간	비율	76.3	16.6	7.1	100.0
	건수	1,069	232	100	1,401
채팅상대자	비율	81.5	13.1	5.4	100.0
	건수	499	80	33	612
전·현애인	비율	67.8	23.0	9.2	100.0
	건수	280	95	38	413
친부모	비율	60.4	29.7	9.9	100.0
	건수	67	33	11	111
모르는사람	비율	73.0	19.9	7.1	100.0
	건수	227	62	22	311

[표 18.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를 통해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상황은 장애유무,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족, 모르는 사람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 하나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계로 비율을 산출하였고, 무응답은 별도 표기하였다.

전체 집계 중에서 신고안한 비율이 '친부모'가 29.7%, '전·현애인'이 23.0% 순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신고한 비율은 '장애'가 83.7%, '채팅상대자'가 81.5%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해당 통계를 통해 피해자가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있는 경우는 주변에 의한 고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신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채팅상대자에서 장애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이어 신고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1,009건)에 달한다. 그 중 미응답 83건을 제외한 926건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적은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9.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구분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타	계	미 응 답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83

표 20.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상황 서술)

키워드	건	세부사유
피해자 상황·상태	304	<p>초등4학년의 기억이고 도움을 청하지 못함</p> <p>성정체성 고민</p> <p>연락두절</p> <p>상담할 준비가 될 때 다시 연락하겠다</p> <p>지방 거주</p> <p>과거사건이라 지나가고 싶어함</p> <p>피해자는 13세 미만이며 해외거주중</p> <p>고소 원하지 않음</p> <p>남자친구가 한 강간이지만 양가감정이 있어 신고는 안함</p> <p>강요적 성관계가 싫으나 많이 좋아하고 있음</p> <p>20대 초 어린 시절 피해이고 힘들</p> <p>고소는 고민하고 있음</p> <p>당시 상황에 고소하기가 어려웠음</p> <p>심신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p> <p>가해자에 대한 두려움</p> <p>힘들까봐</p> <p>가해자로부터 다른 더 큰 문제로 정신없어 고소못함</p> <p>피해자 진술하러 가서 취소함</p> <p>일이 복잡해질 것 같음</p> <p>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대응에 어려움 겪음</p> <p>조건만남/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소년원 수감중</p> <p>금전적 관계 연루. 남성 경찰 앞에서 피해를 말하기 어려움</p> <p>수치심, 자기혐오</p> <p>일상을 위해 안 하기로 결심</p> <p>정조 관념으로 가해자와 결혼함</p> <p>없던 일로 하고 싶었음</p> <p>결혼해 준다고 했음</p> <p>남자친구도 있어서 없던 일로 하자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음</p> <p>좋게 좋게 하고 싶어서</p> <p>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고소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움</p> <p>성범죄와 엮이는 게 싫어서</p> <p>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p> <p>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서</p> <p>자신의 인생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p> <p>피해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음</p>

키워드	건	세부사유
		<p>가폭, 성폭 중 미결정 임신중 경제적인 문제 본인도 술을 먹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려 했음 내담자가 해외에 거주 중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 강간으로 인한 임신 및 결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경제적 도움을 받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냈음 건강상의 이유 힘이 되어줄 가족도 없어 말못함 경제적 속박(양육비)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가해자에 대한 욕만 할 수 있음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할 결심 방학 끝나고 고소할 결심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면 혼이 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함. 자살. 자해충동 심해 정신과 입원 종교적인 이유로 죄책감과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강간피해 이후 가출 중복장애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함.</p>
<p>사건관련 (고소 고려 입증 어려움 고소취하 합의 공소시효)</p>	<p>287</p>	<p>연인관계라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음 12년전 사건, 공소시효 기간 지남 초등 4학년 때의 강간 증명의 어려움으로 신고 주저함 신고 부담이 커서 고소 고려중 불리한 증거가 있음 30여년 전 사건 증거부족 폭행협박이 없어서 고소하지 않음 공소시효 도과 폭행으로만 고소함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어서 고소 전 합의 폭행협박이 없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 위주 경찰이 미파악 성관계 인정 안됨 경찰이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고소가 어렵다고 안내 이전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 당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고소하지 못함 강간죄 적용 어려움 최협의 입증 어려움</p>

키워드	건	세부사유
		<p>불송치 염려 성폭력피해 근거 없음 변호사 상담 후 불리한 것 같아서 고민 자신의 행동이 가해자에게 합의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1366에서 당시 신고를 안했으면 암묵적으로 용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음 메시지 내역 등을 다 지워 증거가 없어서 피해 전후 자신의 태도가 애매하여 법은 약하다고 생각함. 국내 현행법상 비동의의 간음죄가 없다 하여, 피해자 고소하지 않음. 촬영피해만 신고함 준강간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찰서에서 사건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함 경찰에 대한 불신,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증거도 없어서 망설임 경찰에서 자신을 경제사범 사기범으로 몰까봐 하지 않음 성폭력피해 증거를 찾아오라는 경찰의 말로 신고 포기함 변호사 상담에서 사건하기 어렵다함</p>
'2차 피해' 두려움	95	<p>가족이 아는 것이 두려워 신고 안함 보복당할까봐 두려움 예술계, 피해를 볼까봐 성희롱성폭력으로 회사에 징계조치는 취했으나 공직의 소문과 무고의 염려로 형사고소는 고려중임 피해라고 보기에 애매한 상황이어서 무고당할까 봐 역고소에 대한 걱정 무고로 보복 당할까 봐 학교 관계자로 소문 우려 가해자가 고용주로 법적대응에 대한 부담감 가해자에게 피소당함 신고하여 전과자를 만들게 될까 봐 두려웠음 동네가 시골인데 누가 알게 될까 봐 협박받음. 가해자는 성인이고 부자. 피해자는 어리고 가난한 집안의 여성,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음 사진 유포 협박 남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수사관이 말함 경찰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며,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 말을 듣고 무서워서 신고하면 더 괴롭힐 것 같아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신고하지 않음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회사에 소문날까봐 미신고 피해자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고소는 하지 못함.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따돌림을 당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했음 상사를 고소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음. 전 직원이 본인 빼</p>

키워드	건	세부사유
		<p>고 남성, 사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우려 같은 업계로 이직해야 하여 계약직이어서 신고하기 두려움 시험지를 내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를 알리면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미리 봤다고 해서 자퇴 당하게 할 거라 협박 회사 생활을 유지해야 해서 신고 후 보복과 동영상 유출의 염려 가해자는 군대 상사로 가해자가 무섭고 성폭력 신고 시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올까봐 못함 목사님을 상대로 신고하기가 두려웠음</p>
주변의 반대·관계	93	<p>관계단절두려움 자녀에게 알려질까 봐 친족관계라 성추행을 알면 가정파탄이 걱정되어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준강간했으나 언니와의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음 할아버지가 행위자인데 가족이 신고를 원하지 않고 관계단절이 걱정되어 신고 못함 가족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회유해서 신고를 못함 가족이 신고 만류 가족간 단절이 불편하여 신고하지 않음 가족이어서 부모님이 아실까봐 아무 조치도 않았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가족들이 하지 못하게 함 엄마가 알까 봐 주변의 만류 교회 사람들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부모의 비난 등 부모님 모르게 신고하고 싶음(성인되면) 아빠가 화가 나서 진술을 제대로 못함 아버지가 경찰이라 신고하지 못함 부모가 미조치 가족의 무감각 주변의 부정적 의견 언니의 지인이라 최대한 좋게 지내고 싶어서 친부가 무시함. 가족, 주위인지 부담 피해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함 당시 담임 선생님께 알리자 선생님이 묻는 게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함. 피해자 공무원 시험 준비로 보류한다고 함 부모의 부인으로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가족에게 알렸으나 지지받지 못함 가정폭력 및 부모의 직업으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 배우자가 못하게 해서</p>

키워드	건	세부사유
		<p>조부모의 반대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고 부모가 신고를 원치 않음</p>
다른 해결방법 희망/진행	61	<p>변호사 선임하여 가해자 퇴사 권유 및 합의요청 예정 성희롱성폭력으로 회사에 징계조치 가해자 파면 다른 피해(절도)관련하여 신고함 법적처벌 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부터 받고 싶음 심리적 어려움으로 회복에 집중하길 원함 종교 내에서 처벌하여 신고 안함 학교만 알려서 가해자 퇴직 학내징계 사내 심의결과 후 고소 진행 여부 결정예정 교내 신고 사과를 원함 이혼소송, 가사소송 진행 학폭위 다른 죄로 신고할 경우 가해자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 고민함 교육기관을 통한 처분을 원함 신고보다는 자신의 상황 이야기하고 위로받고자 전화상담 아동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부터 받도록 권유 현재 타국 거주/ 가해자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는 방식을 원함 기독교 내 문제해결 원함 교육을 희망함 기관연계 직장 내 감사반에만 신고조치 이혼하길 원함 쉼터연계 고소보다는 분리를 원하였음 학내조치 후 법정진행은 하지 않음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태임</p>
피해 인식 여부	43	<p>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지 안함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피해에 노출되어 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고 괜찮다고만 함 피해로 인식하지 않음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함 아들이 아니라 연인처럼 느껴진다고 함.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관계로 성폭력으로 인지 안함 당시엔 피해라고 인지 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피해에 대한 확신 없음 (술) 스스로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 하지 않음 피해자가 강사를 좋아해서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시</p>

키워드	건	세부사유
		<p>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함</p> <p>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로 인식하지 못함</p> <p>피해사실을 부인함</p> <p>가해자가 사귀자고 함. 강간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음.</p> <p>연인관계를 되돌리고 싶기에 신고는 안하기로 결정</p> <p>가정 내 문제라고 생각함</p> <p>당시에는 피해인 줄도 몰랐음</p> <p>당시에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해 말하지 못함</p> <p>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상함만 감지하여</p> <p>가족 내부 문제로 여김</p> <p>다수 성폭력 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무감각</p> <p>채팅상대자와의 만남 지속 및 폭력에 대한 인지 및 경계설정의 어려움</p> <p>피해인지 몰라서</p> <p>부부관계 문제라 반복</p> <p>애인관계였다</p> <p>합의 하에 성관계로 인식(성관계를 통해 애정욕구 충족을 보상 또는 위로 받았음으로 인식)</p> <p>피해상황을 특정하지 못함</p> <p>피해자 동의</p>
가해자 상황·상태	40	<p>강간했던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p> <p>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 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p> <p>가해자와의 연락 두절</p> <p>가해자가 경찰로 고소 생각하지 못함</p> <p>가해자 사망</p> <p>가해자 불상</p> <p>가해자도 장애인이라서</p> <p>가해자 외국인 출국</p> <p>가해자 강제 추방</p> <p>가해자 자살</p> <p>가해자가 경찰신분</p> <p>가해자 특정 어려움</p> <p>애인 관계 계부</p> <p>아빠의 성문제가 드러나고 엄마와 이혼하여 같이 살지 않게 됨</p> <p>친족관계 친척관계</p> <p>동성에 의한 성폭력</p> <p>오빠라서 아빠라서</p> <p>가해자가 가족이어서</p> <p>동료라서 조폭이라서</p> <p>모르는 사람이어서</p>
기타	3	<p>싫었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주지 않아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싶음</p> <p>가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어머니가 목인, 모텔 비용을 대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p>

[표 20.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상황 서술)] 중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다른 해결방법 희망’을 살펴보면, ‘피해자 상황’은 고소를 원하지 않음, 자책, 수치심,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싶은 마음, 장애로 인한 진술어려움, 건강상의 이유 등 피해자의 심리상태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건관련’은 고소취하, 공소시효, 합의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증거, 폭행·협박 없음, 합의한 것처럼 보일까봐 등 피해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가 있는 폭행, 불법촬영 건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폭행·협박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고 하거나,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거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이라고 하거나 등 수사기관의 안내로 인해 신고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다른 해결방법 희망’에서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만을 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 외 주목할 것은 회사·학교·종교 등 조직 내 징계조치 등 수사·법적 과정 외에 다른 해결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자신, 직장과 소속업체, 종교나 문화적 관념, 가족과 주변사람, 경찰 등으로부터 강한 자책감, 무력감, 힘듦, 해결이 요원한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고소는 손쉬운 방법이 결코 아니며, 많은 난관과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길임을 생각하게 된다.

[표 21.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장애유무, 준강간 상황,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를 통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표 21.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 타	계	무 응 답
전체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수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폭행·협박 없는	비율	<u>33.1</u>	<u>32.3</u>	9.8	8.7	5.9	5.7	4.3	0.2	100	
	건수	209	204	62	55	37	36	27	2	632	45
장애 있는	비율	<u>34.1</u>	18.2	12.5	<u>17.1</u>	3.4	<u>10.2</u>	3.4	1.1	100	
	건수	30	16	11	15	3	9	3	1	88	9
준강간	비율	<u>36.2</u>	<u>31.2</u>	13.1	7.7	3.2	4.1	4.5	0	100	
	건수	80	69	29	17	7	9	10	0	221	11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 타	계	무 응 답
채팅 상대 자	비율	43.8	20.5	12.3	6.9	6.9	5.5	4.1	0	100	
	건수	32	15	9	5	5	4	3	0	73	7
전현 애인	비율	34.8	29.2	12.3	4.5	11.2	4.5	3.5	0	100	
	건수	31	26	11	4	10	4	3	0	89	6
친부 모	비율	29.0	16.1	0	29.0	6.5	0	19.4	0	100	
	건수	9	5	0	9	2	0	6	0	31	2
모르 는사 람	비율	44.1	25.4	11.9	3.4	3.4	6.8	5.0	0	100	
	건수	26	15	7	2	2	4	3	0	59	3

전체 926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 > 사건관련 > 2차 피해 > 주변인관계 > 다른 해결 원함 > 피해인식 여부 > 가해자 상황 순으로 나왔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 ‘사건관련’이 ‘피해자 상황’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현행 강간죄의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 준강간은 ‘심신상실’과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피해자 상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해자 상황’은 피해자 스스로의 자책감, 무력감과 관련이 높았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과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 상황’이 40%를 넘는다. 채팅상대자는 43.8%, 모르는 사람은 44.1%가 피해자 상황을 이유로 신고/고소하지 못하였다.

채팅상대자의 경우에 자신이 원해서 만나게 되었거나, 성적 관계를 예상하거나 원했다는 식의 선입견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채팅상대자가 겪는 자책감과 무력감의 수위를 보면 채팅상대자와의 만남과 성적 침해가 예상 밖, 통제 밖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흔히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도움 받고 지지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쉬운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드리운 자책감과 무력감의 벽은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채팅상대자’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상이해 보이는 카테고리 모두에서 피해자는 자책과 무력감을 겪고 있다.

‘친부모’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주변인 관계’가 ‘피해자 상황’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을 신고하는 것, 가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만류, 피해자가 겪게 되는 부담의 현실을 보여준다. 친족성폭력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이 필요한 지점이다.

4. 불송치, 불기소 된 강간피해

전체사례 4,765건 중 신고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는 3,235건이다. 이 중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를 살펴보았다. 이 수치는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기는 어렵다. 불송치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의 결정이고, 송치는 검경수사권 이전과 이후의 송치를 포함한다. 송치가 많다면 불송치 결정을 적게 한 결과라기보다, 수사종결권이 없던 상황에서의 경찰 송치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기소의 경우에도 검경수사권 분리 이전의 기소가 있고, 분리 이후 송치를 거친 기소,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의 기소가 포함되어 있다.

불송치 비율, 불기소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고소/신고를 하는 피해자나 시민들에 비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사건들을 누락시키고 있는지,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서 그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강간’과 강간 이외 성폭력 죄목들은 불송치와 불기소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 비판, 제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경찰통계, 검찰통계를 통한 불송치율, 불기소율을 살피는 것과, 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되는 과제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비율 도출에서 전체 숫자 상정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비율’이 아닐 경우 비율 표기는 하지 않고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했으며, 비율이 유의미할 때는 비율을 표기했다. 그리고 2022년 상담 강간상담사례 중 ‘불송치’ 된 것의 이유, ‘불기소’된 것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불송치, 불기소 현황

표 22. 신고/고소된 사건,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사례수

상황	전체 강간상담	신고/고소함	신고/고소않음	미파악		
건수	4,765	3,235	1,009	521		
비율	100.0	67.9	21.2	10.9		
상황	신고/고소건수	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불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수사중	해당없음	미파악
건수	3,235	1,590	571	492	12	570
상황	송치된 건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수	1,590	1,157	125	146	162	
상황	불송치 건수	이의제기함	이의제기 안함	고려중	미파악	

건수	571	134	210	29	198	
비율	100.0	23.5	36.8	5.1	34.7	
상황	불송치 이의제기 후 건의수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수	134	19	72	12	31	
비율	100.0	14.2	53.7	9.0	23.1	

전체 신고건수(3,235건) 중 불송치건은 571건이었다. 이 중 이의제기를 한 건은 134건(23.5%), 이의제기 고려중은 29건(5.1%), 이의제기 안함 210건(36.8%), 미파악 198건(34.7%)이다. 이의제기를 한 건은 고려중인 것과 합쳐도 전체 불송치 건 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 처벌의사가 중단되게 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성인지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이의제기 한 134건 중에 불기소 처분된 건수는 53.7%(72건)이며, 기소된 건은 14.2%(19건)이었다. 불송치가 되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하여도 매우 적은 건만 기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전체 강간상담 중 기소된 것, 고소/신고한 강간사례 전체 중 기소된 것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은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상담 사례 대비 기소되는 건은 1/4 수준이다. 고소/신고한 상담사례 대비로는 1/3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표 23. 강간상담 및 고소/신고한 강간 대비 기소비율

강간상담(전체)	기소된 건 (전체)	전체 강간상담 대비 기소율
4,765	1,176	24.7%
고소/신고한 강간(전체)	기소된 건 (전체)	고소/신고한 강간 대비 기소율
3,235	1,176	36.4%

2) 불송치, 불기소의 이유

불송치, 불기소 이유를 객관식 항목 중 1, 2순위 선택으로 집계하고, 이어 주관식 이유도 기재하게 하였다. 1, 2순위 응답을 합한 내용과 응답된 전체 숫자 중 비율은 표 24와 같다.

표 24. 불송치, 불기소의 이유 (객관식, 복수 응답)

구분	불송치 이유응답	비율(%)	불기소 이유 응답	비율(%)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5	17.0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17.6	38	18.4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1	15.0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9.3	21	10.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6	7.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3	1.5
진술오염	9	1.5	2	1.0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2	1.0
공소시효 초과	2	0.3	0	0.0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135	22.9	45	21.8
미파악	37	6.3	13	6.3
총계	590	100.0	206	100.0

불송치, 불기소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합의 등을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가장 높았다. 그를 제외하고는 불송치에서는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의 이유가 19.3%로 가장 높고, 이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17.6%로 두 번째였다. 불기소에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18.4%로 가장 높고, 이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이 17.0%로 높았다.

현행 폭행·협박 입증 방식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폭행·협박이 없다는 상황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불인정과 함께 연동되고 있지 않을지 유추하게 된다.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폭행·협박도 없었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이다. 그렇다면 최협의 폭행·협박이나, 광의의 폭행·협박이나 동의여부나 강간죄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판례를 완화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신빙성 인정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요건 성립/불성립도 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저항유무’의 기준은 오랫동안 ‘저항하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라는 피해자다움을 형성해왔다. 극심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못하는 것이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진정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여러 상황, 관계, 조건, 전후의 맥락, 피해자의 대처방식 등이 수사기관으로는 ‘민지 못할 것’이 되고 피해자가 진술신빙성 없는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다.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 기준,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문제 삼는 판례와 학설은 달라져야 하며, 이 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피해자 진술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맥락적으로 듣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3) 불송치의 이유

표 25. 불송치 이유 세부 응답 (주관식)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p>성관계 중 물고 빠는 것은 상해로 보기 어려움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 당시에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음 유형력 행사 증거 없음 잡아끌고 밀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후 함께 산부인과 방문함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지속적 방문 및 연락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p>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p>진술일관성부족 진술시 추가내용번복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일시, 행위태양 등에 대해 특정하기 어려움 피해 진술 번복 2명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 피해자의 비일관성있는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함. 3년 전 피해상황을 신고 진술 번복 피해자 진술불일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없음 동행했던 친구와 진술 다름 진술분석 상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움. 상담소의 상담확인서와 피해자 구술 내용, CCTV상 일치하지 않음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번복 CCTV영상 불일치 친구의 증언과 불일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참고인이 들은 바 없다고 답변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의심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함 진술과 증거정확이 상이함 거짓말탐지기 거짓 진술분석가의 의견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 차에 탔고, 피해시 적극적인 저항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맞지 않음 가해자와 진술불일치 사건당시 피해자는 기억에 없고, 가해자는 정확하게 진술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녹취록)에 신빙성이 실림 가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 장애로 사건일자 등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같은 동성과 같은 장애인</p>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p>장애의 이유 발달 장애인으로 진술의 어려움, 피해자 부가 가해자 편에서 증언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여 진술신빙성 의심 허위신고 배제할 수 없음 피해시간에 대한 의심 교제 정황 합의인 듯 한 메시지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공백이 있다 수면 중 성폭력 피해 납득 어려움</p>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p>성폭력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진술불가로 인한 내사종결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움</p>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p>피해 후 다시 가해자를 만남 피해 이후 연락 주고 받음 피해 이후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고, 고가의 명품을 요구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 피해 이후 카톡내용 : 서로 농담을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 첫 피해 이후 여러 차례 가해자집에 감 첫 강간 후에도 왜 계속 만났는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친근함을 표현하는 메시지 연인관계지속 애인사이 이미 성관계가 있어서 사건 발생일의 성관계만 강제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연인관계의 성관계 불법타투시술자와 모텔에 감 모텔로 가해자와 합의 동행함 모텔에 함께 감 반복적 피해 거부하거나 도움 요청안함 자발적 만남 잠시동안 연인관계였다 두 사람이 동거하며 사귀는 것으로 간주 CCTV확인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등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고 협박 없었음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인여성으로 당시 처음 만난 사람과 폭행 협박없이 강 간이 성립할 수 없음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서 여성상위체위로 강간을 당한 것이 적극적 인 성행위로 인식됨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됨</p>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키스방 알바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님' 이라고 적힘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피해자로 보기 힘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약물 검출되지 않음 불법촬영물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시도함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가해자의 집에서 한달간 생활 성관계가 여러 번 지속, 성매매 관련되어 있음 두 사람이 외도로 따로 거주지를 두고 생활한 것, 금전이 오감 사기사건과 함께 진행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함
진술오염	9	피해자가 이상심리를 보여 환청과 환시를 말하는 등 진술오염 구체적 진술 부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부모가 장애를 등록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시 부모가 숨기느라 적절한 피해진 술이 이루어지지 못함 과거 학폭위 때 성폭력사건을 부모가 아는 것이 두려워 사건을 덮 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에 의해 한 것이라고 자필진술서를 쓴 것이 불리하게 작용 합의된 관계로 피해자 진술서 작성 교육청 이관 후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함 피해 사실은 맞으나 피해자의 대응 미흡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한 사건이라고 판단
공소시효 도과	2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335	위력입증 안됨 폭행협박 입증 어려움 가해자 주장 뒤집기에 증거 불충분 구체적인 사유없이 증거 불충분. 증거자료(녹음파일) 요청했는데 피 해자 제출하지 않음 구체적인 사유없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 불충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DNA검출안됨 CCTV 등 직접 증거 없음 피해자가 지목한 모텔이 없음 너무 오래되어 입증 어려움 불성립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무혐의 처벌 불원, 합의 고소취하 피해자 심경의 변화로 인해 신고 후 고소 취하함 신고취하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10년전 강간사건으로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부모님이 3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함 15년전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하였음 가해자 특정 불가능 가해자 특정 안되어 기소중지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유로 불송치 가해자가 외국인이며 출국상태 피의자 사망 가해자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처벌 대안으로 심리 치료 가해자 자살 신원 미파악 범인을 못잡음 가해자가 파키슨병이라 불송치함 피해자진술거부 피해자 연락이 안됨 피해확인 어려움 피해자 사망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 진술을 허위신고로 의심 및 피해자 고소취하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성적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 동성간 합의 장난전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자율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파악	37	

(이상 경찰의 불송치 이유 내용 분류, 나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송치 판단이 기술되어 있다.

성관계 중 물고 빠는 것은 상해로 보기 어려움 /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 / 당시에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음 / 유형력 행사 증거 없음 / 잡아끌고 밀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후 함께 산부인과 방문함 /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 피해 이후 지속적 방문 및 연락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방문을 했다는 것, 산부인과를 갔다는 것 등의 사정은 사건 당시 상황과 무관할 수 있고, 연락을 해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

한 불송치 사유를 보면 폭행·협박 입증 여부를 극심한 저항유무로 판단한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다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준강간, 장애여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의 불송치 이유

구분	불송치 이유전체	비율	장애있는 성폭력	비율	준강간	비율	폭행협박 없는	비율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7	17.2	21	11.5	83	18.4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17.6	56	26.0	39	21.4	86	19.1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5	16.3	16	8.8	64	14.2
피해자다움에 대 한 통념 작동	55	9.3	9	4.2	11	6.0	48	10.7
심신상실 항거불 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	0.5	25	13.7	26	5.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10	4.7	5	2.7	16	3.6
진술오염	9	1.5	8	3.7	4	2.2	5	1.1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5	2.3	2	1.1	8	1.8
공소시효 도과	2	0.3	0	0.0	0	0.0	2	0.4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135	22.9	51	23.7	43	23.6	90	20.0
미파악	37	6.3	3	1.4	16	8.8	22	4.9
총계	590	100.0	215	100.0	182	100.0	450	100.0

[표 26. 준강간, 장애여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의 불송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 있는 성폭력의 경우 불송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가장 높았다. ‘장애를 이유로 진술신빙성 부족’ 이라고 판단한 불송치 이유 기재도 많았다.

장애있는 사례 불송치, 불기소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진술신빙성 의심과 피해자다움은 장애라는 상황이 더해져 피해를 더욱 입증받기 어렵다. 장애로 인해 날짜 장소, 행위 태양, 가해자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술번복, 진술신빙성 의심으로 쉽게 연결된다. 장애로 인해 수사기관-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신뢰받기 더욱 어렵고, 가족에 의해 피해가

축소·왜곡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보다 주변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도 한다. 제3자에 의한 진술오염, 거짓, 허위신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분석가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진술 신빙성 없다는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진술신빙성을 쉽게 배척한다(‘진술신빙성 없다는 진술분석가의 의견’).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 진술분석가는 제대로 선발되고, 교육되고, 성폭력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하고 있는지, 진술분석가의 의견 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황을 보조할 만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가해자가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로 인해 성폭력 발생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거나,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장애여성 피해자의 맥락적 이유, 가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준강간 사건 중 불송치이유를 보면, 미파악을 제외하고 기타 (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합의)가 2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이 21.4%,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 어려움’이 13.7%,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이 11.5%였다.

준강간의 특성상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강간피해가 있었기에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피의자 진술의 모순이나, 현장 수사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신빙성과 사실입증,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더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가해자의 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이거나 (응답 중: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실림, 피해자의 기억이 없고 가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판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였으며 (응답 중: 피해자가 지목한 모텔 없음, 피해시간 의심, 동행한 친구와 진술 불일치,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신고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고소진행을 포기함)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했다(응답 중: 수면 중 성폭력 피해 어렵고 증거불충분, 불법촬영물 상 피-가해자가 대화했다.). 또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여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응답 중: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 스스로 차에 탔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하였다, 모텔로 가해자와 합의 동행했다.).

준강간을 완전히 ‘심신 기능을 상실하여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이 가능한 상황’으로 좁게 해석하는데다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수사관의 통념이 겹치며 준강간은 법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 정신을 잃는 것과 별개로 신체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의 준강간의 사례에서도 ‘피해자답지 않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불송치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불기소의 이유

표 27. 불기소 이유 세부 응답 (주관식)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38	<p>저항했으나 동의로 해석, 항거불능 입증 어려움. 재정신청했으나 동의로 인정되어 기각</p> <p>지속적 성피해가 불륜관계로 해석되어 무고와 상간녀 소송을 당함</p> <p>만취 피해자진술 신빙성이 없음</p> <p>cctv순잡는 장면 찍힘. 피해이후 가해자와 연락주고 받음</p> <p>진술일관성 없음</p> <p>불송치 이유와 동일</p> <p>고소취하, 진술 왔다갔다(고령 피해자), DNA나왔으나 정액은 나오지 않아서, 약물 투여 다음날 피해라서</p> <p>진술상 강간성립 어려움</p> <p>고소시점을 두고 받아 들여지지 않음.</p> <p>초기진술 때 기억나지 않은 상황까지 부풀려 진술, 2차 진술 때 1차 때와 다르게 진술한 점/ 가해자의 폭행 건에 대해 고소취하한 점</p> <p>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p> <p>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음</p> <p>피해 전후 일관된 진술. 피해 당시 술 마신 정황. 성관계 관련. 종료된 경위에 대해 비밀관. 검찰에서 진술과 경찰 진술 간 불일치.</p> <p>진술시 가해자를 좋아한다고 함.</p> <p>진술 상 사건 일시,장소가 반복됨</p> <p>피의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p> <p>진술 사건시간 불일치</p>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	35	<p>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p> <p>불송치 사유와 동일</p> <p>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p> <p>피해자의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불충분</p> <p>폭력성과 강제성이 떨어짐</p>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31	<p>검찰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여 실형선고</p> <p>성폭력사건은 연인관계로 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함</p>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21	<p>피해후 가해자와 소통함"</p> <p>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불륜의심</p> <p>DNA검출 안됨</p> <p>가해자와 대화하면 피해 장소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한 대화였다고 불송치이유서 반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p> <p>증거불충분(확실한 사유 미기재)-첫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됨</p> <p>피해자라면 지속해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관계를 이어 나갈</p>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 강간 피해 이후 다시 사권 정황 등을 피해자답지 못하다 강간 피해 이후 사권, 사귀던 중 강간 피해 후 다시 헤어졌으나 이후 관계를 지속한 것 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가 다소 이례적. 합의에 의한 관계와 강간 범행일 시경 명확히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가해자와 만남을 지속함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음 반복적 피해 사실관계상이 거부하거나 도움 요청 안함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16	교육이수조건으로 불기소처분되어짐 불법촬영만 인정되고 준강간은 증거불충분 피해자가 상황 파악 및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음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3	이전의 성이력, 금전적 관계 연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빌린돈을 받고자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런 정황이 피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편견, 금전적 관계 개입
진술오염	2	
피해자에 대한 오인	2	
공소시효 도과	0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합의 장애인 간음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가해자가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움 경찰에서 마무리 가족들과 관계유지 처분수용 합의.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소극적 대처
미파악	13	

[표 27. 불기소 이유 세부 응답]을 보면, 불기소 이유에서도 불송치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 관계를 유지했거나 했을 때 성폭력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이 아니라, 피-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가족, 부부의

경우에 성폭력 성립이 어려워진다는 모순이 등장한다. 피-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관계를 성적 침해, 성적 언동이 가능한 관계로 가해자가 규정한 이후에 이것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피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권력과 전횡에 수사기관 역시 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화간 이데올로기’로 피해자가 극심한 저항, 극단적 관계단절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술 확보, 현장 및 정황적 증거 확보, 사건 발생의 맥락과 이후 문제에 대한 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와 판단이 요구된다.

5) 불송치, 불기소와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세부 통계

불송치, 불기소된 사례는 어떤 현황인지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애 여부, 준강간 여부, 폭행협박 여부에 대해 전체 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신고/고소한 건 중 비율, 불송치 된 사안 중 비율, 불기소 된 사안 중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28. 불송치, 불기소 된 강간사례(571건)에서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71건	127건	15건
	33.3%	59.6%	7.0%
불송치(571건) 중	198건	352건	21건
	34.7%	61.6%	3.7%
신고/고소(3235건) 중	760건	2377건	98건
	23.5%	73.5%	3.0%
전체(4,765건 중)	19.1%	74.6%	6.3%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83건	104건	26건
	39.0%	48.8%	12.2%
불송치(571건) 중	180건	349건	42건
	31.5%	61.1%	7.4%
신고/고소(3235건) 중	1069건	1893건	273건
	33.0%	58.5%	8.4%
전체(4,765건 중)	29.4%	57.5%	13.1%
	폭행협박 없음	폭행협박 있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140건	50건	23건

	65.7%	23.5%	10.8%
불송치(571건) 중	412건	107건	52건
	72.2%	18.7%	9.1%
신고/고소(3235건) 중	2135건	775건	325건
	66.0%	24.0%	10.0%
전체(4,765건 중)	62.5%	20.7%	16.8%

전체 강간상담 4,765건 중 장애 있음의 비율은 19.1%이고(표 4 참고), 신고/고소한 건 전체 3,235건 중 장애 있음 비율은 23.5%인데, 불송치 된 사례 중에는 34.7%, 불기소 된 사례 중에는 33.3%로 불송치, 불기소 건 중에서 장애 있는 피해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있는 강간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처리하는 등의 수사과정의 문제가 크다.

준강간의 경우 전체 상담 중 29.4%를 차지했고, 신고/고소한 건 중에서는 33.0%에 해당했지만, 불기소 된 사건 중에는 39.0%로 훨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전체 상담에서는 62.5%였고, 신고/고소한 건 중에서는 66.0%로,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이 명시적,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이를 인식하여 신고/고소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런데 불송치된 건을 보면 폭행·협박 없는 강간 비율은 72.2%로 상승하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18.7%가 불송치 되고 있었다. 불기소는 65.7%가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었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23.5%가 불기소 되고 있었다. 앞서 살핀 신고/고소하지 않은/못한 이유에서도 경찰이 증거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폭행·협박 정도 요건으로 불송치 판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최혐의설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문제인지, 변화되어 온 판례를 숙지하고 않고 있는 문제인지, 피해자 의심, 가해자 봐주기 식의 편견이 폭행협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응집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져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론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불송치와 불기소 이유, 유형, 피-가해자 관계, 장애 및 준강간 여부 등도 세부적인 통계와 분석이 진행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판단기준, 수사력 등이 변화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 과정 및 사회적 지원, 예방 과정도 변화될 수 있다.

6) 불송치, 불기소에서 피-가해자 관계

표 29. 불송치, 불기소 건에서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보고 비율을 산출해보았다.

표 29.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

피-가해자관계(구분)	전체상담 중 비율 %	불송치 중 비율 %	불기소 중 비율 %
친족, 친·인척	10.2	5.4	5.2
친밀한관계	13.6	16.6	17.8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57.8	64.1	67.1
모르는사람	6.5	5.8	3.8
기타, 미파악	11.8	8.1	6.1

표 30.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 (26유형)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전체 중 비율	불송치 수	비율(%)	불기소 수	비율 (%)
친족, 친·인척	친부모	2.3	11	1.9	3	1.4
	그외 친족	1.1	5	0.9	5	2.3
	조부모	0.3	3	0.5	0	0.0
	자녀	0.1	0	0.0	0	0.0
	형제·자매	2	4	0.7	0	0.0
	4촌 이내 친척	2.5	5	0.9	1	0.5
	4촌 이내 인척	0.3	0	0.0	1	0.5
	의·양부모	1.6	2	0.4	1	0.5
	시부모	0	1	0.2	0	0.0
친밀한관계	(전·현)애인	8.7	64	11.2	25	11.7
	데이트상대자	2.8	18	3.2	5	2.3
	과거배우자	0.7	8	1.4	4	1.9
	배우자	1.4	5	0.9	4	1.9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단순대면인	11.4	84	14.7	33	15.5
	채팅상대자	12.8	75	13.1	28	13.1
	직장관계자	10.4	70	12.3	35	16.4
	동급생·선후배·친구	12.4	67	11.7	21	9.9
	동네사람	6.2	45	7.9	18	8.5
	서비스제공자	1.5	14	2.5	4	1.9
	교사·강사	1.7	5	0.9	2	0.9

	복지시설 관계자	0.4	4	0.7	1	0.5
	종교인	0.9	1	0.2	0	0.0
	의료인	0.1	1	0.2	1	0.5
모르는사람	모르는사람	6.5	33	5.8	8	3.8
기타	미파악	6.3	15	2.6	4	1.9
	기타	5.5	31	5.4	9	4.2
계		99.9	571	100.0	213	100.0

표 29. 피-가해자 관계를 전체 상담, 불송치 건, 불기소 건 중에서 살펴보면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상담 전체 중 비율보다, 불송치 내 비율, 불기소 내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친족성폭력과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고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고, 신고/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불송치, 불기소에서 누락되는 비율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친밀한 관계의 경우 상담 전체 중 비율은 13.6%였는데, 불송치에서는 16.6%, 불기소에서는 17.8%로 그 비중이 높아진다. 아는 관계 역시 상담 전체에서는 57.8%였는데, 불송치에서 64.1%, 불기소에서는 67.1%로 높아진다. 친밀한 관계와 아는 관계는 실제 강간사례 중 비중이 높으나 수사과정에서 배제, 누락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세부 관계는 ‘채팅상대자’였는데 (표 3 참고), 불송치 중에서는 ‘단순대면인’이 가장 높았고, 불기소에서는 ‘직장관계자’가 가장 높았다.

피-가해자 관계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 친척 등은 전체 상담 > 불송치 >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적어진다. 반면 전.현 애인, 과거 배우자, 단순 대면인, 채팅상대자, 직장 관계자의 경우 전체 상담 중 비율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불송치, 불기소 비율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피해 발생 관계, 조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현 애인과 직장관계자 등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비율이 높은 것은 수사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수사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5. 결론

본 통계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점을 변화의 지렛대로 염두에 두면서 정책적, 제도적, 법적, 인식 문화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강간 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가

22.7%이다.

-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가 가장 많았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에서는 회유(21.5%)가 가장 많았고, 장애 있는 강간에서는 강요(23.2%), 회유(22.8%)가 많았고, 준강간에서는 강요(22.7%)가 가장 많았다.
-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57.8%) > 친밀한 관계(13.6%) > 친족, 친인척(10.2%) > 모르는 사람(6.5%) 순서였다. 26개 세부 유형 중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관계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역시 상위 5개였다. 성폭력이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관계, 전·현 애인 등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폭행·협박 유/무는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은 67.9%가 고소/신고했으며, 21.2%가 고소/신고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고소/신고하지 못한 이유에는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없고 주변에서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 요인’이 가장 컸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준강간은 사건 성립에 대한 어려움이 작용했고, 장애 있는 성폭력과 가족 간 성폭력은 ‘주변인’ 때문에 신고/고소하지 못하는 비율이 컸다.
- 불송치, 불기소 된 이유를 보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두 가지가 불송치, 불기소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폭행·협박 입증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는 연동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가해자 관계가 친족이거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체 불송치 - 불기소 단계에서 비율이 줄어들지만,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장애있는 성폭력,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불송치 - 불기소로 가면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수사와 처벌과정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간 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은 24.7%이며, 고소/신고한 강간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은 36.4%였다. 수사 기관은 여전히 피해자다운지 아닌지 따지고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한 건은 23.5%이고, 이의제기 후 기소된 건은 14.2%에 불과했다. 피해자다움이나 피해자의 극심한 저항유무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신고/고소,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과정에서 누락된다.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 개정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댄스하게 담은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각 지원현장에서 펼쳐온 단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준강간에 해당된다.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준강간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공동대위)'에서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지원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7개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음주 상태 등을 이용한 피해자 760명의 법적결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준강간사건 760명 중 고소 신고한 피해자수는 511명(67%)이며, 기소된 사건은 229명(30%)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단 112명(14%) 뿐이었다.

사례조사 대상 피해자의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한 불기소 사유 건수(83건) 중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24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11건(13%)으로 두 사유가 35건(42%)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가 20건(24%),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사유가 11건(13%)이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무죄 이유 건수(51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15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7건(14%)으로 비슷하게 43%에 달했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가 12건(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가 10건(20%), '피해자답지 않아서'가 4건(8%) 등이었다.

준강간사건에서의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는지 여부이며, 실제 법적진행 과정 전반에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준강간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어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 기억이 없고 평상시와 다르게 구토가 심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어 약물을 탔는지 의심스러워요" 등 자신이 기억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호소한다. 피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사건 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 기록 같은 증거,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맥락적으로 준강간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며, 평소 자신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였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동의나 거절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의 기억소실 및 피해 호소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기에 법적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와 그 증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CCTV는 신고 이후에야 확보가 가능하며, 신고여부를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 보관기간 경과로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혹여 CCTV 영상을 확보했다라도 그 영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타인의 부촉없이 걷거나 서는 등의 모습이 보이면 가해자들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또한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 혹은 동의한 것이라 오인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허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은 "만취 이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미 스킨십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진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알콜 블랙아웃과는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인 패싱아웃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함.)

'가해자의 고의'도 증명하라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건 전후 및 피해 상황을 기억하는 가해자의 진술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미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

과 방법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혹은 편집하며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불기소 이유가 되고 있다. 사법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거가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준강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로도 이미 충분하다. 즉, 피해자가 만취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단하고 조절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성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새로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해자가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말 "클럽인데... 사건이 되겠어요?"

'성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는 여전히 편견이나 통념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성폭력의 발생 요인과 대응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준강간공대위에서 조사 및 분석한 준강간피해자 중 17%가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20%),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음(17%), 피해자답지 않음(22%), 피해자의 성이력(7%) 등 정형화된 성폭력피해자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술이나 클럽 등에서 즐겁게 놀고 마시고 춤추다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성관계 당시에도 가볍게, 즐겁게 혹은 쉽게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 및 수사재판과정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했거나, 함께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으면 성관계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왜곡된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

준강간 판단기준은 동의여부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의 동의란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성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간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가해

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전제되고 있다. 이 전제는 준강간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동의도 거절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강간죄를 '동의여부'로 판단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 될 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의를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심신상실된 상태에서의 동의를 포함하는 지까지 파악하여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성폭력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성관계 시의 '동의'라는 개념과 동의 방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상황,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의 훈련이 선행된다면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와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이라는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 및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근절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글쓴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목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학회 #클래식계 #웹툰 #군대 등 '소속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 각 집단에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우월적 행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주변 구조가 있다. 이 때 자행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계, 진로-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 조명됐다.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평판을 좌우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자행한 강간, 추행, 성희롱은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 학교 폭력, 군대내 폭력, 직장 갑질, 아동학대처럼 피해자는 좌절, 고립에 놓인다.

이런 성폭력이 극심한 폭행·협박을 사용할까? 이런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요할까? 그

렇지 않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 그 면전에서 즉시 소리치려고, 밀치고, 몸싸움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리키는 현실

미투운동 전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일부는 강간, 추행죄와는 다른 법조항으로 고발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엇인가? 법에서 확인하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아래 조항을 말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녀의 정조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벌성이 낮은 보충적 유형의 범죄로서 마련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형법 297조)보다 요구하는 힘이 낮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서도 강간죄는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지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낮은 지표/수단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강간·강제추행죄가 구제하지 못했던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문제 말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의 중요성은 강간죄 체제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위력 간음죄’와 나란히 존재해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협소한 판례를 뒤집고 적극적 판결을 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서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률이 역동적으로 제·개정되어온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한다. 최협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죄의 존재는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얼마나 현실을 포섭하는지 살펴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 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때문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구금 상태에서 감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삽입 침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물리적 폭력 위주 패러다임에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적을까? 여전히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폭력 위주의 강간죄 개념과,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직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이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위 언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서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연령이 어찌지에 따라 성립여부를 가르고자 한다. 또한 성인여성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법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을 얼마나 했는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판결을 분석한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도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간음죄 고소·고발과 강간죄 고소·고발이 2021년 기준 각각 24건과 5,263건인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있으니 '강간죄'는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무색하다. 강간죄패러다임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취지와 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위력은 동의도 거절도 못하도록 '의사를 방해/왜곡한 힘'으로 보아야

업무상 위력성폭력에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형법적인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후다. 김성돈(2019)****은 위력간음죄의 가해자, 피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주성(2019)*****은 성폭력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뀐 이후 모두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피해자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 결여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 하고,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하며,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 지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간죄는 '동의를 부재한' 성적 침해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말할 것도 없는 '가중사유'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는 동의도 거절도 왜곡하고 하자있게 만드는 힘으로 살피지고 가중되어야 한다.

*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4069판결 등 참조)

**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 2018.3.26.

**** 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 1호, 123~155쪽.

***** 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2019년 31권 1호, 111-132쪽

작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을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 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위장성매매업소에서 '

공씩',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 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

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수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주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를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개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귄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는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동의를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 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를 주변 상황 맥락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래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 탁틴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 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히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똥똥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 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장애여성 동의를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를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를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 때문이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인들"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쪽)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발생 사건들은 장소적·관계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특수성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리한 지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은 사업장 또는 농장, 기숙사 등 노동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강간범죄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성적 언동, 신체접촉이 일반적인 '한국문화'인 것처럼 꾸미는 '리허설'을 거친다.

경기 지역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노동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을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뒤늦게 사건이 공론화되어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입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 중엔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를 추가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조력할 수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사업장 선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재입국·재취업의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에게 지우는 현 제도에서 사업주의 권한은 막강하다. 성폭력을 인정하는 데에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엄격한 인정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처사다. 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고립된 환경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관계적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친족관계(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경우들이 다수 파악됐고,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친족(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자매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일한 유대관

계로 갖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이주여성에게 규범적 성역할만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의 태도, 지역사회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관점, 피해자다움으로 점철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진다. 피해가 피해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돈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웃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친정엄마)의 사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을 위해 신고 뒤 피해진술을 반복한 피해자(사촌동생)의 사정이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증거로 선택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협박 요건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

존재의 불법화로 인한 취약함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유흥업소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마사지업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성매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 주장을 한 사례,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사칭해 강제출국대상자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을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한 업주가 피해자들을 수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를 보면, '이주여성을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나 합법의 외연을 가진다는 명분으로, 분명한 유형력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반영된 결과다. 미등록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이든 어떤 업장이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되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 그가 속한 장소, 직업군의 불법성이라는 취약성까지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주배경 피해자에 대한 사법조력제도 필요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 조력이 충분치 않아 일부 언어는 통번역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법적 정보 전달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자가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 요건에 대해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불리한 진술의 구별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자칫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험에 처한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를 인정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인 채 피해를 경험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엄격하게 따지고 고도의 증거를 요구하면서 정작 피해자 조력에는 무성의한 수사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격하게’ 가해자를 조력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함께 이주여성 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백소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 재고용신청을 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자는 해당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

(본 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결과보고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판결을 통해 본 이주여성 대상 '폭력'사건 특징과 문제점 - 성·가정폭력 체류 중심으로" 중 '이주여성 성폭력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다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며, 그리하여 부부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이었다. 당시 강간죄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였다. 다시 말해 ‘부녀’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5년,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2년,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를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혹은 ‘성적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아내를 포함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사건에서 아

내강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 ‘남편이 힘을 쓴 경위’, ‘결혼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최형의설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둬으로써 아내강간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치시켰다.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아내강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양태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70.9%,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은 57.4%로 보고되었다. 이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피해 경향은 알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도 가족, 친인척,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아내강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나마 보고되고 있는 아내강간 피해 경험은 범죄로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신고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이 아내강간을 신고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적기도 하다. 아내강간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아내강간을 신고한 역대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이혼하면 그만인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 등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부부관계에서는 아내강간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때(‘생리중이거나’, ‘아프거나 피로할 때’)에 원치 않는 형태의(‘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기 삽입이나 접촉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아내강간 피해자들은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아내강간을 명문화하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항목 중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70.4%가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중 ‘연인이나 배우자가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에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연인, 배우자 관계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강간죄를 인정해왔다. 미국은 1984년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했고,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강간 면책조항을 공식 폐기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부부간 강간을 가중처벌 사유로 확립하였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아내강간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2011년, 이러한 권고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으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명문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권고안이 발표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든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명확히 다시 쓰여야 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명시하라. 그리하여 아직도, 언제나 ‘동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르게 바라볼 첫걸음이 간절히 필요하다.

글쓴이: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생존자 릴레이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형법상 강간죄는 오랫동안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기관의 성폭력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71.4%(7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현장 지원 단체들이 쓴 <릴레이 리포트>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를 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는 6월 20일부터 2주간, 매주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_ J

“안녕하세요”하는 인사가 좋다.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이후에도 웃는 얼굴로, 혹은 무심하게 주고 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차가운 세상을 약간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녕하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이 싫고 한국어가 듣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구 세계로 잠깐 동안의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명백한 거부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강간 피해 생존자이고, 동시에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어 누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준강간 피해 생존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강간도 준강간도 인정받지 못 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닐까?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괴롭다.

낮선 장소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와 맞이하는 아침의 불쾌함을 아는가?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술에 취한 채 낮선 곳에서 눈을 떴다. 앞뒤의 정황은 알 수 없다. 당신은 나체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때 그 낮선 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을 걸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다 한다. 그리고 다시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진다.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거절의 말과 몸짓은 상대방의 무력으로 제압된다. 그는 원하던 일이 끝나고 나자, 어쩌면 무해해 보일지도 모를 표정으로 태연하게 다시 말을 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간극

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가?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으로 한숨만 나왔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대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와는 다르다.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태어나서 겪어본 경험 중, 타인에 의해 내가 사라지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강간’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얻어맞거나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공포 속에 있었다. 최선을 다한 저항과 거듭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나를 제압했다. 마법이 풀리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때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다. 현행 법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거절은 있었으나 동의는 하지않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전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강간이었지만, 법원은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난 성폭력은 어떠한가? 나는 클럽 안에서 낯선 남성과 술을 한 잔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의 사라진 시간은 혼자 서 있지도 걸지도 못하고 소지품 하나 없이 낯선 남성들에 의해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몇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매고 있던 친구들의 메시지, 방 안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나의 호소보다 조사나 법정진술 때마다 말을 바꾸던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항거불능이어서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값인가? 그것도 아니면 술에 취해 발생한 성폭력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다. 그리하여 나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 나의 고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생각해본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거절도 동의였을 수 있다며 가해자를 연민으로 끌어안은 이 법의 무책 임함인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에도 내가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할까? 어떤 말과 몸짓으로 어떻게 저항했고 가해자가 그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는지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사관에게 하나하나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일의 지난함을 알까? ‘피해자다움’을 누구보다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인정을 위해 나의 무결함을 증명해야 했을 때 느낀 분노와 회의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법’을 다루는 이들이 편견으로 바라볼까봐 매니큐어를 지우고 단정해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며 느꼈던 그 수치심을 알까? 거듭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항소나 재정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혹여나 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과 싸웠던

걸까? 내 싸움의 대상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회는 동의할 수 없었을 때, 저항했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호소를 외면했다. 귀찮아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말을 더 감싸안으며 방어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동의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법과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무력 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 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없는 성적행위’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글쓴이 소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준강간과 강간을 동시에 경험했으나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사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정체화하여, 그 경험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쟁취하고자 한다.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_ 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엄마가 알게 되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웠고 수능을 앞둔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다. 도망갈 곳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면서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길어졌다고 자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가장 먼저 나를 닮았을까? 왜 피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서 찾았을까?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친족성폭력은 반인륜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

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족성폭력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이 그대로 작동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감정이입하는 말들은 차고 넘친다. 내가 처음 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말했을 때, 엄마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가해자인 오빠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마라. 니 오빠는 가정이 있잖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언니는 오빠의 범행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주었다. (“그래도 성기 삽입은 없었잖아.”) 그렇게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은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 혹은 장난, 또는 남자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피해자가 화해해 줘야 하는 정도의 일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잔인하게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나도 미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미투하는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미투 하지 마. 가족이 다 불행해져.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참고 살아. 너 그러면 엄마 제명에 못 죽어.”) 언니는 긴 고통의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힘들어?”) 다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화는 아빠의 성폭력을 말한 후 가족으로부터 꽃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희망은 가해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최예원의 가족들은 아빠 가해자가 감옥에 간 후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푸른나비는 동생이 다음 차례가 될까 봐 아빠의 성폭력을 견뎠다. 그러나 동생은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야”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공기처럼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은 피해자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의 책임을 손쉽게 피해자에게 지운다.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분노가 피해자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작은 일’에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미쳤거나 나약하다고 믿게 만든다. 피해자가 자신의 혼란과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가해자들은 쉽게 영성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선량한 시민인 척 거짓 명예로 포장한 평온한 삶을 누린다.

문화, 법, 개인의 생각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므로, 이렇게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유지하는 큰 기동 역할을 형법상의 강간죄가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강간죄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판례들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국가는 완벽한 피해자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기 전에 혹시 내가 빌미를 준 건 아닌지 자기검열부터 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한 피해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는 피해자의 증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창조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끝도 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완벽한 피해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내가 만 14세에 잠들었을 때 당한 친족성폭력 피해와 첫 직장 야유회에서 잠들었을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나의 친밀한 관계인 남성은 “니가 다리를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상상력이 정말 창조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조금의 부주의라도 있었다면 피해자는 비난과 낙인이 두려워 말문이 막혀버린다.

다행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판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법관을 만나는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어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된 세상을 상상해 본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지우는 문화적 압박이 없는 세상.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라서 말 못 하는 피해자가 없는 세상. 나처럼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가 침해당하면 “그건 강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족을 성폭행하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가해자를 방관하지 않는 세상.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라는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친족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은 전부 가해자의 몫이야”라는 말을 차고 넘치게 듣는 세상을 상상한다.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면 성폭력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은 물론일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간은 짧아져서 치유는 성큼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여성의 ‘내숭’과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긴다는 논리는, 남성 문화 내에서 인권의식이 한참 뒤쳐져 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할 줄 모르는 편견과 무지는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지 처벌 시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강간죄 개정 요구는 여성을 물건(도구, 소유물)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요구이다. 이미 여성들의 인권의식은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각성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국회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조속히 개정해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장화·불가살이·김민지·정인·희망·최예원·엘브로떼·명아·푸른나비·평화·조제(2021),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글항아리

[글쓴이 소개] 심이경,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 <나는 안전합니다> 저자

‘원치 않는’ 설문조사 결과

강간죄 성립 기준은 ____개(이) 되어야 한다

I. 설문조사 실시목적

-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를 실시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하여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II. 설문조사 결과

1. 국민인식 설문조사 개요

1) 설문개요

본 설문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강간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전체 참여자 1,346명 중 20대가 439명(32.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390명(29.0%), 40대 268명(19.9%), 50대 177명(13.2%), 10대 37명(2.7%), 60대 32명(2.4%), 70대 이상은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시스, 트랜스) 1,191명(88.5%)이 가장 많았고 남성(시스, 트랜스)은 88명(6.5%), 논바이너리 54명(4.0%), 그 외 13명(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기본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 기본정보

	구분	N	%
연령	10대	37	2.7
	20대	439	32.6

	30대	390	29.0
	40대	268	19.9
	50대	177	13.2
	60대	32	2.4
	70대 이상	3	0.2
	합 계	1,346	100
성별	여성(시스, 트랜스)	1,191	88.5
	남성(시스, 트랜스)	88	6.5
	논바이너리	54	4.0
	그 외	13	1.0
	합 계	1,346	100

2) 조사도구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①번 문항은 응답자의 연령대, ②번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을 물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③번 문항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의 구성요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④번 문항은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강간죄 구성요건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⑤번 문항은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⑥번 문항은 주변 사람이나 참여자가 직접 유형력 없는 성폭력을 듣거나 경험했는지 물었다. ⑦번 문항은 기타 의견을 물었다. 자세한 설문 구성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영역

구분	세부내용	문항
(1) 연령	• 10대 ~ 70대 이상	1
(2) 성별	• 여성(시스, 트랜스), 남성(시스, 트랜스), 논바이너리, 그외	1
(3) 강간죄 인지여부	• 현행법 297조 내 폭행, 협박의 필수요건 인지여부	1
(4) 판결 동의여부	• 판결 예시에 대한 동의	1
(5) 강간죄 판단기준	• 1)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폭행·협박을 기중처벌 • 2) 현행법 그대로 유지	1
(6)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주변에서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보고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1
(7) 기타 자유의견	• 주관식	1
	합 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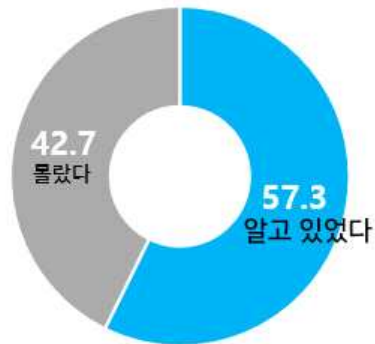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설문은 구글폼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배포하여 설문응답자들이 비대면,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설문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연대체의 소개, 설문조사의 내용과 예상소요시간, 통계법에 의거한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 안내와 함께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특히,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어 이 점을 미리 안내하고 문항 참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참여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의 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 약 34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1,346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강간죄 폭행·협박의 필수요건 인지여부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 상 폭행·협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1,346명 중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에서 유형력이 필수요건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771명(57.3%)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몰랐다’라고 응답한 수는 575명(42.7%)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강간죄 폭행·협박의 필수요건 인지여부

(2) 강간죄 판례에 대한 동의여부

본 문항은 선택 문항으로, 각색된 실제 판례를 제시하였기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그 결과,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총 1,339명(100%)이 응답하였다. 이 중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강간이다)’는 1,307명(97.6%), ‘판결에 동의한다(강간이 아니다)’는 16명(1.2%)가 응답하였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 총 16명(1.2%)가 주관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나올 수 밖에 없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서로 무슨관계인지 봐야한다’, ‘원하지 않는데 했으면 폭행이지 그게 폭행이 아닐 수 있는가’, ‘피해자의 의사가 일관적이었다면 강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동의하나, 법개정이 이루어져 강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 내용]
 피고인 이OO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자위행위만 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강간 했습니다. 이OO은 “자위행위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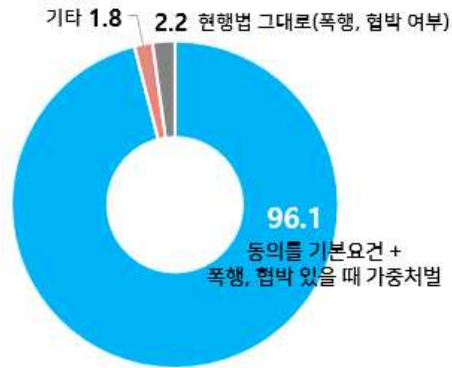
[그림 2] 강간죄 판례에 대한 동의여부

(3) 강간죄 판단의 기준은?

강간죄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법 그대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에 24명(1.8%)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총 29명(2.2%)가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 동의 외에는 모두 강간이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행동이어야 한다’, ‘적극적 동의가 없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 ‘동의를 기본으로 두지 않더라도 모든 강간죄는 가중처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적행위 금지’ 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대체로 기타 의견에서는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3] 강간죄 판단의 기준

(4)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

‘주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보고 듣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로 ‘있다’는 답변에 919명(68.3%)으로 나타났으며 ‘없다’에 427명(31.7%)이 응답하였다.



[그림 4]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직·간접경험

(5) 기타의견 분석결과

기타의견은 1,346명 중 504명이 응답한 주관식 결과를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기타의견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동의	223	상황	30	요구	15
강간죄	158	여성	29	성행위	14
강간	145	사람	28	많은	14
개정	140	모든	28	무조건	14
피해자	113	행위	27	남성	14
법	108	의사	26	모두	14
생각	91	판결	24	필요합니다	14
처벌	88	성적	20	현실	14
폭행	85	반드시	19	요건	13
협박	80	좋겠습니다	19	어떤	13
되어야	75	피해	19	기본	13
성관계	68	범죄	18	행동	12
기준	54	성립	18	적극	12
여부	54	저항	17	빨리	12
가해자	52	관계	17	강제	12
폭력	39	입장	17	성범죄	12
대한	37	거부	17	되었으면	12
사회	36	성	17	해주세요	11
성폭력	35	자체	17	강화	11
바랍니다	34	형량	15	보호	11
판단	32	인정	15	해야한다	11

주관식 응답의 텍스트를 활용해 각 문장의 단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단어의 수는 12,004개, 총 2,426개의 빈도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 중 조사(은, 는, 이, 에게 등),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 ?, ! 등), 1회만 등장한 단어를 모두 제외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도출한 결과 63개가 남았으며, 최종 선정된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 빈도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기타의견 워드 클라우드

기타의견 중 구체적으로 개인의 피해 사례를 보고하거나 ‘상동’, ‘없음’과 같은 의견 9개를 제외한 495개 의견을 [첨부자료]에 기재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과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관점에서 판결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종합의견

이상 강간죄 개정과 관련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의견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강간죄 판단 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력이 없었던 강간에 대하여 무죄 선고가 판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무죄’가 아닌 강간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하되 유형력이 있을 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간죄에 대해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설문조사 결과 폭행/협박이 없는 68.3%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조사한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통계 응답률 68.9%라는 수치와 비슷한 결과이다. 현장에서는 성폭력 사건 10건 중 7건꼴로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실제 성폭력 사안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회적 합의와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강간죄 개정을 통해 ‘동의’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성폭력을 해석해야 할 때가 왔다. 법무부와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첨부1] 기타 주관식 의견 전체

1	가장 기본적인 동의하지 않은 침해 상황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더는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가중처벌로 형량을 미국처럼 죄명에 따라 따로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선고하길 바란다.
3	가해자 양성하는 법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아니오! 라고 외치고 행동해야 하나요?
4	가해자 중심의 판결로 피해자에게 두번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의' 여부에 대해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되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법 규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권에 기반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개정해주세요..
5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	가해자에 대한 최고형의 강력처벌 기준 마련 반드시 필요함.
7	가해자에게 면죄를 주는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8	가해자에게 묻는다. 동의를 구했음을 증명하라
9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은 법이 아닙니다.
10	가해자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야한다. 강간죄는 하지 않음을 가해자가 입증 해야한다.
11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12	강간 당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귄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들도 있고, 피해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반영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3	강간 당하지 않는 강간이라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간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14	강간은 처벌 되어야 한다.
15	강간도 그루밍 강간도 가스라이팅 등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저 단순하고 약한 처벌 뿐입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진화해보고 싶네요.
16	강간약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17	강간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18	강간에서 폭행과 협박이 조건이 되려면 폭행죄와 협박죄를 추가로 가중처벌을 해야지 고작 최소 3년 이상 이면서 조건도 까다롭네요.
19	강간은 그저 물리적인 폭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간을 판단할 때, 우리는 가부장 제도,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편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 없이, 강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	강간은 당연히 '동의'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줄 알았다.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은 폭력행위가 아닌 것인가? 항거 불가능하게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가중처벌 의외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1	강간은 동의 없는 일방적 성관계로 한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명들게하는 중범죄입니다.
22	강간은 여러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폭력과 협박이라는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만을 강간의 성립 사유로 보는 것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되어온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폭력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행위입니다. 법부터 바뀌고, 법이 보내는 메시지를 특히나 강력히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에서는 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3	강간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살게합니다.

24	강간은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해야 한다.
25	강간은 폭행, 협박이 동반됨을 간과하지 말고 가중처벌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6	강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27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인격적 살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단순히 폭행의 유무를 따져서 무죄라고 판결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가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피해자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참담하며, 강간죄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8	강간을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항문에 하면 디엔에이가 안나온다고 지인들에게 직접 떠들고 다녔고 결국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남남 간의 강간도 성립 할 수 있어야 하고 성기 이외의 부위에 삽입행위를 하는 것도 강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강간이 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이 왜 바뀌어야하는지 알 수 있다.
30	강간이 발생한다는 점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31	강간이나/아니냐의 여부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32	강간죄 개정 꼭 필요한것입니다.
33	강간죄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34	강간죄 개정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35	강간죄 개정 촉구합니다
36	강간죄 개정도 안 하고 선진국 취급받길 바라면 안 되지
37	강간죄 개정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38	강간죄 개정에 더해 형량도 지금보다 늘려야 하며 출소 후 신원공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강간죄 개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40	강간죄 개정을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말은 저항에서 동의로 단어만 바꾼 것일 뿐 똑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1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함.
42	강간죄 개정하라
43	강간죄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44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45	강간죄 기준은 동의여부다!
46	강간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무조건 개정해야한다.
47	강간죄 법 개정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48	강간죄 비동의 간음으로 개정하라
49	강간죄 성립 기준은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50	강간죄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51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

52	강간죄 처벌의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무능한 정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53	강간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54	강간죄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55	강간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는 법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56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당연히 '동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도 높아져야 합니다. '동의'의 기준을 판별할 때 침묵은 긍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가 억지로 유도해낸 긍정 또한 확실한 긍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7	강간죄 형량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58	강간죄,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있었는지 여부로 개정하라!
59	강간죄 개정 뿐만 아니라 그냥 판사 자체를 시로 바꿔야합니다. 법관의 판단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나요?
60	강간죄 관련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	강간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 되어야 한다.
62	강간죄는 동의 여부가 기준이어야합니다
63	강간죄는 동의여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64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65	강간죄는 모두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66	강간죄는 몸과 마음 모두 다치게 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처벌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67	강간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일 뿐.
68	강간죄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저지르니까요~
69	강간죄는 어떤 말로 해도 말 할수 없는 강간죄이다
70	강간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71	강간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72	강간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인생까지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삶의 모든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악질중에 최악의 죄질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해자 만큼 가해자 또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죄의 무게를 짊어지며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73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인격살인이다. 협박, 폭행이 없이 강간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법을 개정하라!!!!
74	강간죄를 개정하라
75	강간죄를 비롯해서 모든 성범죄에 해당하는 처벌법이 더욱 무겁게 강하게 개정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76	강간죄를 쉽게생각하지않게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늘렸음합니다.
77	강간죄에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합니다
78	강간죄에 대한 정의를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맞게 계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되어야 합니다.
79	강간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강간죄의 형량을 올

	려주십시오
80	강간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
81	강간죄에 대한 형벌이 좀 더 엄중하고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대구 13살 지적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집단 강간했던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기사도 확인하였는데, 강간죄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추후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강간죄 처분도 좀 더 강해져야하고, 해당 가해자들도 어린이, 노약자 등과 관련한 직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야 합니다.
82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협박이나 폭력보다는 좋아한다라고 달래며 위력(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세 보임)에 의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것은 강간으로 보고 협박, 폭행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 처벌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83	강간죄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등학교 졸업 후 수년이 지난 후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당시 여학우들은, 학창시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바바리맨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고듣지 못한 곳만이 현실이 아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특정한 그룹(여기서는 여학생)만을노리는 음습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건 피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생 각합니다. 강간죄 논의도, 피해자들과의 진솔한 논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84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85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동의여부가 되어야 한다.
86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	강간죄의 판단기준 수정과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강간죄는 형법의 기능 중 규제적, 보호적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88	강간 피해자가 피해 증명까지 해야하는 일은 앞으론 없어야 함
89	강간하는 인간들을 강한 처벌받게 해주세요.
90	강간죄는 거세를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91	강력처벌추구
92	강력한 법 조치가 되길바랍니다.
93	강제로 성행위 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94	강한 처벌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인식 시켜야한다.
95	강화되어야 한다.
96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97	개인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성적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설문 4번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여성들이 법에 호소조차 못하고 있다. 안될 것을 뻔히 아니까... 동의없는 성적행동은 처벌해주시기 바란다.
98	개정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99	개정!
100	개정되어야 합니다.
101	개정운동에 힘써주세요. 더 많은 인식개선 운동이 효과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02	개정이 꼭 이뤄지기 바랍니다.

103	개정이 되었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 의견을 돌파해내며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해주고, 활동해주시는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04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105	개정이필요함!
106	개정하라
107	개정하라 개정하라!!!!
108	개정할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109	개정해라! 정신차리고 개정해라!
110	개정해야 한다.
111	거절은 그 자체로 거절이라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강간이라고 배웠는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고쳐야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12	거절이 서툴거나 위계위력으로 인해 거절하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
113	건강한 성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약자의 입장에서 판결해야 한다.
114	건강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115	결혼기간 동안에 동의없는 성관계가 자주 있었다. 동의하지 않음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 성격으로 아이는 상당한 정서불안이 있어 분란이 있을까봐 적극적 거부가 어려웠다. 성인이 된 아이는 비혼을 선언했고,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없다. 관대한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관계는 포괄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동의적 성관계란 법적기준을 두어 평등에 근간을 두며 상대에 대한 의사존중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작동된다.
116	고생이 많으십니다!
117	공식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경우에만 무죄로 하고 심신미약, 암묵적 동의 등의 경우는 모두 강간으로 봐야한다.
118	구 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날 수 있는 날이 빨리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119	구성요건에 넣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요건인 것 같습니다. 상호 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0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121	국의 고기를 덜어줬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의다.
122	권력관계 상하관계 지배에 의한 성폭력에 여성이 항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동意的 의한 성폭력 강간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123	그렇게 선진국 되기 원하면서 대체 성범죄에 대해서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네요. 후지다 후져. 한국 판사들 후지다!!!!!!!!!!
124	기존 법에 말도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되어 불합리한 기준에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125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126	꼭 개정되어 평등한 사회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127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128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129	꼭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사가 강간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런지^^
130	나의 성적결정권을 무시한 상대방의 강압적인 행위는 폭행이다. 내가 동의를 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한다면 강간죄로 봐야한다. 시대가 세상이변했다. 사람도 인식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131	낡은 개념의 법이다.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자.
132	남녀 둘의 관계에서, 한쪽의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강간이지 않을까..
133	남성 중심적인 현 법률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34	남여가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정규학습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5	남자앞에서 자유로운 여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상대방의 허락이라는 말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136	내 몸은 내 것
137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이 허락 받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범죄 아닌가요?
138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폭행과 협박의 중요성이 아니라 상호 동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열어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9	다른나라도 동의여부를 기본으로 한 법이 시행되고있음.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감수성을 높여 노력하는 사법부가 되길바람.
140	당사자의 동의여부가 강간죄 성립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141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 동의를 없다면 무조건 성폭력입니다 기준이 새로워져야 되요!
142	당연한 일을 더 이상 입 아프게 또 말해야 하는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143	당연한 일이 참 오래 걸리네요. 아픈 일 이후에 또 아픈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44	당연히 성관계를 할 때는 서로 간 동의를 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자할 때는 상대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성립되는데..
145	당장 개정해야한다.
146	대부분의 여자들은 첫섹스를 남자친구의 강제적 성행위를 통해 경험합니다. 적극적 동의를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입니다.
147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만 여겨지고있습니다. 단하나를 만들거나 바꾸더라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48	더이상 피해자에게 저항 증명 요구하지 말아라!! 강간죄를 개정해라!
149	동의 녹음을 할 경우 녹음이 남음.
150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151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152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153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154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155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강간죄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156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157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성폭력이다.
158	동의 없는 성폭력이 처벌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거부/저항해야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159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이다. 강간죄의 요건은 개정되어야 한다!
160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입니다.
161	동의 없는 성행위는 무조건 폭력으로,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162	동의 여부가 강간죄 성립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163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여부를 묻고, 폭행 및 협박이 있을 시엔 가중처벌하도록 법안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164	동의 하지 않았다면 폭력입니다
165	동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란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합니다. 폭행과 협박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전히 헌법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66	동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와 더불어 되도 않는 이상한 것(국물을 퍼줬으니 동의한 것임)을 가지고 동의라고 넘겨짚지도 판단하지도 말라.
167	동이가 법적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168	동이가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입니다
169	동이가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
170	동이가 없었다면 당연히 강간죄다. 그리고 강간죄 형량 너무 낮아보인다.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겁고 인격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형량좀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강간시도 또한 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71	동이가 없으면 강간이다! 이 당연한 걸 하루 빨리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72	동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모든 성행위 자체가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73	동의냐 비동의냐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174	동이는 기본요건으로 이 외의 경우는 강간죄다
175	동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 동의를 중심에 두자는 요구는 남성/가해자 중심의 시간과 속도를 점검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치 않음의 머뭇거림이 존중되는 사회(적 관계)를 기대합니다.
176	동의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
177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명시하고 강간죄 처벌 최소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규정, 재판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8	동의를 기본 조건으로 강간죄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179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현재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 인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180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되기를 지지합니다
- 181 동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강간죄의 '형벌'이 덜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 182 동의를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지 않는 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일 뿐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나 성관계 뿐 아니라 성적 접촉 역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별에게만 계속하여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 183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184 동의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이다.
- 185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 186 동의없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는 다 범죄인 것 같습니다.
- 187 동의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188 동의여부로 강간죄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사건들이 수두룩한걸요?
동의여부로 개정한다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라 형법이 독일 형법에 기본적인 틀을 둔 이상 형법을 처음부터 다 뜯고칠 것이 아니면, 강간죄 개정은 다른 성범죄 관련 법들처럼 통일성 없이 엉성한 법만 될 것이라 봅니다. 동의여부로 개정을 한다 한들 말만 달라지는 것이지 피해경험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법정의 작태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고 피해경험자는 증거취급으로 그치는 현재 법률 구조에서 형법이 답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제성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형법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던지, 성범죄 관련은 전부 특별법으로 기존의 형법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지, 민법이나 다른 구제제도에서 피해경험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대 강화하는 것이나아보입니다.
- 189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 만들 때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전제되어야 강간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잘못된 역사를 바꿔라
- 190 동의여부를 강간죄 개정하라!!
- 191 동의여부에 찬성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 192 동의여부의 애매와 동의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 193 동의를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강간의 의미도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의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폭력이 동반되는 것만이 강간으로 인정되겠지요. 어떤 범죄이든 피해자의 입장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것은 어째서 가해자 중심적 성격을 버리지 못하나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어떤 사정도 피해자 입장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94 동의하에 서로가 건강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설문을 지지합니다.
- 195 동의하지 않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고 법이 강해져서 꼭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 196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이다.
- 197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된 관계가 아니니 무조건 강간입니다. 현재 법원들의 판결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짓밟기 바쁘고 두번 죽이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된 관계를 하는 것을 성폭력, 강간이라 인식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 198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이다.
- 199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강간죄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01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죄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202	이 문장이 모두에게, 법정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3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이 맞습니다.
204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205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폭행, 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 해야한다.
206	마약 물병으로 인한 강간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마약 준강간피해자입니다. 물병은 현실에서 증명하기 너무 힘들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에게 당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사이 마시던 맥주에 넣어 아직도 내 텀블러에 있는 액체만 마십니다. 17년 일 이후 버닝썬 등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이 이틀까지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207	많은 피해자와 연대자들이 꾸준히 나아간다면 변화될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힘내요 같이
208	많은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209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은 성행위는 유죄다.
210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자 문화가 되길 바라요
211	몸을 억지로 누르거나 공간적 혹은 지위적 위계를 사용한 경우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몸이 얼어 움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폭행 및 협박이 강간의 판단여부는 될 수 없습니다.
212	무조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213	미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강간죄 요건이 자발적 동의라는 사실을 들은 게 이미 제가 미투를 한 2018년입니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상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건만 더디기만 하네요.. 그저께 다른 여성운동,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1, 2년 새에 도리어 퇴보하는 느낌조차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요~~~
214	미성년 강간죄 최고형벌, 동의없이 강간죄 형벌 강화
215	미성년자에 대한 상폭력 추방
216	바람직한 관계란 누군가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누구도 헤아려줄 수 없고 중국에는 제대로 된 관계조차 맺기 힘들 만큼의 불안을 줍니다. 강간죄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여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217	반드시 개정!
218	반드시 개정되어야한다.
219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20	반드시 동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221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222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223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24	법 강화가 시급하다

225	법개정 관련해 피해자가 동의하였어도 자위만 도와달라는 거라면 올 리타는것을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게 옳으나 성관계를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구분 피해자 쪽 가해자 쪽 입장 다른 구조 구분할 때 성관계학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범죄시 여성의 권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 든게 다 있어도 성 관계학만 없다.
226	법 개정 이뤄내주십시오.
227	법 개정을 통해 동의에 기준한 강간 구성요건이 법제화되길 희망합니다.
228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29	법망을 피해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지는 강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비밀비재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가해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230	법은 가해자를 지키는 수단이 절대아니다
231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더군다나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없이도 강간 이 가능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법은 개 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32	법이 강간을 조장하는 부분과 지금도 가해자 중심적 판단이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조계가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하여 법관으로서 판결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 미달인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다.
233	법이 강화 되어야한다.
234	법이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35	법적 기준으로 해석한 범죄상황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강간죄 성립에 대한 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야한다.
236	보통 협박과 폭행이 세트로 진행되지만 4번의 경우처럼 진행되는 바, 피해자 탓을 하며 무죄판결로 귀결되는현재의 관행은 고쳐져야 함.
237	본인의 거절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은 강간이다.
238	본인의 동기가 없는 것은 무조건 강간입니다.
239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입니다.
240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41	부부 간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강간죄가 성립될 정도로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개 정되어야 함
242	부부간에도 성폭력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43	비동의 간음
244	비동의 간음죄 적극 찬성!
245	비동의 강간죄 도입
246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한다
247	비동의 강간죄 성립이 되어야 한다.
248	비동의 강간죄 찬성
249	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하라
250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의와 필요 사례는 이미 축적됐고, 더이상 필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며 법 개정을 지연할 때가 아닙니다.

251	비동의 성행위는 강간이다.
252	비동의 의사가 있었다는게 증명되면 무조건 유죄가 되어야 함.
253	비동의간음죄 신설요청 합니다.
254	비동의강간죄 실행하라!
255	비동의강간죄 제정하라
256	비동의는 강간이라는 당연한 문구가 성립되는 사회를 바랍니다.
257	빠른 개정 바랍니다.
258	빠른 시일 안에 동의여부로 개정되면 좋겠네요.
259	빨리 바꿔주세요.
260	사이버 폭력 등 상황에 따른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1	사회 변화보다 법은 항상 늦게 변화한다고는 하지만, 이쯤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가해자만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 상황에 분노만 이네요. 강간죄 개정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62	사회 통념상 원치 않는 성폭력을 강제로 당했다면 '강간'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언동 전체('너 나랑 한 번 자자, 너 참 맛있겠다 등)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3	사회는 국가는, 정부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야 한다. 성을 죄처럼 인식하는 사람, 또는 사랑에서 성적인 요소만 보는 사람 등 그러한 인식을 가진 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살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고민 끝에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후에 온전히 책임지고자 노력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제도/법은 상호 간 영향을 끼친다.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잡아 표심을 끌 생각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 그 길을 걷고 계신 상담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264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65	상대가 원치 않는데 어떤 행위를 강제한다면 당연히 강간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의 변화를 빨리 따라오기를 바란다.
266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이 동의 역시 일방의 의사로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없는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사회의 규정으로서 일방의 인식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67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8	상대방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강간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비동의 강간죄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9	상대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270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임을 명확히 인지하자.
271	상대의 동의 없는 행위는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를 되었다 해도 동의된 부분 외에 행위는 다 처벌되어야 한다.

272	상호 간의 완전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273	성관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를 우선 조건이 되어야 한다.
274	성관계의 동의는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증명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발언 능력 등을 전부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을 기초로 가해자 협박의 유무를 가릴 수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75	성범죄국이라고 불려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인 남자들 인생이 넘 귀중해서 피해자들이 어찌되든 상관 않는 나라.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출산률은 더욱 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276	성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277	성범죄에 대한 법리해석 모호하고 양형기준이 약해서 안타깝다. 더 잘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278	성범죄자에 대한 정의구현이 실현되도록 강간죄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9	성별에 관계 없이 그 사람의 몸은 오직 그 사람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만,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280	성적으로 형성된 관계(연인, 부부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만 하는 관계도 포함)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으로 남성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할 수 있는데 법에서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무조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강간죄가 개정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81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존중과 동의 성인자기성숙 부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282	성추행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바란다. 원치 않는, 또는 중단을 요구한 모든 섹슈얼행위를 진행한 자는 강간범이다.
283	성평등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284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동의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285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 협박은 무관하다.
286	성폭력은 저항보다 동의를 기준으로!
287	성폭력은 폭행이다.
288	성폭력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저항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말은, 단어만 바꾼 것일 뿐 똑같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289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폭행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이어야 합니다.
290	성폭행, 강간범 관련 법이 엄격해지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291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자체로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피해자에게 협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92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 가장 앞서나가 싸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절도죄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남의 물건 훔치는것도 폭행, 협박 없이도 처벌가능한데,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내 몸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지면 그게 추행이고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인데 제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93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상식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294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법조문의 빠른 개정 필수
295	시대착오적인 법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296	시대착오적인 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97	시대착오적인 성인지감수성
298	시대착오적인 현행 강간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99	실제적인 폭력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00	싫대거나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튕긴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성관계하려는 것 자체를 강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01	쌍방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강간문화 사라져~
302	쓸데없이 재판부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03	아직도 구시대적인 법으로 현시대의 죄를 논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논하고 결론까지 짓는 법조계부터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아닌 제대로 된 강간죄 개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304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305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않길
306	애매한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놓고 사건 내용을 봤을 때 동의를 기본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은 맞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 관계 등 내용 자체가 부족해서 뭐라 답변할 수 없네요.
307	애초에 강간의 정의가 강제성을 내포한 용어이다. 이를 판결시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308	어떠한 강제성이 없이도 여성의 아니다를 "아니다"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9	어떠한 경우에도 강간은 허용,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310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다면 무조건 강간으로 분류, 엄중 처벌 해야 한다.
311	어찌 유독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까요.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312	역지로 동의하도록 강요해서 한 성관계도 강간이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13	얼마 전 4월 27일 보통의 준강간의 무죄 판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심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314	얼토당토않은 판결이 사라지는 그날이 얼른 도래하길 바랍니다.
315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바로선 법치로.
316	엄벌추구
317	엄중처벌
318	여성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319	여성의 동의여부가 강간죄 구성의 최우선 판단기준이다. 재판부는 제대로 판단하라!!!
320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한다면 강간죄 성립에 폭행, 협박은 있을 수 없다.

321	여성이 NO라고 말할 때는 남성들은 언제나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322	여성이 말하는 “NO”는 말 그대로 “NO”입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성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강간입니다.
323	여자가 핏김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남자가 살아 남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어떻게 개정해도 허술할 것 같습니다.
324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는 협박과 폭행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동의는 기본이다.
325	연인 사이에도 가스라이팅, 은근한 요구, 사랑에 대한 의심 등을 통해 폭행, 협박 없는 강간이 일어 납니다. 이렇게 숨겨진 강간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강간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326	올바른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327	올바른 성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큰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 개념이 잘못 확장된 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328	올해는 꼭 강간죄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329	와... 한국법이 이렇게 뒤떨어진 줄 처음 알았네요.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동의여부 consent 죠! 이쪽 분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좀 맞춰갑시다!
330	외국도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성행위나 추행은 강간입니다.
331	외국은 초반에 동의했다고 해도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거부의사를 우선해서 강간죄로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거죠.
332	외국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할 건 해야죠. 뭐가 겁이 나는겁니까? 죽어야지, 또는 그런 상태 직전이어야지 강간이란게 말이 됩니까?
333	우리나라가 선진국답지 않게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은 매우 가벼워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습니다. 선진국다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34	원치 않는 것은 강압이며 폭력이다..
335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를 구성한 바 있으므로 굳이 비동의 여부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록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 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 대법원2017.10.12.선고2016도16948,2016전도156판결 서울고등법원2018.4.5.선고2017노3099,2017전노163(병합)판결
336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337	원치 않은 강간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338	원치 않은(허락을 받지 않은) 성행위 또한 “폭력”입니다.
339	원치 않는 성관계의 강간죄 성립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340	위 사례는 폭행은 없지만 구걸을 빙자한 강요잖아요. 강요는 협박과 줄타기하듯 걸쳐 있고요.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341	위압에 의하거나 거짓에 의한 동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판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42	위의 사례에 남성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343	유사성행위든 강압적 성행위든 본인이 완강한 거부가 아닌 일정 부분의 동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수위가 높다하여 강간이다 말할수 없다.
344	유엔 여성 인권이 매 년마다 요구 하는 것처럼 제발 저항 여부 대신 동의 여부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345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들이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함
346	의사에 반하면 무조건 강간이다. 폭력, 협박이 동반될 경우 폭행강간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 해야한다.
347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지는 모든 건 폭력이다. 강간을 왜 폭행, 협박과 그에 대한 저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348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밀어 붙였지만 강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곳은 한국뿐일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49	의사에 반하여 폭력, 폭행, 회유 등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행동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
350	이 나라의 모든 법적 처벌이 그렇지만 성폭력, 성폭행에 관한 법은 특히나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의 현재, 미래만 보는 법 따위가 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351	이거 일본도 개정했다던데.
352	이미 늦었으나, 이제라도~
353	이번에는 기필코 동의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
354	이성 간 성기 삽입을 기준으로 '강간/유사강간'으로 나누는 것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5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356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357	입증이 힘든 범죄이지만 그 죄질은 매우 무거운 범죄인만큼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그 형벌을 더 높여야 합니다.
358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9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용서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은 개정되어 마땅합니다.
360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폭행과 중범죄이다.
361	자유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는 폭력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362	재판부와 언론, 가해자한테 그만 좀 이입합시다.
363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묵인 되었고 거부는 목살되었고 힘으로 제압되었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폭력이 없었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는 죄책감을 갖거나 고 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죄를 범한 범죄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없이 원치않는 강간이 강간죄로 처벌되어 왜따라갔니, 왜 더 저항하지 않았니, 라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합니다.
364	저도 폭행 협박이 없는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니 가해자들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지나서 아직도 혼자 물어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강간이 아니라고 판결내리실 수 있을지 묻고 싶네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구성되는 건 정말 희박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부디 개정되길 바라봅니다.
365	저항이 두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366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367	적극적 동의가 없다면 강간이다.
368	적극적동의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라.
369	적극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도 살피지도 않은, 적극적으로 합의 하지 않은 접촉과 성관계는 성추행이고 강간이고 성폭력이다.
370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합니다. 법개정해주세요~
371	절대적으로 무조건 개정해야합니다.
372	정의를 위한 사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373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부분이 강간죄 현행법에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나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잘 꼬집어주시고 문제를 의식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4	젠더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의식을 가진 법조인들. 각성하라.
375	제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376	제발 높은 형량을 받게 해주세요.
377	제발 성적인 피해로부터 정신적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을 정의를 남겨주세요.
378	제발 좀.. 제발
379	제발 피해자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0	제발 협박 폭행이 기준이 아닌 동의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협박과 폭행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정하나요. 또는 상황 자체가 위압적이라 굳이 협박 폭행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381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382	좀 더 수위 높은 가중처벌을 원한다.
383	주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 입각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84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짓거리들이 강간이었고, 당신 또한 모른 척하는 중일 뿐이라는 것
385	죽음과 생의 이슬아슬한 고비에 섰을 때만 범죄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 가해자의 언행에 복종했을 때, 그러한 복종이 과연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법안이 개정되어 많은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386	준강간의 경우 불송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을 입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라도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387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만 피해를 받는다. 또한 남성들의 성인지각수성도 낮고 성범죄 이후에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이 필수적으로 겪는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들의 처벌도 피해자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388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389	지금의 법 적용과 판례들은 강간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며 지극히 사회적인 행동까지 성관계 동의라는 어처구니없는 누명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하게 보복 범죄와 잠재적인 가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놓고 있습니다.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강간죄 개정으로 강간죄의 범위를 넓혀 강력한 처벌과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390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구시대 법이나 바꿔라 좀
391	지인이 무고하게 강간죄로 신고당해서 조사를 받으며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의 슬픔을 잘 압니다만 법은 악용될 여지가 없게 잘 개정되어야 합니다.
392	직접 피해를 입어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백프로 이해하기 어려울 순 있으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3	직접적인 동기가 없는 모든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394	진정한 동기가 가능했는지 위력과 위계는 없었는지 맥락을 살펴 판단 되어지기를 바라며 성인지각수성 발휘가 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동의는 진짜 동기가 아님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95	처벌의 기준과 처벌의 무게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함
396	처벌 좀 빠르게 제발
397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8	최협의설을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피해자다움이 아닌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를 헤아려주세요.
399	최협의설의 판례변경이 요원하므로 반드시 법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00	타인의 몸은 물건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이 깃든 신성한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신체적 비신체적침해 모두 폭력입니다. 더 섬세하고 광범위한 규정과 개념이 정립되길 기원합니다.
401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것은 엄벌
402	타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모든 행동이 협박과 폭행이다.
403	특정 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뿌리 뽑아 주세요. 가난, 기근, 재난, 전쟁, 호기심, 그 외에 어떤 상황이나 형태로도 성폭력은 안됩니다.
404	특히 아동을 강간하는 경우는 사형시켜라
405	판결을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내려주시길 부디, 비나이다.
406	폐지 되어야 하며 처벌 기준 강화
407	폭력과 강요 관계없이 여성이 성관계를 합의하였다 하여도 마지막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때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남성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
408	폭력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면 동의여부가 강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09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들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폭력행위의 적용은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 함을 기억하고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함을 기본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410	폭력피해자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를 증명하고 편견에 가득찬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411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강간죄가 매우 희귀하다. 희귀한 것만을 최소한으로 보호/처벌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판결문에서 허다하게 등장하는 '일반인의 법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12	폭행 협박의 기준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도 확인도 필요하고 동의도 정황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413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간은 폭력, 협박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에 비동의간음죄로 개정되어야 한다.
414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 꼭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조정되길 바랍니다.
415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알면서 외면하지 맙시다.
416	폭행 협박이 없어도 친밀한 사이(하물며 부부간에도)에서는 강간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음을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다.
417	폭행, 협박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418	폭행, 협박여부가 아닌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19	폭행, 협박으로만 강간을 판단한 구시대적인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
420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도 성폭력이다!
421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것은 폭행 협박+강간이다.
422	폭행, 협박 없는 강간죄도 처벌하라.
423	폭행, 협박 없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입니다.
424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
425	폭행과 협박 없이도 폭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처벌 잦대를 폭행과 협박으로 묻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은 법! 적극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 하는 법이 되려면 폭행과 협박을 묻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가해자가 폭력이 아님을 입증하게 하라!
426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필요 요건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속히 개정되기 바랍니다.
427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피해 당사자가 거부의를 표현할 수 없었다면 그 자체가 폭행 협박을 넘어서 가해 행위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428	폭행을 동반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긍정적인 의사표현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바로 강간입니다.
429	폭행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430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없는 행위는 강간이다.
431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2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여부가 강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433	피해자, 생존자의 목소리가 부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434	피해자가 술에 취한 때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 관계와 같이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엔 폭행, 협박 없이도 강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강간죄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35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개정되길
436	피해자가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지만 강간이 인정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게 될까요. 서로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관계는 어떤 형태든 강간이라는 이 당연한 상식이 법에도 꼭 적용되어야 합니다.
437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38	피해자는 대다수가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거나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가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일 수가 있다. 공포에 짓눌린 사람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사람이 거부를 하는데 왜 강간죄만 매뉴얼이 있는지 법적으로까지 그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극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나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책임을 전가 시킬 뿐이다.
439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립니다. 가중처벌을 무겁게 해주세요.
440	피해자는 평소와 다른없는 일상에서도 상처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441	피해자를 선별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규탄한다.
442	피해자를 향한 온라인상 폭력(2차가해, 악성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처벌도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교 에브리타임, 웹사이트 디시(?) 등에서 해당 문제가 심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언제나 연대하겠습니다.
443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4	피해자에게 좀 더 집중해주세요.
445	피해자의 거부행위/발언을 무시하고 본인의 성욕을 우선시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446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삽입 그 자체로 강간이 되어야 합니다.
447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명백한 폭행과 협박의 입증만 강간 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법이기를 바랍니다.
448	피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와의 관계, 위력에 의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또한 폭행,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강간 피해는 많습니다. 강간죄 판단기준은 동의 여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9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합당한 법의 마련은 피해자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450	피해자 중심의 강간죄 개정을 해주세요.
451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452	하루 빨리 강간죄 구성요건이 개정되어야 한다.
453	하루 빨리 개정!!
454	하루 빨리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법의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455	하물며 내 몸이라도 남 앞에서는 내 맘대로 할수 없는 법이다. 상대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남의 신체에 억지 행위를 해놓고 이걸 따지는 것부터도 법 같지 않은데. 협박의 여부라니. 참나
456	한국 법 너무 수준 후집니다. 인간의 수준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성의 존재로 보질 않고 뒷간 똥개처럼 보니까 성관계가 '상호 대화를 통한 동의'없이 착취와 탈취 매매등으로 연결된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인정하고 있는 법이 아직도 먹히고 있겠지요. 벗고 있다고 다 만지면 합법입니까? 만약 전 여성 있는 병증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 못한 채로 벗고 있는 자를 만지면 합법입니까? 조건이 어떤든 가중의 정도만 다를 뿐 동의 없는 침해는 위법입니다. 명확한 동의, 진정한 동의를 침해하는 어떤 요소도 인간 영혼과 신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단 하나의 강대한 위법적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시대를 앞서 바뀌질 않으면 앞으로 향해 걷는 인간을 누가 수호합니까? 인간이 뒤로 걸어야만 하는데 맞춰진 법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457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는 폭력이 맞습니다.
458	합의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강간이다.
459	합의하지 않으면 강간이죠.

- 460 항거 불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 461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무형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자율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거늘... 어찌 성관계는 말로 하는 거부가 거부로 통하지않는지... 이토록 기본적인 것이 왜 아직도 법에 반영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 462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성이 여성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의 사례는 본인에겐 충분히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상호 간의 "동의"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동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 463 항거불능은 유형력 행사 여부로만은 판단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성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또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게 가능한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
- 464 항문이나 손가락으로 삽입하는 것은 왜 유사성행위인가요?
- 465 현 강간죄 관련 법령은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 466 현실이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467 현실적이지 않으며 애초에 피해자 인정에 재고를 두게 하는 법조항은 개정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468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 469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70 현재 유사강간죄(297조의2)는 강간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강간죄에 비해 하향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사강간죄가 '유사'강간죄에 불과하다 생각하지 않으며, '강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죄'에 흡수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상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 무엇이 강간인지를 명확히 밝힌 규정형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존 판례상 '성기를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강간으로 보는 좁은 시선을 입법례로서 확장하기 위하여)
- 471 현재의 강간죄는 구시대적 기준에 맞춰진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법입니다.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472 현행 강간죄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간죄의 개정을 바랍니다.
- 473 현행법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 474 현행법 상 강간죄는 가해자를 양성할 뿐입니다.
- 475 현행법은 국제표준이나 시대 흐름에 너무 반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476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같다. 동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범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 477 현행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디지털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정 개정.
- 478 형량 늘려주세요. 재범시 가중처벌하고 처음 적발됐으나 기존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경우 초범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마처럼 가중 처벌받아야 합니다.
- 479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480 형량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81	형량이 무거워야 죄가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법개정과 처벌을 원합니다!!!
482	형벌이 훨씬 더 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3	형법 297조는 성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편견을 결과하게 되는 악법조항임
484	형법상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85	확실한 동의 없으면 강간
486	확실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 맞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	다!
487	힘냅시다.
488	[형법 제297조 강간죄] 항목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489	'의사에 반하여'나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문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폭행 협박 동반이 라니 법이 뒤에 있어도 너무 뒤에 있네요.
490	"아니요"를 "아니요"로 못 알아듣는 자들까지 같이 하늘을 이고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고등학생 때였다.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사귀니까', '여자/남자친구니까 만지게해달라', '나체를보여달라'고 졸랐다. 친구는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남자친구는 집요하게 요구했다.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말하고 몇 번의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의 의사표현을 들으려하지 않는 남
491	자친구라는 사람이, 친구가 미처 단호히 거절의 말을 못한(그렇다고 긍정하지 않은), 단 한번의 순간에 만지는데 폭행이 아니고 무엇인가싶다. 동의하지 않은 것이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혹시라도 억울하게 강간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 두려워한다. 오해의소지를 없애 사회갈등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의사(긍정의표현) 확인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92	20대 초반 주변에 술을 이유로, 사귀는 사이, 썸타는 사이, 아는 사이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강제하고 상처를 받은 친구들을 많이 봤다. 모두들 트라우마를 가졌지만 그 남자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서 몸가짐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했다. 강간의 처벌이.. 혹은 강간죄가 없어도 간음죄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남성들도 사회에 막 나온 어린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을까. 나랑 친구들은 이미 상처받았지만 이제 곧 사회로 나올 친구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493	4번의 예시처럼 성기 삽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허락을 한건데 동의없이 말을 바꿔 성기 삽입을 했다면 이게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가중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필수요건이 되어야 만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494	No means No < Yes means Yes
495	No means no! 언제쯤 돼야 남자들의 성욕은 여자들이 알빠가 아니라걸 깨달을지..

'원치 않는'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아카이브(링크첨부)

1.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성별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여성(시스, 트랜스)
2. 남성(시스, 트랜스)
3. 논바이너리
4. 그 외(주관식)

3.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에서 폭행·협박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 대해 알고 계셨나요?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알고 있었다
2. 몰랐다

4. 아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 내용]

피고인 이OO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자위행위만 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강간 했습니다. 이OO은 "자위행위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무죄

1. 판결에 동의한다(강간이 아니다)
2.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강간이다)
3. 기타(주관식)

5. '강간죄'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두고, 폭행, 협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한다
2. 현행법 그대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3. 기타(주관식)

6. 주위에서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보고 듣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7. 강간죄 개정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주관식)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사)인천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서폐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소, 언니네트워크, 은평여성회(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청구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대]/13개 회원단체 및 1개 부설), 세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연대부설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대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로템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벨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석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돌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여성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여성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중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여성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항가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연대부설서울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133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연대,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및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

21대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023년 7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백혜련,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